

제 3 장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 | | |
|------|------------------|
| 제 1절 | 개요 |
| 제 2절 |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
| 제 3절 | 산업자원분야 |
| 제 4절 | 건설교통분야(건설교통부) |
| 제 5절 | 과학기술 · 정보통신분야 |
| 제 6절 |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
| 제 7절 | 환경분야(환경부) |
| 제 8절 | 교육 · 문화분야 |
| 제 9절 | 노동 · 여성 · 청소년 분야 |
| 제10절 | 보건복지분야 |
| 제11절 | 통일 · 외교 및 국방분야 |
| 제12절 | 일반행정분야 |

제 1 절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5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423건을 심사하여 이중 422건(29.7%)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 '05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5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재정경제부	13	23		2	21
금융감독위원회	9	22		1(조건)	21
공정거래위원회	5	11		3	8
기획예산처	1	5			5
관세청	2	2			2
통계청	1	8		3	5
산업자원부	35	154		12	142
중소기업청	10	20		1	19
특허청	4	5			5
건설교통부	61	165	14	29	122
과학기술부	12	32		8	24
정보통신부	9	24	1	16	7
기상청	2	5		2	3
농림부	17	71	1	21	49
산림청	10	27	3	13	11
농업진흥청	2	2	1	1(조건)	
해양수산부	59	193	7	55	131
해양경찰청	4	17		12	5
환경부	42	120	2	28	90
교육인적자원부	12	67	2	19	46
문화관광부	17	49	3	17	29
문화재청	3	19		5	14
방송위원회	5	17		5	12
노동부	16	62	3	10	49

부 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5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여성가족부	2	2			2
국가청소년위원회	2	4		2	2
보건복지부	40	114	6	36	72
식품의약품안전청	25	73	9	36	28
통일부	1	2	1	1	
외교통상부	1	2	1	1	
국가보훈처	4	12		4	8
행정자치부	7	14		1	13
소방방재청	17	53	1	15	37
경찰청	2	4			4
법무부	4	20	2	7	11
국무조정실	1	1			1
중앙인사위원회	1	1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1		1	
계	459	1,423	57	367	999

제 2 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집필자 : 이영호 사무관 (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재정경제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간접자산 투자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 1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7건, 내용심사 9건 등 총 2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5, 비중요 18)

○심사대상 23건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정경제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7건임.

<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10)	원안의결 3	신설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67차 경제1분과 (2005. 1. 2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 272차 경제1분과 (2005. 3. 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 3,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3)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245차 경제1분과 (2005. 4. 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서면심사 (2005. 6. 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79차 경제1분과 (2005. 7. 1)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0)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간접자산 투자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4. 4. 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관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1 개선권고 2	신설 7 강화 7 내용심사 9 *중요5, 비중요 18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2)

● 심사내용

○이사장 및 시장감시위원장 자격 기준 (내용심사)

- 국내외 금융관련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경제관련 분야에서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국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금융·경제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기타 이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이사장 및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정함.

☞ 통합거래소 이사장 및 시장감시 위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상 규정된 자격요건을 구체화 한 것으로 위임근거법규 및 증권선물위원 자격 등 다른 입법례를 기초로 시행령 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거래소 주식보유제한 운영기준 (내용심사)

- 법상 제한되는 주식보유로 인정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3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법상 제한되는 주식의 보유**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6촌이내의 부계혈족, 3촌이내의 모계혈족 등 으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

**자기계산으로 주식보유,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주식의 인도청구권 보유 등

☞ 증권·선물 통합거래소의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상 신설된 동일인의 주식 보유제한 규제의 세부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증권거래관련 일반 적인 규제 기준인 증권거래법시행령 내용을 준용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소유에 준하는 주식보유를 규정하고 있어 그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신설)

- 거래소,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대상 전산투자를 규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 및 그 부대설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선물업협회, 한국증권전산

☞ 유사·중복 전산투자 방지, 전산시스템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거래소 등 시장 유관기관의 거액 전산투자에 대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요 전산시스템 신설·변경 등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규제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금융기관의 미승인 주식보유에 대한 시정조치 (신설)

- 금융기관이 법 제24조에서 정한 다른 회사주식 소유규제를 위반하여 초과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게 법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권 부여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처분시까지 매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3/10000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신설

☞ 제24조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이외에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조치권의 신설이 불가피하며, 공정거래법 및 은행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령의 유사제도와 비교할 때 시정조치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강화3, 내용심사1)

◎ 심사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허용 보험상품의 범위 및 일정조정 (강화)

- 2005. 4월 일괄 시행 예정이던 2단계 방카슈랑스 종목(개인보장성보험 등)을 3차례('05. 4월~'08. 4월까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05. 4월 이후〉

- 제3보험중 순수보장성(소멸형)상품* (특약부** 제외) 허용(생보·손보 공통)

*생·손보 중간영역인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중 만기시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

** 질병+사망특약 등

〈'06. 10월 이후〉

- 제3보험중 환급형 상품(특약부 제외) 허용(생보 및 손보 공통)

〈'08. 4월 이후〉

- 생보 :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상품 허용
- 손보 : 일반 장기보장성보험상품 및 개인용 자동차 보험상품 허용

☞ 당초 계획대로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이 확대될 경우 불공정판매 등 방카슈랑스 시행상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카슈랑스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별 허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강화(강화)

- 점포별 보험상품 모집인을 2인이내로 제한한 규제의 유효기간을 2006. 3. 31일로 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을 현행 49%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

※ 2003. 8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 규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몰 조항(2006. 3. 31까지) 신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2명)은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고, 동 규제의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규제 유효기간을 2008. 3. 31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은행의 보험자회사 판매비중이 크게 높은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보험자회사 판매비중 감축과 규제의 실효성 및 공정성 등의 제고를 위해 정부안중 합산되는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25% 제한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신설)

- 보험상품 판매시 은행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및 환급금, 은행 등이 수취하는 모집수수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확대 등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모집수수료를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와의 형평성, 보험계약자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수료 항목조항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사간 표준재휴계약 기준 도입 (내용심사)

- 은행 등 금융기관이 표준재휴계약서 보다 불리하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계약 체결을 금지

☞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험사간 불평등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재휴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의 재휴계약 체결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재휴계약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함. 다만, 법제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위임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신고의무 (강화)

- 보험상품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의 신고 기준을 강화(판매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기초 서류는 사업비 한도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 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보험료 인하효과가 미흡한 운영상의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비 한도규제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소비자의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2)

● 심사내용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강화)

- 연결재무제표 제출기간 연장대상을 모든 법인에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축소하고, 분기보고서의 감사인 검토대상범위를 자산총액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 대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을 방지하고 분기별 사업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선임, 공시의무 강화 등의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이고, 강화규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의 동일인 위험한도 신설 (강화)

-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의 거래 상대방(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위험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장외신용파생상품거래시 동일인 위험 한도를 자기자본의 5/100로 규정

※실무협의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된 신용파생상품거래 위험한도(자기 자본의 20%) 규제를 철회하고 일몰조항 설치권고를 수용

☞ 증권회사에 대해 장외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면서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신용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동일인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총액이 규제 한도(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용위험이 특정인에 집중될 경우 경영불안 요인이 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 시장여건이 성숙된 단계에서 동 규제가 거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규제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내용심사)

-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회사의 자본금 변경, 회사의 배당결정,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의 양수·양도, 회사의 해산 등으로 규정

☞ 법상 예시된 임원의 선임·해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과 유사한 주요 경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법에서 예시된 내용을 포함한 경영상의 중요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제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내부자거래 제한대상 유가증권 확대 (내용심사)

-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주식연계 증권(ELS), 기타 파생결합증권 중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권리행사결과 주식보유가 되는 경우에 내부자 거래 제한대상으로 추가

☞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유가증권을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유가 증권의 경우 거래가격이 기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식, 주식 관련채권, 주식 옵션 등과 유사하므로 내부자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5)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신설2)

◎ 심사내용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신설)

- 신탁회사 이사회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결의하도록 하고, 동 내부통제 기준을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무화

☞ 부동산신탁회사 등의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하여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 재산을 위탁받아 실적배당원칙에 따라 운용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동 내부통제기준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기준을 준용한 것은 신탁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은행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어 원안대로 의결

○외국금융기관의 신탁업 폐쇄시 인가(신설)

- 신탁업 폐지를 인가받고자 하는 외국금융기관은 폐지의 사유, 주주총회의 폐지 의사록 등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폐지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합병 등으로 신탁업을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법령위반 여부, 고객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신탁회사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6)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국유재산 임대시 보증금 예치대상 및 예치금액 규정(내용심사)

-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취함.

☞ 본 규정은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 증가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도입('04. 12)된 보증금제도를 구체화 한 것으로,

- 보증금 예치대상을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체납건수 78건(21.6%), 체납금액 33억 4천만원(79.2%))인 경우로 결정한 것은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 보증금 부과로 인한 국고 손실 감소, 소액 임대인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이라고 판단되며,
- 보증 예치금을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면서 이행보증조치 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이 현금과 보증보험중에서 예치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보증금 제도의 도입이 임차인에게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국유재산 사용에 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증금 산정방식이 민간보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 국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채권 확보 및 임차인의 책임의식 고양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 심사내용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강화)

- 제21조 제1항에 제 10호 추가

* 10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고시금액미만의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함.

☞ 동 규제는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폐지('06.말)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해소(판매 소득 연 5천억원 감소추정)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 현행제도의 미미한 판로지원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 민수시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중기청장 지정품목(142개 품목)에서의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이외에, △비지정 품목에 대하여도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
- 적용규모를 '2.1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제한경쟁의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금액(13만 SDR, WTO 조달협정)을 규정하고 있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자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2.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필요 한 경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경쟁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04. 10. 8)의 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사시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원안동의한 사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강화)

-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범위에 감독전문기관 감독자, 검사전문기관 검사자, 기타 입찰 · 계약관련위원회참가 민간인을 포함.

☞ 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도입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8)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 심사내용

· 대부계약 관계서류의 보관의무(신설)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자금수수내역, 담보관련서류를 대부계약 체결 후 2년간 보관해야 함.

☞ 대부업자로 하여금 대부계약서 등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 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에 곤란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2)

● 심사내용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설정 등 (내용심사)

- 보고요건 : 금융기관등이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등을 지급·영수한 경우
- 보고절차 :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보고의무 기준금액 : 5천만원*(단, 공과금 영수액 제외)

*부칙에서 2008. 1월부터 3천만원, 2010. 1월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됨 명시

- 보고방법 : 보고서식의 내용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등 보고수단 규정

☞ 고액 현금거래보고 의무의 기준금액 설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고객주의의무 신원확인사항의 규정 등(내용심사)

-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신원확인사항에 관하여 규정
 -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 :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달러
 - 신원확인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사항의 규정과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 설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10) 간접자산 투자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MMF 매입 · 환매 기준가격 산정방식 변경 (내용심사)

- MMF의 매입 · 환매시 매입 · 환매청구시점 이후에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미래 가격(매입 · 환매청구 당일 종가)을 적용

☞ 금번에 제정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칙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부칙에서 MMF의 매입과 환매시 적용할 기준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11) 관세법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승객예약정보 제공(신설)

- 세관장은 테러 · 마약 등 국제범죄 방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 · 저장하거나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실로 승객예약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이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수 선진국에서 도입 · 시행하고 있고, 국제항공 협정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법무부도 0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항공사 등의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열람하고 있으며, 이미 항공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세관공무원이 접근해 열람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

2. 금융감독위원회

집필자 : 이영호 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신탁업감독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7건 등 총 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1, 비중요21)

○심사대상 22건중 1건에 대하여는 조건부 동의하고,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9)	원안의결 3 조건부동의 1	내용심사 4 *비중요 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7)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8)	원안의결 5	내용심사 3 신설 2, *비중요 5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28)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1 조건부 동의 1	신설 4 강화 11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2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4)

● 심사내용

○ 지급여력금액(자본) 산정기준(강화)

-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을 납입자본금 범위내 → 자기자본의 50% 이내 (기발행 후순위채무는 만기까지 적용 유예)
- 투자주식(자회사 발행주식 제외)에 대한 지분법 회계적용시 공정가액이 장부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여력금액에서 차감

☞ 기준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에 따른 파급효과 최소화, 다른 금융권역의 규제내용 및 국제적인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적정성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및 환입기준(강화)

〈적립기준〉

- 적립한도 : 경과보험료×50% → 경과보험료×보험종목별 적립비율
- 매기적립액: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예정이익률(5%)의 50% ~ 100%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적립기준율의 35% ~ 100%

〈환입기준〉

- 경과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과위험손해율이 보험종목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 → 삭제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변경의 파급효과 및 국제적인 운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규제내용의 적정성 인정

○표준신계약비 산출시 종신보험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보험기간(25년 → 20년) 및 보험료 납입기간(10년 → 20년) 변경(강화)

☞ 보험종목간 형평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권 확충 등 기준변경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적정성 인정

○이익원천별 손익의 보고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하고, 보고기한을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로 규정(강화)

☞ 보험사 손익내역에 대한 시장규율 제고를 위해 공시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 작성 보고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규제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

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내용심사4)

● 심사내용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예정신계약비 산정기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세부 신고 기준 마련(내용심사)

-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예정신계약비를 표준신계약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설정(일반손해보험이외 상품)
- 보험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예정신계약비 대비 최고지급율을 설정·신고(일반손해보험이외 상품)
-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이 다른 모집채널 상품에 비해 높지 않도록 설계 등

☞ 보험소비자의 이익 제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 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다만, 환급형 제3보험상품 허용시점인 2006. 9월말까지 동 신고기준의 운용실태를 종합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간 불평등한 제휴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비용부담 등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을 마련 (내용심사)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월전까지 서면 통지
- 보험모집 비용, 보험모집 전산구축 비용 등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제휴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 이외에 성과급 지급 금지
- 부당판매로 보험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소유
- 이해관계 사항은 반드시 제휴계약서에 명시하고, 별도의 이면계약 금지

☞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는 업무제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 비용분담, 부당판매 책임, 보험계약 정보 활용 등 세부 부문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규제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 동의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중 3개 이상을 비교 · 설명한 후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토록 하고 설명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내용심사)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청약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

☞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감안할 때 보험상품의 설명방법 및 설명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됨.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8.8%로서 기존채널(4.4%)의 두 배

○금융기관의 모집인 제한규제(2인)의 예외로 인정되는 보험설계사 채용기준을 2년 이상 모집경력이 있으며 해촉된 지 6월 이상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내용심사)

☞ 2년 이상 경력자 채용을 통해 모집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채용대상을 해촉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설계인 관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등 세부 채용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비상장은행의 수시공시 항목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69조) 상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항목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강화)

☞ 현행 비상장은행의 수시공시 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상장은행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 보호와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상장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구조 변동 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상장은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시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4)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1, 신설1)

● 심사내용

○신탁회사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체적 기준 마련(강화)

- ① 고유부문과 구분되는 신탁전담부서 설치
- ②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 임·직원의 겸직 금지
- ③ 신탁재산에 대한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 보유
- ④ 미공개 신탁정보의 고유부문 및 타인에 대한 제공 금지
- ⑤ 고유부문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 금지

☞ 부동산개발 초기에 수탁받은 거액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여유자금의 운용 결과는 부동산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됨.

○신탁회사가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 대여거래 총액을 각 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50% 이내로 제한(신설)

☞ 현재까지 신탁회사의 유가증권 대여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2004년말 현재 해당 유가증가증권 보유액은 41.6조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관련 투자증권의 대여 한도가 투자증권의 50%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제한은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며, 건전한 신탁질서 확립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인정됨.

5)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2)

● 심사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수탁시 사전보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고생략 사항에 대하여 약식보고제 도입(강화)

☞ 현행 Positive 규제를 Negative 규제방식(원칙 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일반 개인 등 제3자와의 업무 위수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 신인도 확보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여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적합한 업무 위수탁을 사전에 방지 하고 업무 위수탁 실태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에 대하여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강화)

☞ 금융회사의 신인도 확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만들어 준수토록 한 것으로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책임소재 명확화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6) 금융기관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그 동안 기타조치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조치하고 있는 주의조치를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운용(정리보고 대상에 포함) 개선하는 한편, 2회이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3년이내에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제재 근거 명시(강화)

- ☞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제재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이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미한 위법·부당행위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7)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안(신설2, 내용심사3)

● 심사내용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인적요건(연금계리·전산·운용)과 물적요건(전산설비)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내용심사)
- ☞ 연금계리·전산·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설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일정 비용소요가 예상되나, 개별 금융업법령 등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원안 의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의 지표로서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신용등급은 투자적격(BBB-이상)이며, 자기자본비율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을 적용(신설)
- ☞ 금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과 원리금보장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적립금 운용방법 유가증권으로 국내외 상장주식·투자회사주식, 국채·지방채 및 국내외 투자적격채권, 국내외 수익증권, 투자적격 공모 ABS·MBS, 투자적격 CP, ELS(손실 40% 이내) 등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인을 지배·종속회사로 규정하여 동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적립금운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적립금운용 방법으로 RP매수, 장내외 파생금융상품 및 발행어음·표지어음을 규정(내용심사)
- ☞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을 위험성, 시장성, 유통성 등을 기준으로 운용에 제약이 없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기타 필요항목을 운용방법으로 추가함으로써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확정기여형과 개인 퇴직 계좌에서 간접투자 운용방법별 위험자산의 총투자한도를 40%로 설정(내용심사)

- 확정급여형 : 주식,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및 파생펀드 등 30%, 혼합형간접투자증권, 고위험 간접투자증권 및 외국 투자적격채권 등 40%, 동일인 주식 10% (총 주식 10%), 동일법인 사채 등 5%, 동일계열 사채 등 15%, 사용자와 계열회사 등 사채 등 5%
- 확정기여형 : 외국유가증권 30%, 사용자와 계열회사 등 사채 등 10%, 동일기업 발행 유가증권 30%

☞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규정하여 일정 투자한도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신설)

- 약관 시행 10영업일전 금융감독위원회앞 보고 및 감독원장의 변경명령(협회의 표준 약관 제정 및 보고, 약관의 작성기준)
- 분기별 · 연별 업무보고서 및 감독원장 요구 자료의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종류, 약관등의 인터넷 공시

☞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8)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신설1, 강화1)

● 심사내용

○신탁자금의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강화)

- 신탁계정과의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경우 고유계정의 유가증권 중개업무를 금지 하되, 고액(3억원 이상)의 특정금전신탁이거나 장내거래 주식 운용은 예외 인정
- 신탁계정과의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경우 신탁자금으로 고유계정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을 금지하되,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은 예외 인정
-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수탁고의 10%로 설정 하되,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한도에서 제외

☞ 신탁자금의 유가증권 운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3억원 이상의 특정 금전신탁 고객은 신탁회사의 재량적 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장내거래 주식은 가격 결정이 투명하여 이들을 통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유 부문에 대한 부당지원, 고유부문의 부실 이전 및 계열회사 지원 가능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신탁경영금융기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정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향후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신설)

☞ 현재 금융권별 적기시정조치 대상 재무건전성 비율을 감안하면 동 심사기준은 이를 다소 상회하여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현행 난외거래에 대해서는 ‘고정이하 확정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난외거래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강화)

☞ 신BIS기준 및 미국회계기준 등에서 신용리스크를 수반하는 난외거래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3.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김석중 사무관(Tel. 2100-2467, ksj1903@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5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1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강화 등의 규제는 4건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제 271차 경제1분과 (2005. 2. 25)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 1 *중요 2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2)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비중요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21)	원안의결 1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표시·광고사향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 285차 경제1분과 (2005. 12. 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3	강화 5 내용심사 4 신설 2 *중요 2, 비중요 9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화1, 내용심사1)

● 심사내용

○출자총액제한 졸업제도 중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기준을 폐지(강화)

☞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 기준자체가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졸업 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내용심사)

- ☞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공시대상 정보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공시대상 체계를 따르고 있어 그 내용이 적절하며,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심사1)

● 심사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의법률을 새로 적용받게 되는 용역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로 설정(내용심사)

- ☞ 용역(서비스)분야의 사업체수(약244만개)는 전체 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용역분야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 개정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용역사업의 특성상 실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도 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큰 편이므로, 현실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 사업규모, 대상업체 수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현저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추가(강화)
- ☞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현행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생명,

신체상의 위해)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시 · 광고를 둘러싼 분쟁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관련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등이 제출해야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기간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하여 표시 ·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시까지 당해 표시 ·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강화)

☞ 현행 실증자료 제출기간이 다소 길어 허위광고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기간 단축 및 기간 내 미제출시 중지명령 등 동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부정확한 자료제출과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단축기간을 15일 정도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사업자등의 표시 · 광고 행위가 부당하거나 자율규약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등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는 예외) 아울러, 자율심의기구는 표시 · 광고행위를 심의함에 있어 불공정한 판단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표시 · 광고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음.(신설)

4)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강화1)

● 심사내용

○상품판매나 거래분야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표시 · 광고행위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정보사항에 자격증 분야, 전화 정보서비스 분야, 체형 · 피부관리 서비스업종 분야, 토지분양 업종 분야, 렌탈 서비스 업종 분야를 추가함.(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부족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여, 사업자가 상품의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업종을 중요 정보사항으로 추가하는데에 따른 공청회 개최·관련부처협의 결과 이견이 없으며, 관련사업자 단체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심사2)

● 심사내용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는 제3자의 범위(자격요건등)를 아래와 같이 설정(내용심사)

-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자
-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신용사업부문)
- 상법 제170조에서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정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각각 5억원 이상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재무 건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하여야 함.

☞ 소비자의 거래안전장치로 도입한 ‘제3자에 의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필수요건으로서 은행법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금융기관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치 않으나, 민간사업자(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본개정안중 민간결제대금예치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정부(재정경제부)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중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등록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자금융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은 소관부처(재정경제부)에서 규정하는것이 타당하므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본시행령상의 민간결제대금 예치사업자의

자격요건 규정은 「전자 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등록 요건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면제되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10만원 미만으로 정함.(내용심사)

☞ 거래의 원활을기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최고 한도액(10만원) 수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

4. 기획예산처

집필자 : 이영호 사무관 (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용심사 5건을 규제 심사(비중요 5)

○심사대상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0건임.

<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5)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계	-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5)

● 심사내용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규모 (내용심사)

-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규정

☞ 투융자회사의 특성(대규모 투자, 장기 투자회임기간, 공익성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시행령(안)의 자본금 규모 및 최저순자산액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개정전에도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현행과 동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10억원

○주식청약서 기재사항(내용심사)

- 투융자회사를 모집설립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자에게 제공
 -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
 -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주식청약서 기재사항은 구 증권투자회사법에서 증권투자회사의 모집 설립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발행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발기인의 주식의무 취득비율(내용심사)

- 투융자회사가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식의무취득비율을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투융자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기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의 유사사례 등과 비교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도 동일하게 규정

○투융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 투융자회사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발행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정함.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막대한 자금투자를 신주 발행에 의해서만 조달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투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차입을 허용하되,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차입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준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조건(내용심사)

- 투융자회사가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산정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34조의4)
 -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되 투융자회사 주식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 등의 일반공모증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에는 일반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기준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신주 발행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투융자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5. 관세청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 (Tel. 2100-2429, leesa@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규정(고시) 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2건에 대해 규제를 심사(중요1, 비중요1)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제 282차 경제1분과 (2005. 9. 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강화2 *중요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여행자휴대품의 반송제한 대상물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반송기간·반송방법·반송

절차 등 제한내용에 대해 세부기준을 정하며,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함.(강화)

- 반송제한 대상물품의 범위 규정 : 상용품 과다반입자 · 빈번 출입국자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중에 있는자가 반입하여 유치되는 물품으로 한정(단, 살아있는 동 · 식물과 부패 또는 변질로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농림 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은 제외)
- 반송기간 제한 : 유치일로부터 1개월간 반송을 불허
- 반송방법 및 절차 제한 : 취득가격 100만원이상 상용공산품에 대해서는 반송 방법을 B/L반송으로 제한, 반송절차를 정식 EDI 반송신고로 제한(유치서에 의한 간이반송 불허)

☞ 본 규제는 2차례에 걸친 경제1분과위의 규제심사('03. 3. 5, '03. 4. 23) 및 규제개혁 위원회 사무국의 실태조사('03. 3. 11~12)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된 사항이나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규제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음.

따라서 상용품의 과다반입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율과 반송율을 기준으로 한 규제 수단의 성과 및 체화량 증가 등의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효과가 입증된 상용공산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연장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중 신고대상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대상물품이 없음을 구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강화)

☞ 신고서 제출 확대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테러위험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안의결하되 규제강화의 효과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분석 ·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향후에(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종료 후) 규제개혁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권고함.

6. 통계청

집필자 : 이영호 사무관(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통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6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8)

○심사대상 8건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통계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 통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통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예비심사 (2005. 11. 18)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6 *비중요 8
계	-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6 *비중요 8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통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신설2, 강화6)

● 심사내용

○지정기관의 지정 및 철회 (강화)

- 통계청장은 기관·법인 등의 신청에 의해 지정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평가 및 의사결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않거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정기관 철회를 할 수 있음.

- ☞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정부의 정책수립 ·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가 통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작성된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통계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문제점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국가운영에 필요한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통계생산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철회사유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들(△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표준분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통계청장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필요하지만,
 - 직권지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민간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직권지정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지정하며, 지정절차도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개선권고

○통계정책책임관의 지정 · 운용(신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 · 보급 ·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할 통계 정책책임관을 지정 · 운용하여야 함.

- ☞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의 생산과 보급, 국가통계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통계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통계품질진단의 실시(강화)

- 통계청장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보급의 제반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해소, 국가통계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의 통계작성 절차(조사기획, 모집단 및 표본, 조사표설계, 조사직원 관리, 조사실시, 자료처리 및 이용)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자체 품질진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UN, OECD, IMF, 유럽통계청,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 · 운영 중

○통계작성의 승인 및 철회(강화)

-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의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당시에 비해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 통계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 또는 지정 철회사유 규정

- ☞ 통계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하며, 정책의 수립 등에 반드시 필요한 통계라면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통계승인을 해주는 것이 국가통계의 품질유지에 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국가의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는 국가통계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통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이나 통계조사가 중복되어 민간에 부담을 주는 통계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통계가 다르고, 활용의 가치가 낮은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통계의 지정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행정자료 및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설)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통계작성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심사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제공 가능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유지·관리하여야 함.

- ☞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취득·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를 제공받는 것은 통계의 개발과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 및 중복조사 제한을 통한 응답률 제고에 필요하고,
- 통계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은 통계조사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 경감, 가공통계의 생산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조사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판단되며,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도 학술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마련

-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환경의 변화, 표본 및 응답자가 변경되면 동일한 결과를 재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경제통계의 경우 장기시계열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작성된 통계마이크로 데이터를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보관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자료제출 명령(강화)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게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개념이 국가통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통계에 한해 부과되던 과태료(자료제출 불응 등의 경우에 부과) 부과 대상이 확대(90종→266종)됨에 따라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조사까지 조사에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에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과태료부과 대상통계 범위를 지정통계수준으로 축소하도록 개선 권고(과태료 부과대상 통계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기로 통계청이 수용)

○통계자료의 보급(강화)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연계를 통해 통계자료의 원활한 보급 및 이용확대를 도모하고, 통계DB미구축으로 인한 통계자료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과태료 부과(강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료의 제출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응답거부, 기피, 허위응답한 자
-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 목적외 사용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승인이나 협의 없이 통계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 표준분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
- 자료제출 명령 시행에 관해 사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통계자료 또는 통계자료 소멸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 통계마이크로데이터 보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통계작성사무 개선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표준분류 내용변경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과태료 금액 상승은 95년에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으로써 범규준수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대상이 통계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작성되었고, 범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전협의 과정에서 철회권고(통계청 수용)

- 사무국은 새로운 통계작성 및 보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통계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는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당해 규제를 철회할 것을 권고

제 3 절 산업자원분야

집필자 : 이순아 사무관 (Tel. 2100-2429, leesa@opc.go.kr)

1. 산업자원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3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71건, 내용심사 51건 등 총 15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54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4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32건임.

<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 268차 경제1분과 (2005. 1. 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 269차 경제1분과 (2005. 1. 28)	원안의결 1	강화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규정(고시) 개정안	제 270차 경제1분과 (2005. 2. 4)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제 271차 경제1분과 (2005. 2. 25)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72차 경제1분과 (2005. 3. 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6	강화 6, 내용심사 11 * 중요 3, 비중요 1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30)	원안의결 8	강화 2, 내용 6 *비중요 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제 278차 경제1분과 (2005. 6. 10)	개선권고 5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9 *중요 2, 비중요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3 *비중요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80차 경제1분과 (2005. 7. 8)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3, 강화 2 *중요 2, 비중요 3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2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8)	원안의결 4	강화 4 * 비중요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8)	원안의결 7	강화 3, 내용심사 4 * 비중요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5. 8. 8)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29)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05. 9. 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3)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3)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6)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6)	원안의결 11	신설 3, 강화 8 *비중요 1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2)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4)	원안의결 8	신설 4, 강화 4 *비중요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0)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3)	원안의결 7	강화 5, 내용심사 2 *비중요 7
계량에 관한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공산품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85차 경제1분과 (2005. 12. 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강화 6 *중요1, 비중요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3)	원안의결 8	내용심사 8 *비중요 8
계	-	개선권고 12 원안의결 142	신설 32 강화 72 내용심사 50 *중요 20 *비중요 134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신설3)

● 심사내용

○설치사업자는 당해 관리시설에 반입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발생자로부터 반입 수수료 징수하고 징수한 반입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유치지역에 납부토록 의무화 (신설)

☞ 유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방안으로써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유치지역의 국고보조금사업·지방교부세사업·지방양여금사업 중 5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유치지역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신설)

☞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중 하나로, 실제 수해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유치지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시책이라는 정책적 배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중 납부금액의 사용 또는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보고,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 방해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지원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행정조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사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여 조사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해외산업단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10만㎡이상의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 해외산업단지 개발현황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고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2차레에 걸쳐 원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연료(중유·LNG)의 환급을 폐지 (강화)

*'05. 03. 01 : 9.75 → 15.48원/kg,

*'07. 01. 01 : 15.48 → 21.21원/kg

- ☞ 에너지 이용의 왜곡 시정에 특별회계재원 확보 및 타에너지원과의 부과금형평성과 부과금 인상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압력은 공급비용 절감, 가스공사의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상쇄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고, 발전용연료에 대한 부과금 환급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보조금 지원방식인 현행 부과금 환급제도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4)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승용자동차(LPG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 자동차 제작자 (수입자동차의 경우 적용시기 유예하여 '10년부터 시행하고' 09년에 적용시기를 재검토)는 기준평균연비(km/ℓ)를 배기량에 따라 달성하도록 하고 (1,500cc이하 12.4, 1,500cc초과 9.6) 경차판매량 및 기준초과달성분은 크레디트를 부여하여 당해연도 부족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기준평균 미달시에는 개선명령을 하되 기준평균에 미달되더라도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 또는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을 이행했을 경우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내용을 공표
- 공표내용은 제작자명, 대표자명, 세부동일차종현황, 기준평균연비 미달현황 등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검사기준 관련 사항 강화

- ☞ 자동차제작사의 연비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02년도에 도입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06년 평균 소비효율 제도 운영 결과 및 개선명령 사항 등을 규개위에 보고하고('07년 1/4분기중), 개선명령 이행기간('08. 12. 31)이후 '09년 1/4분기 중 본 제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 심사내용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규정 (내용심사)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자 1인이상 채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에 등록 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사용시설 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요자수3천(공동주택의 경우 4천) 마다 1인이상 채용

☞ 법 신설에 따라 대행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행규칙 공포 후 1년의 적용기간동안 소비자에 대한 추가 부담정도 및 안전성 향상 추이 등 제도의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및 책임·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강화)

☞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규정의 준수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전관리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정압기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경우 신규설치만 신고대상이었으나, 변경공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강화)

☞ 변경공사시 설비의 재배치에 따른 위치변경, 큰 관경으로의 배관교체 또는 증설 등이 이루어지므로 신고를 통한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6, 내용심사11)

● 심사내용

○법 위임에 따라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요건과 서류 및 변경등록 사항 등을 규정 (내용심사)

- 등록요건은 제조시설(제조업자에 한함), 내수판매량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

시설(자가소비수입업자 20일분)

- 등록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품질시험서
- 변경등록기간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이며, 변경등록 사항은 성명 및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및 제조시설 소재지 및 제조능력

☞ 현재 석유제조 ·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석유대체 연료의 보급규모가 소량인 점, 과도한 부담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과 종류 및 변경등록사항 등을 규정 (내용심사)

- 종류는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로 구분하고, 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판매업별 저장 시설, 수송장비 기준 설정
- 판매업의 등록서류 규정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저장시설현황, 수송장비 명세서
- 변경등록기간은 사유발생 30일 이내로 하고 변경등록 사항은 성명 및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로 함.

☞ 기존의 석유판매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사업자관리, 유통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보고 · 검사 대상을 20kl이하 모든 일반판매소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석유 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보고 · 검사 사항 및 기한 규정 (강화)

☞ 20kl이하 모든 일반판매소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석유대체연료의 유형을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로 규정 (내용심사)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생산 · 수입현황 및 외국의 사용현황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4원, 천연역청유:10원 ('06. 1. 1부터 시행, 천연역청유는 '09. 1월부터 부과)

- ☞ 대체연료가 부과금 관련법규의 미비로 면세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저가로 유통됨으로 인한 유통질서 저해 및 국가 경제적으로 비경제적 연료를 선택하게 되는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
- ※천연역청유의 경우 사용을 위해 일부 시설교체등의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징수시기를 3년간 유예

○품질검사시 부과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 (강화)

- ☞ 부과금납부확인서를 품질검사 단계에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부과금을 체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최소기준을 현행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 저장시설에서 60일분 또는 1만킬로리터중 큰 양의 저장시설(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갖추도록 할 것)로 정함.(강화)

- ☞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저장시설을 구비토록 함에 따라 내수판매량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저장시설구비 없이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대리점업자와 경쟁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토록 하고 휴·폐업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 법개정으로 사업개시기간 및 휴·폐업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04. 10. 22) 하위 규정에서 시행시기 및 신고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을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kl이상의 저장시설, 석유 가스 3천톤이상의 저장시설로 규정 (내용심사)

- ☞ 비축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입하여야 하므로 수출입업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수급안정명령대상인 신고대상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및 신고대상자 범위를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으로 월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자로 정함.(내용심사)

☞ 용제(solvent)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은 유사휘발유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비축대상 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를 규정하고,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기준물량 산출방법 규정 (내용심사)

☞ 석유수급상의 위기발생시 석유대체연료로 파급될 가능성을 고려, 일정한 비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규정에 따라 비축의무 부과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연료에 석유대체연료 추가하고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석유판매업자의 취급 대상석유제품이 아닌 정제연료유의 판매를 금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강화)

☞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규정을 명확히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판매업 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하여 판매시설없이 변칙으로 차량으로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자 함.(강화)

☞ 이동탱크저장시설 허가만을 득하여 석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시 완공검사필증사본을 첨부토록 하여 차량만으로 판매하는 변칙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품질검사 수수료를 1리터당 0.3원이하의 범위에서 고시는 금액으로 함.(내용심사)

☞ 품질검사의 대상 및 방법, 수수료를 석유제품에 준하여 설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물량의 범위를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 저유소, 해상 구축물, 송유관부속 저장시설,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인 유조선, 해상구축물, 연안선박으로 규정(내용심사)

☞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 한 것으로 산출방법 및 물량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행위금지의 예외로써 정제업자·수출입업자 상호간의 초과 판매량이 전년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제한 양의 1/100미만인 것까지 허용하고 정제업자·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석유가스,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기타 고시하는 제품) (내용 심사)

☞ 국내 석유수급 조절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간에 판매범위를 1/100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원안의결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상한액이 상향조정(2억→20억)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조정(2억→10억)하고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의무위반시 행정처분기준·과징금부과기준·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 (강화)

☞ 법령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부과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2)

● 심사내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부품·소재수요업체도 투자조합의 결성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품·소재를 수요하는 기업등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 법인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투자조합 결성주체로서 부품·소재 수요기업의 일정자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합결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의 안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투자 의무 비율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출자금의 100분의 51이상의 금액으로 의무투자비율을 규정 (내용심사)

☞ 법률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법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8)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를 추가하고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의 최저소비효율 기준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의 목표소비효율을 상향조정 (강화)

☞ 전기드럼세탁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풍기의 경우 여름철 피크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간 보급대수가 200만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형광램프용안정기는 04년도에 40W형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이 조정됨에 따라, 세트로 사용되는 안정기의 효율기준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경우, 1~2등급제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제품 선별의 기준으로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원안대로 의결

9)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3, 내용심사6)

● 심사내용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 및 대상부품을 규정 (내용심사)
- 승강기안전부품을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완충기,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개문

출발 방지장치 포함), 승강장문잠금장치 등 5종으로 규정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시험·검사에 대한 안전기준, 생산 체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생산체계평가기준을 정함.

- 안전부품제조업자에 대한 공장검사는 매2년 마다 실시하며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승강기 안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의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
- 제조업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부품의 품명 및 모델,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검사자의 성명, 검사수량, 검사내용, 검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함
- 기표원장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승강기 안전부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의 잘못된 고장 등으로 소비자보호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 인증을 받은 후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 이를 표시하도록 함.

☞ 승강기 사고시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 부품을 강제인증대상 안전 부품으로 규정하고 공장검사는 인증 받은 부품이 적정하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인증부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제조업자의 자체검사 및 시판품 조사의 요건 및 절차를 법 위임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안전인증의 지정기준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5인이상의 전문인력), 지정취소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 제조업자, 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지닐 것, 관련시험항목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정하고 지정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품의 사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되 유사법령을 준용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승강기 보수업의 보험 배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사고당 배상한도액을 1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1인당 배상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연간 배상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이상으로 강화 (강화)

☞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배상한도액을 현실화한 것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정기검사를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에 신청하여 그 검사에 합격한 관리주체로서 최근 3년간 자체점검실적이 양호한 경우 (전항목 “A”)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실시) 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연속하여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부적합사항이 있는 승강기,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승강기, 특별관리 대상승강기로 지정중이거나 지정해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승강기는 연장을 불가하도록 함. (내용심사)

☞ ‘승강기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에 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여 원안의결

○제조업자가 2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보수용 부품으로, 엘리베이터 (22개 품목) 및 에스컬레이터 (10개 품목)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내용심사)

☞ 보수업 영역확보를 위한 부품 공급 기피 및 이에 따른 유사부품 사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시적으로 부품공급의무가 규정됨에 따라(‘04. 12. 31, 의원입법), 업계토론회 및 공청회 등 관련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검사대상승강기 전기도면 (완성검사시),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승강기부속품 목록(승강기 안전부품 인증번호 포함)을 추가 (강화)

☞ 승강기는 기계·전기설비의 성격이므로, 전기도면을 통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인증시 확인된 승강기부속품의 유지·관리상태 검사 및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보수품질우수기업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보수업등록증 사본,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보수계약서사본)하도록 하고, 현장실사를 병행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된 업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승강기가 보수부실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보수품질 경쟁 촉진 및 업체간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를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 골절, 심한 출혈·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으로 인한 파상, 신체에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 표면에 5%이상의 부상, 내장의 손상으로 정의 하고, 사고발생 통보방법을 정하며, 사고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사고의 범위, 사고 통보방법 및 사고조사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항공사고조사 위원회운영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0)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관련 절차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을 명하기 전에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대상자원, 반입 물량, 반입시기, 반입가격, 반입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융자금을 회수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고,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 융자원리금 상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긴급상황시 해외자원개발 반입명령권이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반입을 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용자 원리금 상환을 용자업무대행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대로 의결

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신설4, 강화9)

● 심사내용

- 국내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 및 국외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이 국내 인증업무에 대한 인증현황을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신설)
- ☞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인증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신고의무를 부과 하여 관리 공백상태에 있는 외국계 인증기관의 현황 및 인증실태를 파악을 통한 ISO인증의 신뢰성을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현재 임의인증제도인 ‘안전검정제도’를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로 강화하여 자기 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의무화(강화)
 - 신고시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득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신고한 공산품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 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와 포장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확인표시 없는 공산품은 사용 · 판매를 금지함.
 - 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을 금지함.
- ☞ 현행 안전검정제도가 임의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검정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가 위협에 노출되더라도 제재나 리콜 등의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제 하는

자기 적합성선언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상 공산품은 위해사례 조사 결과 및 제품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수입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대상공산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판매 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로 하여금(제조업자의)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 토록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하위법령 규정시 그 대상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권고

- 현행 공산품 안전검사를 안전인증제로 강화하되, 대상 공산품을 축소 조정 (강화)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대해 국내제조업자는 출고 전에, 외국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
 - 안전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유통중인 대상 공산품에 대해 연 1회이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인증받은 공산품은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금지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판매·사용 금지
 - 거짓등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 등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6개월내에 인증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강제 검사제도로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검사시 제출했던 제품(시료)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어 근본적인 위해 저감을 위해 제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 시스템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 다만 이러한 인증대상공산품은 위해사례 분석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품목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인증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에 맞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법인 중에서 지정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 기간 동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현행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정하면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현행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 품질표시를 의무화 (강화)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시기준(산업자원부고시)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와 그 밖의 표시(품질의 표시 등)를 하도록 하고 거짓 품질의 표시 및 임의 변경, 제거를 금지함.
- 판매업자는 품질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 ☞ 소비자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공산품에 한하여 의무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된 경우 당해사실을 언론매체 또는 정보망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공급자에게 당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판매의 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공표 및 조치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

○판매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산품·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서 관련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강화)

- ☞ 안전관리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인증·자기적합성선언·품질표시·어린이 보호포장 등의 제도도입에 따라 기존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포장을 하였음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조·수입 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포장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강화)

- 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등이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하여서는 안됨.

☞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합하게 했는지를 판단하고, 사후관리시에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제도에는 동의하나 제조·수입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 하였다고 하여 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로 하여금(제조업 자의)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하위법령 규정시 그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산품(특정외공산품)에 대한 위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어린이·노약자·장애인등의 안전에 관계되는 등 위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언론매체 또는 정보망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또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 또는 안전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한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신중제품에 대하여 위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법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전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산품 또는 어린이 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공급자에게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정공산품의 설비 등을 검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안전관리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인증·자기적합성선언·품질표시·

어린이 보호포장 등과 관련된 규정의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여 원안의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표시를 아니하거나 변경한 경우 등의 경우 제조중지 · 수입중지 · 판매중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불법 · 불량 공산품에 의한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보고 · 검사 결과에 따라 특정공산품이 소비자의 생명 · 신체의 위해 · 재산의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또는 정보망 등을 통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보고 ·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하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법에 추가되는 규정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강화)

-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 한 자 및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 보관한 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불법 · 불량 공산품에 의한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3)

● 심사내용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 · 재생에너지발전 · 공급 전기의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원별 표준공사비·운전유지비·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설비용량·수명기간·사고보수율 등을 감안한 설계치 및 실적치, 원별 기술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여건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발전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비용요소와 시장보급여건, 발전사업자의 실적 등을 기준가격 산정시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발전차액산정을 위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 중단을 하고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발전차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 (내용심사)

☞ 법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처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기술인력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내용심사)

- 등록기준을 사업별로 정하여 태양에너지의 경우 인력(기술인력 3인 이상), 자본금(개인 : 4억, 법인 3억 이상), 풍력은 인력(기술인력 4인 이상), 자본금(개인 : 5억, 법인 4억 이상), 지열에너지는 인력(기술인력 4인 이상), 자본금(개인 : 4억, 법인 3억 이상), 모든에너지의 경우 인력(기술인력 6인 이상), 자본금(개인 : 8억, 법인 6억 이상)을 갖추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 기술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이 타 법령상의 유사업종에 비해 과도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요건규정만을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강화1)

● 심사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 미준수시에는 에너지관리지도를 실시하며 에너지진단 미이행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국가적인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진단 대상 및 범위, 진단 주기, 진단기관의 자격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종합대책(04.12.28)』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에 반영한 사항)

1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신설3, 강화2)

◎ 심사내용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공공성 · 중립성을 보장할 사업자에게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단수사업자를 지정 (강화)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의 중계 · 보관 · 증명을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효율성 및 공공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바 복수로 지정할 경우 인프라구축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나, 그 편익은 전담지정에 따른 경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무역유관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복수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한 보안 및 상호연계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지정하여 전담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에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 등 인프라의 공공적 · 중립적 운영을 위해 업무준칙신고, 역무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의무를 기반사업자에게 부과 (신설)

- ☞ 전자무역기반시설이라는 공적 인프라를 운영하는 '전담사업자'의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준칙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기반사업자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및 보관의 안전

성과 전자무역문서에 대한 증명의 정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준칙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기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산자부장관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등 업무의 안전성과 증명의 정확성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반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음.

☞ 「행정조사제도 개선방안」(’04. 12,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라 자료제출, 현장검사이시 조사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L/G(화물선취보증서)와 D/O(화물인도지시서)등 8종의 전자문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유통하도록 의무화(강화)

☞ N : N간 반복·유통되는 무역문서를 중계·보관·증명함에 따라 문서의 원본성을 보장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중계가 필수적이므로 일정수준의 중계 의무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문서의 양식통일 등을 고려하여 문서별(8종)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통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전자무역전문 서비스업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한정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신설)

☞ 시장형성단계임을 고려하여,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15)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1, 강화2)

● 심사내용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도록 의무화(구조검사는 폐지)하고, 국가(기술표준원)가 수행하던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 (강화)

- ☞ 구조검사가 사실상 형식승인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됨으로써 구조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형식승인을 통한 상호인정제도가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현행 16개 품목 중 단순한 계량기(분동, 추 등)의 경우 일반적인 형식승인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기준 및 승인절차를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자체검정 업무를 행한 때, 자체검점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1년 이내)요건규정 (신설)

- ☞ 자체검점사업자 지정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 선언표시를 한 자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화)

- ☞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에 따라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 으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6)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강화4)

● 심사내용

○주요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라인마크를 관말지점에도 설치하도록 함.(강화)

- ☞ 굴착공사시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위해 공급관 끝에도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정압기지의 지진감지장치 성능기준을 규정(가속도계의 성능, 속도계의 성능, 기록계의 성능) (강화)

☞ '02년 한국지진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진응답계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성능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밀폐식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제한하여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등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질식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하되 배기통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 또는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환기구가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 (강화)

☞ 분리된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 베란다 등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집안내부에 설치·사용되는 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환기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기 때문에 배기통이 이탈되는 경우 가스가 바로 집안에 유출되어, 사망사고를 불러 오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조치 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배기통을 설치할 때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부에 내열실리콘 등 내열성을 갖는 재료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함.(강화)

☞ 석고붕대로 마감조치를 하는 보일러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사용시 갈라지고 틈이 생겨 가스 누출의 위험이 큼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가스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내열성을 갖는 재료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3, 내용심사4)

● 심사내용

○안전인증의 처리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절연내력 등 중요시험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때,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자체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절연거리시험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때 6개월 범위내에서 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며, 표시사항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부적합한때,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때 등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안전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관의 처리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범위임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취소, 사용금지 조치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조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경우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현행 전기세탁기, 냉장고, 램프용 안정기 등 216개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신개발품 · 신제품 등으로 안전위해성이 높은 15개 품목 신규로 지정 (강화)

- 음식물처리기, 전기욕조(발욕조, 반신욕조), 주방용전동기기(전기칼집, 전기깡통 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8품목)
- 방전램프(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무전극램프), 조명기구용 조광기 (5품목)
- 전기훈증살충기, 프로젝터 (2품목)

- ☞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지정요청, 미국 및 EU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지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 · 수입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품 시험수수료는 인증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필증을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하도록 함.(내용심사)

- ☞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성 인정되어 원안 의결

○정기검사 전부면제 및 일부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연속하여 2회이상 자체검사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때 차기1회의 정기검사를 전부면제하고 2회이상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또는 자체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사항을 면제 (내용심사)

- 또한 인증기관이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유통중인 전기용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인정된 때를 정함.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및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인증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증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품에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법 규정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안전검사를 받은자’는 안전검사현황, 수입수량,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강화)

☞ 수입 중고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법에 도입되어, 불법·불량제품 조사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기록은 3년 이상 보관토록 기간을 설정 (강화)

☞ 정기검사는 1년 또는 2년(품질우수업체)에 1회 실시하므로 제조업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록은 3년 이상 보관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1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3)

● 심사내용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사금액’을「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 (내용 심사)

☞ ‘공사금액’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규정을 준용하고, ‘지역사업자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보고 및 조사시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한 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부과액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관리사업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때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500만원,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내용심사)

☞ 종별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관한 것으로 원안의결

○폐기물반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규정 (내용심사)

- 수수료는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처분수수료)와 지역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지원수수료)를 합하여 설정하고, 처분수수료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원수수료는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만원으로 함

- 지원수수료의 지자체 귀속비율은 100분의 75로 함.

☞ 처분수수료는 현행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징수하고 지원수수료는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규모를 감안 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특별법의 수수료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의결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안전기준 규정 고시 제정안(내용심사)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등 7종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함.(내용심사)

☞ 음용시 중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 새로이 규정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대상

품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 원안의결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법 개정안(신설2, 강화2)

● 심사내용

○재제조제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제품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득한 재제조 사업자는 재제조표시를 하고, 원제품의 상호 또는 상표를 삭제토록 하며 인증을 득하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강화)

☞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하며, 인증제 자체가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규제 비용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품질제고 측면에서 규제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제조업자 등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하위법령에서 제품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신설),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강화)

☞ 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증현황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인정 기관, 인증기관, 기업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에 따라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에 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국내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인정기관에게 당해 인증기관의 인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인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의 규제로, 인정기관에게 인증 기관에 대한 부실 인증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2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4)

● 심사내용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을 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일정비율이상 감소하거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의 생산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비율이상 감소하였을 것, 기업 소속의 일정수 이상 근로자가 실직, 부분실직, 또는 그 위험에 처하였을 것, 무역피해의 주된 원인이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기인하였을 것,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규정함.(신설)
 - 조정기업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고 무역위원회와 조정계획평가단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 · 통보하도록 하고 무역조정기업이 지정 신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속근로자의 무역조정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함.
- ☞ 법제정 취지에 따라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의 지원이 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및 절차의 필요성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국제사례에 비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요건으로 완전 실직 또는 부분실직에 처하였거나 그 위험에 처하였을 것,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납품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의 하청 생산기업, 협정체결로 인해 해당제품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것, 무역조정계획이 근로자의 경쟁력확보 및 전직 등의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규정 (신설)
- ☞ FTA 등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비취 봤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지정을 받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으로, 지원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무역조정기업은 지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 이행의 착수보고서를, 3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동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무역피해기업, 관계기관 등에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명하고 무역조정 계획 이행상황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계획서 작성비용이 소요되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실히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편익이 발생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22)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주택법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강화)
- ☞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공공성이 크며 실소유자와 건설업체가 분리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주택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부조리를 예방하고, 책임감리를 달성하며,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 및 배치신고의무를 법에 상향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2, 강화2)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하고자 할 때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하고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변경신고포함)하도록 하며, 배치하지 않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 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신고 및 완료보고서 제출을 통해 책임감리 및 이중감리방지의 편익이 기대되며 타법상 감리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강화)
- ☞ 현재 제조업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시설구역내에 입주한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여 입주계약시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비제조업 영위자도 사업개시신고 전에 용지 및 건축물을 처분할 경우 그 가격을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할 경우에도, 공장 등 설립완료신고 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함. (강화)
- ☞ 현재 제조업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시설구역내에 입주한 비제조업의 경우 및 분할된 용지를 취득하는 자에도 처분시 판매가격을 원 취득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공장설립과 무관하게 시가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비제조업 영위자도 제조업 영위자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함.(강화)
- ☞ 산업단지의 슬럼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용지 분할시 일정규모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소면적으로 산업단지를 분할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영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임대사업자가 법상 의무임대계약 기간 전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게 취득가격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이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신설)
 - 3~5년의 의무임대기간 전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기간 전에 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취득가격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용지 등 구입 전에 입주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관리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때 선의의 양수인이 의무임대기간 전에 처분될 용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함.
- ☞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입주를 허용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법정 임대계약기간 전에 이를 처분하고, 매수차익을 보는 투기성 임대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불가 피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농공단지내에서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장 등의 철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단, 부지소유권이 관리권자(시·군)에게 있는 경우)(신설)
- ☞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철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2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2)

● 심사내용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공정무역질서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법규정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법상에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는 잠정조치 대상 물품의 수출, 수출목적의 제조 · 수입,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반입배제(수입, 통관 절차 후 국내유통 금지)로 구체화(내용심사)

☞ 법상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가능한 시정조치 중 잠정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열거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

25)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3, 강화8)

● 심사내용

- 생물무기의 개발, 지원,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생물무기 개발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 제조 · 획득 · 보유 · 비축 · 이전 · 운송 또는 사용(이하 ‘개발 등’) 하는 행위를 금지(강화)

☞ 우리나라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에 1987년에 가입함으로써 BWC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행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생물무기 개발 등을 금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개발 등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신설)

- ☞ 생물무기로 이용 가능한 생물작용제 등을 개발하는 자는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신고토록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의도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사용 전에 보안관리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에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 방침, 보안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자체점검방법, 종업원 보안교육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획서 제출자 및 종사자는 계획을 수행하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 하도록 함.(신설)
- ☞ 상시적이고 업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자 등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및 자료제출·설명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여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령에서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업체부담을 최소화하여 시행토록하여 원안대로 의결
- 기존의 화학무기에 적용되던 수출입허가 등의 규제를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도 적용하여 개발 등의 정지, 폐지신고, 폐기의무 부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출입 허가, 비밀보호 의무, 장부비치의무를 부과 (강화 6건)
- ☞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화학무기와 같이 위험성이 검증된 생물작용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액수를 상향조정하여 다음의 경우 3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관리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화)

- 보안관리실행계획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계획서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는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자

☞ 법제정시(96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액수를 현실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4)

● 심사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준으로 인력·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정함.(내용심사)

- 인력 및 기술능력 : 중급기술사(정보통신기사 등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12인 이상 보유
- 재정능력 : 보관소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비용으로 자본금 80억
- 시설·장비 : 기본 기능(핵심 기능) 구현 설비로 송·수신 및 보관 설비, 시점확인·증적 관리설비, 시설·정보 보호 설비, 증명설비, 관리·백업설비
- 보관소의 지정(갱신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임·직원의 호적(등) 초본, 정관, 법인등기부등록, 지정요건 증빙서류, 사업계획서)를 규정
-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하도록 함

☞ 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것으로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법위임에 따라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지정취소 기준 : 거짓으로 지정받은 때 → 지정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 지정취소, 1년이상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1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3월~1년
- 과징금 부과기준 : 1년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 후 1년 이상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 1억원, 준칙신고, 변경신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천만원, 지정기준, 임원결격사유, 서비스제공거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5천

만원, 문서보호조치, 업무수행방법 절차 부적절 → 1억원을 부과

☞ 법 위임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액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의무 중 하나인 업무준칙 신고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이용약관, 손해배상절차, 이용자와의 독립성유지 방법 및 절차) (내용심사)

☞ 업무준칙신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관소의 신뢰성 확보 필요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의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자료제출 및 보고의 범위를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전자문서 내용훼손·변경 방지 여부, 정보보안의 준수 여부, 이용자의 정보보호 준수여부, 보관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2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신설4, 강화4)

● 심사내용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유통·물류기업 또는 유통·물류단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나, 유통업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 및 미비점을 파악하는 정책적 의의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점포의 상호·법인명·대표자명, 관리자의 법인명·대표자·성명·주소 등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강화)

- ☞ 점포의 유지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변동상황을 신고토록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유통연수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유통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를 제한 (강화)
-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규정한 것으로 타법의 유사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물류표준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신설)
 - 지정받은 인증심사기관, 인증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물류표준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 인증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없어, 취소 · 정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도매물류센터 운영자, 지정유통 연수기관을 보고대상에 추가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자, 지정유통 연수기관도 사업실적, 교육실적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지원 및 지정을 받은 기관의 운영실적을 파악하여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강화)

☞ 벌금 규정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처벌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 (신설)

☞ 체인사업자 지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2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고온, 고압의 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 제조플랜트에 설치·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제조공정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대상으로 추가 (강화)

☞ 압력용기가 독성가스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등록대상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대상범위는 독성가스의 수입업으로 하고 등록기준은 고압가스 수입업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업소의 위치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수입고압가스 종류변경시에는 변경 등록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위임에 따라 등록 범위 및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대상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 대상범위는 허용농도가 100만분의1미만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개이상을 상호연결하여 차량에 고정한 이음매 없는 용기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하고, 등록기준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며, 고압 가스운반차량의 교체,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변경, 고압가스운반 차량의 수량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하도록 함.(내용심사)
- ☞ 운반차량의 등록범위를 독성가스운반차량과 대형차량으로 한정하고, 등록기준 은 기존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적정성을 인정 하여 원안대로 의결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7종(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등)을 추가로 특정고압가스로 지정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가진자 등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강화)
-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맹독성 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지정하여 관리 하는 것으로 이미 반도체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관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2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5,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특정설비대상에 CNG자동차충전을 위한 완속충전설비 및 LPG자동차 정비 · 폐차시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하는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2종을 추가 (강화)
- ☞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2종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을 추가 (강화)

- ☞ 대표자 변경시 부적격자(한정치사자 등)에게 사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허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 외국용기 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등록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3년 마다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도록 함.(내용심사)
- ☞ 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미국 2~3년, 중국 4년, 일본 5년)와 외국 제조업체의 공정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 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석유화학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매5년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기로 차등화(강화)
- ☞ 사업자의 안전관리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안전관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석유화학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주기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고압가스수입신고시 고압가스의 종류 및 양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고압가스 수입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신고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고압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에 지자체에서 정한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는 세부허가기준으로 동 기준의 최대 2배 이내에서 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강화)
- ☞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허가기준을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임범위일탈 및 남용문제 해소하기 위해 법령상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하나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1회 위반시에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2회 위반시에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3회 위반시에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4회 위반시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받을 것’이 요건으로 규정됨(’02. 7. 24)에 따라 위반시에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30)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3, 강화 2)

● 심사내용

-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와 계량기를 수리, 변경한 경우 형식승인 번호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신설), 이를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나 계량기를 수리, 변경한 경우 기존에 받았던 형식승인 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선언을 받은 때 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자기적합성 선언의 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선언을 받은때도 그 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계량기 사용자는 검정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계량기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검정 증인된 봉인을 파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신설)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준기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신설)

※ 기준기 : 계량기의 검사기준이 되는 계량기로, 계량기 제조업체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시·도공무원이 계량기 검사시 활용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3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상, 종합디자인분야는 3개 이상 총 9인 이상, 연간 매출액 6억원 이상인 회사로 함.(강화)

- ☞ 기준 강화에 따라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업체(약 300개로 추정)가 전문회사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외되는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인큐베이터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전문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3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지원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수 및 추가징수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32) 공산품안전검사기준고시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가스라이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및 부동액의 안전 기준을 강화 (강화)
 - 조정식 가스라이터의 최고 불꽃높이를 150mm에서 120mm로 낮추고, 내열온도 요건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경고 문구 중 ‘경고!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 후 사용할 것’을 추가로 표시토록 규정하는 등 주의 · 경고표시 강화
 -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의 어는점을 사계절용(어는점 -25℃) 하나로 통일하고 표시사항에 ‘주요성분명’을 추가하고 위험표시를 신설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
 - 부동액표시사항에 ‘주요 성분명’을 추가하고 위험표시를 신설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 강화
- ☞ 여름철 일회용 가스라이터 폭발로 인한 화재 및 사용자의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기준(ISO 9994)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경우 사고가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의 · 경고 표시를 강화하며, 유리세정액은 하절 기용을 겨울에 주입하거나 가을에 주입한 것을 겨울철까지 사용하는 경우 세정액이 얼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계절용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며, 부동액의 경우 내용물의 주요 성분인 에틸렌글리콜이나 프로필렌글리콜을 특히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표시 강화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

3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6)

● 심사내용

-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 허가시 적용하는 안전거리, 도로폭 등을 시설기준에서 규정한 최소기준의 2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타 시설기준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강화)
 -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폭을 규정(충전시설 8m이상, 판매시설 5m이상)하고 판매시설의 주차장 면적은 11.5㎡이상으로 규정
- ☞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기관의 재량권에 일정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점과 현재 전국 지자체의 도로폭 설치 현황 및 건교부 규칙 등을 감안하여 LPG 판매업소의 도로폭은 기 보고한 바와 같이 4m로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권고
- 용기판매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 타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충전사업, 탱크로리 충전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강화)
- ☞ 허가받은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업에 대한 허가의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 (강화)
 - 품질기준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2회 위반시 60일, 3회 위반시 허가 취소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연간매출액 또는 저장능력 기준으로 사업정지 1일당 3만원 ~ 80만원으로 상향조정
- ☞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가 인상됨에 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자동차연료용 부탄에 프로판을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품질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징금액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kcal/h 이하 연료전지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포함.(강화)
- ☞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 되도록

제정하여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확대보급시 안전수준이 미달되는 제품에 의한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고압호스(5년) 및 염화비닐호스(7년)도 권장사용기간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우수제품의 경우 권장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 (강화)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고압호스 등의 고무사용 제품에 대해 적정사용기간 정보제공으로 노후 가스용품을 적기에 교체토록 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 또는 용기보관실에 부착하도록 함.(강화)

☞ 안전공급계약관계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의결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8)

◎ 심사내용

-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광산의 개요, 사업의 필요성, 대상사업 및 사업물량, 사업별 사업비, 사업시행자, 사업기간을 규정 하고, 승인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15% 이내의 감소 또는 총 사업내용의 20%(사업비기준)이내의 변경의 경우를 정하며,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사업단에 제출하며 광해방지 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이내로 함.(내용심사)

- 승인 취소의 사유로 임의양도라 함은 공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부대공사를 제외한 본공사)을 도급공사계약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하고, 취소의 절차는 1차로 경고 및 개선지시(1월이내), 2차로 업무정지(1개월이내), 3차로 승인취소로 규정

☞ 법에서 정한 광해방지사업의 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 및 취소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승인이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과 취소절차를 단계화하여 규정하여 원안의결

- 광해방지의무자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시행할 수 없는 광해방지사업으로 장기간의 사업효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오염토양개량,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 방지 및 복원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전문기술이 부족한 광해방지의무자의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으로 원안 의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으로 시공중인 사업장에 공정표, 자재수불부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함.(내용심사)
 - 신청대상자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하자원개발·광해방지·지질 및 지반·산림·환경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하자원 개발·광해방지 등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연구소 등을 규정
 - 등록기준으로 자본금(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기술능력(기술사 1인, 기술사 또는 박사 1인이상, 산업기사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이상 4인이상(총 6인)), 시설·장비 기준(6개 사업구분별로 필수적인 장비, 임대가능(복구장비, 수질측정기 등))등을 규정
- ☞ 광해방지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법의 위임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 기준, 시설·장비 기준을 유사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준수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광해방지사업자는 1.31일까지 사업추진실적을 광해방지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완성 검사증사본을 첨부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관련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함.(내용심사)
- ☞ 광해방지사업의 성과관리·분석과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한과 첨부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긴급광해 사고시 광해발생 개요, 피해의 확대방지조치 및 긴급대피조치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 사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 광해의 조치를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선조치 후송인에 따른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광해복구비 등 광해방지사업계획의 30%, 산림 · 토지 등의 복구비 예치금 전액(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복구비 예치금), 긴급광해방지 비용의 30%로 정하고, 산림(산지) 또는 토지복구는 개발연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부담금 미납시에는 부담금의 5/10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이행보증 및 정부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농림부 및 산림청 등에서 각각 시행하던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광해방지사업의 자부담 부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산림복구비 예치금(산림청) 및 용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건교부)을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폐수정화시설, 먼지날림방지시설, 소음 · 진동방지시설 및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오염토양의 개량 · 복원 및 정화시설은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광해방지시설 설치시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함.(내용심사)
- ☞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공정별 검사를 완성검사와 성능검사로 정하고 검사대상 시설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설치설비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사업자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사업관련 서류를 일정기간동안 보관 하지 않은 경우 800만원,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광해방지사업단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기피 · 방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내용심사)
- ☞ 법에서 위임한 종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2. 중소기업청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9건, 내용심사 9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3, 비중요16)

○심사대상 1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4)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5)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제 274차 경제1분과위 (2005. 4. 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8	신설 1 강화 9 내용심사 9 *중요 3, 비중요 16

(2)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창업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행위를 금지(강화)
- ☞ 창투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등이 행하는 간접투자 행위는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자로 보지 않고, 간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록일 후 3년까지 창투사가 목적이외의 간접투자행위를 할 경우 간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투자자의 손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하고 남은 창업투자조합재산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간접투자자산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강화)
- ☞ 조합 결성후 3년간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창업지원목적보다는 단기거래 등 수익성이 높은 상장주식 매매에 치중할 우려에 따라 이를 일정 비율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투자자보호 및 창투조합의 목적에 따라 운용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창투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 (내용심사)
- ☞ 창투사는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자본금의 50%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4)

● 심사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등록요건은 출자금총액이 10억원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으로 하고,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등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중기청장에게 제출하고 조합 결성 완료시 중기청장에게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이내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변경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칭 및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함

☞ 법개정에 의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무가 신설됨에 따라('04. 12. 31),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등록요건을 규정하여 투자조합결성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로 금융실명거래법상의 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창업보육센터, 투자상담을 위한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는 행위,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행위, 투자조합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에 관한 이면계약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로 정하고,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주요출자자(100분의 5이상의 지분소유자)와의 거래를 금함.(내용심사)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운용할 때 조합 목적과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규정(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함)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사유로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합원총수 및 조합원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정하고, 해산한 때에는 7일이내에 중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 해산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청산한 경우 청산인은 결과보고서를 중기청장에게 제출하도록하며 조합원별 재산배분내역, 업무집행 조합원에 배분한 투자수익 내역, 임 ·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금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령에서 정한 성과배분방식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창업보육센터가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 창업보육센터는 시설임대가 어려운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해 지정 · 운영중이며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실율이 3개월이상 40%이상인 경우 지원중단 등의 처분을 통해 지원목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4) 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안(강화3)

● 심사내용

- 지방조합 또는 연합회 소관물품이 규정위반으로 지정제외될 경우, 해당지역의 구매 물품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도록 함.(강화)

☞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수익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정제외 사유에 따라 소관물품이 지정제외된 경우에는 조합 및 연합회가 더 이상 단체 수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단체 수의 계약제도 자체의 경쟁제한성에 따른 각종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지정 제외된 조합의 해당구역은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구매기관이 특정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업체만 납품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할 경우, 조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강화)

☞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하청생산 및 연고배정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정업체만 납품 가능한 조건'이라는 규정은 어떤 종류의 계약조건을 말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본 항을 감사원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연합회가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 물량을 지방조합에게 배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 해당 지방조합 회원사에 배정 하도록 함.(강화)

☞ 연합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위반으로 소관물품이 지정제외된 지방조합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지도·감독권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합회가 '조합원사에게 직접 배정토록 하여 불공정 배정 등의 규정위반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 심사내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을 인증한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성능인증은 신청서 제출 → 공장검사 → 제품검사의 절차로 하되 신기술인증,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은 제품 중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시험 연구원에서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내용심사)
 - 시험연구기관이 성능인증을 한 내용은 성능보험사업에 의해 담보하도록 하고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기타 손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성능보험제도를 도입

☞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및 법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및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에 '투자심사업무를 전담
 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대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
 번호, 약력, 투자경력)을 기재하도록 함.(강화)

☞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펀드매니저를 결성계획서와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창투사 등에게 펀드매니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존속기간
 동안 성실한 운영을 담보하는 간접적 편익이 기대되며, 창투사 등의 회사중심이
 아닌 펀드매니저 중심의 펀드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및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에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대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약력, 투자경력)을 기재하도록 함.(강화)

☞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펀드매니저를 결성계획서와 등록신청서에 기재
 하도록 함으로써 창투사 등에게 펀드매니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존속기간 동안
 성실한 운영을 담보하는 간접적 편익이 기대되며, 창투사 등의 회사중심이 아닌
 펀드매니저 중심의 펀드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법 위임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요건' 및 '장애인고용비율'을 구체화하여, 장애인기업의 요건으로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장애인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하며, 장애인고용비율 100분의 30분으로 함.(내용심사)

☞ 본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지원)가능 대상을 최대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신설1, 강화2)

● 심사내용

○ 벤처기업 요건을 개편하여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유형별 요건을 강화하여 벤처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설정하고(대통령령에서 구체화), 연구개발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으로 요건을 정하며,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강화)

☞ 개정안은 기존의 벤처확인제도가 가지고 있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혁신능력평가제를 폐지하고, 유형별 요건을 개편하는 것으로 시장여건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07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남은 기간동안 벤처확인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벤처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업의 동의를 얻어 확인된 벤처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벤처확인기관이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신뢰성 및 확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벤처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벤처확인기관의 벤처확인업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벤처확인기관이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인 및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권자를 변경하고, 확인기관의 실적을 중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여 원안의결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이 법률 또는 타 법률에서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응찰한 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외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재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에 의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을 것, 타법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으로 정함. (내용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 · 공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낙찰자를 결정 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구매기관 또는 제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 04년도에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된 동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법령 및 중기간 경쟁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 특허청

집필자 : 이영호 사무관 (Tel. 2100-2428, yhl0484@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특허실시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강화 1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5건)

○심사대상 5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특허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특허권 수용·실시등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05. 10. 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신설)

-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2 서식, 보전기간 만료일 등에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 출원과 실용신안권 등의 회복 (신설)
 -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용신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과 보전기간 만료일 등에 등록고안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실시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신설)
 -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서식, 보전기간 만료일 등에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실시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4) 특허권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신설1, 강화1)

● 심사내용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 청구요건 (신설)

- 우리나라가 수입국의 지위에서 외국에서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여 생산된 의약품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 금번에 개정되는 특허권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개정특허법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절차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최빈국의 의약품접근확대를 위한 WTO 일반이사회의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문'의 국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신청서 제출 (강화)

〈 통상실시권 재정청구시의 제출서류 〉

-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 실시권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

〈 의약품 수출에 대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

- 기재사항 : 제출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
- 제출서류 :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등

〈 의약품 수입에 대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

- 제2조의 2 각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서 변경 청구시 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

- 기재사항 :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제출서류 : 재정서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특허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통상실시권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의약품 수출·입에 대한 재정청구시 제출서류, 재정서 변경시의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 재정 신청권 남용방지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제 4 절 건설교통분야(건설교통부)

건설분야 집필자 : 김보열 사무관 (Tel. 2100-2466, bbdy69@opc.go.kr)
 교통분야 집필자 : 김석중 사무관 (Tel. 2100-2467, ksj1903@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6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8건, 강화 53건, 내용심사 64건 등 총 16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26, 비중요 139)

○심사대상 165건 중 14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46건임.

<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24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1	신설 6, 강화 9 *비중요 15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 24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2	철회권고 1	강화 1 *비중요 1
4.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 270차 경제1분과 (2005. 2. 4)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신설 2, 강화 1 *중요 3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2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4
6. 고속국도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3. 1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7.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5. 3. 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8.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 151차 본회의 (2005. 3. 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 273차 경제1분과 (2005. 3. 25)	원안의결 7 개선권고 2	신설 1, 내용심사 8 *중요 1, 비중요 8
10. 기업도시개발법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74차 경제1분과 (2005. 4. 8)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내용심사 8 *중요 2, 비중요 6
11. 자동차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제 274차 경제1분과 (2005. 4. 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12.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20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15. 교통안전법 개정안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철회권고 3 원안의결 4	강화 3, 신설 4 *비중요 7
1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 275차 경제1분과 (2005. 4. 22)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8.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18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9.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정안	예비심사 2005. 5. 18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2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정안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1. 철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22.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76차 경제1분과 (2005. 5. 20)	철회권고 2, 개선 권고 2, 원안의결 7	강화 4, 내용심사 7 *비중요 11
23.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 277차 경제1분과 (2005. 6. 3)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2
24. 임대주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77차 경제1분과 (2005. 6. 3)	원안의결 1, 개선 권고 1, 철회권고 2	강화 4 *중요 2, 비중요 2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20	개선권고 1	강화 1 *비중요 1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 279차 경제1분과 (2005. 7. 1)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28. 측량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4	원안의결 3, 개선 권고 1, 철회권고 2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29.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1차 경제1분과 (2005. 7. 22)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신설 10 *비중요 10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 282차 경제1분과 (2005. 9. 1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3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83차 경제1분과 (2005. 10. 6)	원안의결 2, 개선 권고 3, 철회권고 1	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6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0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6
36.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37.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84차 경제1분과 (2005. 11. 4)	원안의결 8 개선권고 1	신설1, 강화4, 내용심사4 *중요 1, 비중요 8
38.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25	원안의결 9	신설 2, 내용심사 7 *비중요 9
39. 하천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0. 발코니 설치기준 고시	예비심사 2005. 12. 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05. 12. 1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서면심사(12. 22)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강화1, 내용심사2 *중요1, 비중요2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86차 경제1분과위 (2005. 12. 23)	원안의결2 개선권고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44. 종합물류업자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286차 경제1분과 (2005. 12. 2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비중요 2
계	-	철회권고 14 개선권고 29 원안의결 122	신설 48 강화 53 내용심사 64 *중요 26 *비중요 139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신설6, 강화9)

○건축신고 대상을 기존의 연면적 합계가 100㎡(단독주택은 330㎡)이하 건축물에서 단독주택 관련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타 건축물과 신고대상 면적을 동일하게하여 단독주택의 신고대상 확대 및 건축물 변경 일괄 사용승인시 연면적이 5천㎡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각 층 바닥면적이 50㎡이하이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괄 승인범위 축소(강화)

☞ 단독주택은 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로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수준(건축허가)의 건축설계·감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도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건축신고·허가기준을 적용하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 및 안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5천㎡이상 건축물의 일괄사용승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법 건축물 발생의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기존의 6층이상인 건축물 및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서 3층이상인 건축물 및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로 확대(강화)

☞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건축법상 구조계산 의무화 대상 건축물(3층이상, 1천㎡이상)과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차지비중 : 전체 건축물의 2%(현행) → 15%(개정안) 추정

○지하층에 피난·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확보 조치로써 직통계단 설치기준 강화(강화)

☞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감사원 개선과제('03.12.19) 및 소방방재청 규제강화 요구사항 : 지하층 화재발생

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4.4%이나 인명피해는 전체 사망자의 28%, 부상자의 11.7% 차지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선근을 설치하고,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선근부분에 설치하도록 함.(신설)

☞ 지하층 화재발생시 피난·대피의 원활화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인 3천㎡이상 건축물은 동법의 상주감리 및 비상용 승강기, 방화구획 설치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1.2m 로 제한기준 조정(강화)

☞ 건축물로부터 추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시에 현행 타 법령(주택건설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과 형평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건축물별로 대지안의 피난통로 설치를 규정하였는 바,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m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m 이상, 그밖에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m 이상 (신설)

☞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곤란 및 건축물에 접근곤란으로 대피와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바, 소화활동시 필요한 통로 확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기준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유사 준용예: 비상 계단폭 90cm

※ 외국의 사례 (미국 시카고시) : 건축물 용도와 거주인원에 따라 출구수와 통로너비 결정(최소 출구너비는 0.91m(36인치) 이상이 원칙

○맞벽건축 가능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는 합의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지역제한이 없었으나 합의서 첨부를 조건으로 준주거지역 및 너비 10m 도로에 접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강화)

- ☞ 맞벽건축제도는 도시미관 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및 대로변 이외의 주거밀집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합의서 첨부시 맞벽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합의서 첨부에 의한 맞벽건축 허용지역을 준주거 및 너비 10m도로에 접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감사원 개선권고('01. 5) : 맞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시행상의 혼선이 있으므로 맞벽규정의 합리적 개선

- 연결복도는 하나의 대지에 수 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와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연결하여 건축물간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신설)

- ☞ 연결복도는 도시미관 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행 타 법령의 규제회피수단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 개정안은 개발하고자 하는 다수 필지의 총면적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적용되어 합리적인 건축 활동마저 제약할 소지가 높으므로 난개발 방지 및 다양한 건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연결복도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선권고

-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다세대주택은 4배)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구 0.8배) 이상으로하여 공동 주택의 일조권을 강화(강화)

- ☞ 동 개정안은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일조 확보가 가능한 기준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외국의 일조기준 적용(동간거리) : 영국(약 2.0배), 일본(약 2.2배)

- 현행 일조권 배제지역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을 이용자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일조권 적용지역으로 규정(강화)

☞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건축이 금지된 공간'에 배치함에 따라 도시내 소규모 공원의 일조권 확보 미흡하였는 바, 현행 일조권 규정을 어린이·근린공원에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공작물(높이 8m이하)에 대하여도 인근 주민의 일조보호 등을 위하여 일조권 규정을 적용(신설)

☞ 공작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이 아닌 민법상 이격규정(50cm)을 적용하고 있어 인접 주민간 일조분쟁 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였는 바,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건축면적과 연면적 산정시 기준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과 지하층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포함토록 하여 면적 산정기준 강화(강화)

☞ 발코니의 건축면적 제외로 인해 주거지역 건폐율이 실제로 상업지역 수준(70~80%)에 달해 주거지역의 고밀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해왔던 점을 감안 할 때 이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 적용상의 형평성 및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동 개정안은 사업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하층 3층이상 거실면적만을 연면적(용적율)에 산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건축신고시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강화)

☞ 대수선의 경우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었으므로 대규모 대수선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개정안이 적절하나, 개정중인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200㎡이상의 대수선을 허가대상으로 강화하였으므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004. 12. 3) 허가대상에 대해서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개선권고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토록 의무화(강화)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고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 완성검사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는 조치로써 원안의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설1, 강화2)

○회전문의 설치기준을 옆면 5cm이상, 밑면바닥 3cm이상, 회전반경은 140cm이상, 회전 속도 8rpm 초과 금지 등으로 구체화(강화)

☞ 동 개정안은 회전문 설치의 최소안전기준(회전반경, 회전속도, 전자감지장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한국소비자보호원 건의사항('04. 4): 자동문(회전문)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므로, 자동회전문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선 건의

○과거에는 공연장의 복도설치기준만 규정만 있었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나아가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유흥주점, 장례식장 및 노유자시설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새로이 규정(신설)

☞ 건축물 용도·면적에 따라 복도 유효폭을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 면적·층수에 따라 복도 및 출입구 유효폭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간 경계벽 및 간막이벽 설치를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강화)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이용하여 여러 세대가 임대형태로 사용하므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 도시개발법 시행령(강화1)

○공청회 개최 요건을 도시개발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에서 330만㎡ 이상인 경우로 정함.(강화)

☞ 사업자 편의를 위해 공청회 개최요건을 강화코자 하나, 도시개발시 발생하는 용지취득 문제(토지소유자·세입자 등)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청회를 통한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100만㎡~330만㎡ 개발사업의 경우 인구 2~5만명 정도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교통·환경·교육 등에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해당지역의 인근주민·관련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

4)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신설3, 강화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의 기간에 달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금지(신설)

☞ 전매제한 기간은 통상적인 분양권 보유기간과 현행 세법상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과세면제기간을 고려, 동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한 분양가 규제에 의한 단기 전매차익에 의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 보완조치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분양권 계약~입주시까지 통상 2.5~3년 소요

※소득세법상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 : 3년 주택보유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우선공급대상 중 청약1순위자, 40세이상, 10년이상 세대주로 있었거나, 과거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설정(강화)

☞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우리나라의 평균주택구입년한 등을 감안한 장기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다만,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배정비율의 적정성·효과성 여부는 동 제도의 시행후 1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과거 10년(기존 5년) 내 국민주택 등의 분양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강화)

- ☞ 동 개정안 시행시 과거 6~10년내 당첨자의 청약권리 및 기대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청약과열방지 효과도 낮고, 소급적용 문제와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권고

※ 25.7평이하 수도권내 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 과거 6~10년내 당첨자수(추정)는 48천명으로 2.59%를 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재당첨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는 10년간, 기타지역은 5년간 제한(신설)

- ☞ 재당첨 금지기간을 투기수요와 지역상황에 따라 수도권내 과밀억제 ·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 5년 등 차등 적용하여 적절할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에 따른 이익(사회적 프리미엄) 향유의 형평성 확보 및 분양가 규제 도입의 실효성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 설정(신설)

- ☞ 기업의 연구개발 및 친환경적 건설기법도입 등 민간건설공사의 주택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위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건축비의 현실화와 가산비용 포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분양가 산정의 현실화로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품질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의 정책목적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원안의결

⇒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인정비율의 효과성 · 적정성은 동 개정안 시행후 2년이내 규제순응도(소비자만족도 등) 조사를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신설2, 강화1, 내용심사1)

○부동산투자회사 예비인가시 자료제출 명문화(내용심사)

☞ 동 규제는 건설교통부지침으로 기운영되던 예비인가제도가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제도화 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로 지침에 기재되어 있던 제출자료를 시행령에 기술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가 등에 필요한 기본자료이므로 원안의결

※ 동 규제신설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은 폐지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각 대금을 미리 확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양도인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포함하는 계약조건 금지(강화)

☞ REITs에 부동산을 매각한 양도인이 추후 반환청구권을 활용하여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공모로 모집된 일반주주가 원금손해 등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로 판단 되어 원안의결

○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당해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음(신설)

☞ 현물출자 되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원안의결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위탁업무 외에 타업무를 겸업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산 관리·회계·조직·인력 및 사무공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업무와 구분함. (신설)

☞ 동 규제는 자산관리회사에게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위탁업무외에 타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산관리회사가 주업무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위탁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할 것을 우려하여 도입된 규제으로써 필요성을 인정하나, 사무공간 분리는 물리적 규제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반면, 자산관리 회사의 자율경영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6) 고속국도법 시행령(내용심사1)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 ①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 ②특정 지점의 평균 시간당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교량의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 이상인 경우.

다만, 복층형 교량중 상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의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0m 이상인 경우 ④특정 지점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체되는 구간이 25km이상 누적되거나 정체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써 조기에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⑤기타 천재지변 또는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규정(내용심사)

☞ 고속국도 관리자의 긴급통행제한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에 대한 심사로서, 대부분 기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있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④ 특정 지점 정체시 진입통행제한권 부여의 경우, 통행제한권 발동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긴급사태로 한정된 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유를 불문하고 도로 정체시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동 기준은 규제위임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아울러 ⑤기타 천재지변 또는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진입통행 제한권 부여의 경우에도 천재지변은 피해가 대규모이며 긴급사태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성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로통제의 신속성이 필요하나,

대형교통 사고라 함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한 대형교통사고에 한정해서만 예외적으로 고속국도 관리자가 진입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권고

7) 철도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신설1, 내용심사1)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인증 받을 때, 효력정지 기간중 업무수행, 타인에게 대여,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모가 큰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철도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 · 처분에 위반한 때는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인증의 효력 정지(신설)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효력 정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안전 전문 인력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자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항 중 '규모가 큰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판단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법 제81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행의무 위반자나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내용심사)

☞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법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설2)

○건설업 등록시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재도입 (신설)

☞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능력과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및 상시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업의 재무건전성과 부실·부적격업체의 사전 스크린을 위한 동 제도의 재도입에 대해 원안의결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보유요건 재도입 (신설)

☞ 사무실보유요건은 패이퍼컴퍼니난립에 의한 건설산업부실화 방지를 위해 도입 되었으나, 동 제도는 건설산업의 건전화에 직접적인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곤란한 물리적인 진입제한 규제이나 당장의 폐지는 04년말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망의 정확성미비와 동 요건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무실 보유요건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보완 및 입찰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활용(규제일몰제 적용: 3년)토록 개선권고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 시행령(신설1, 내용심사8)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승인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1.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써 20실이상 일 것 2.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일 것 3.바닥면적 합계가 3㎡이상으로써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로 분양하는

것(분양전환시 임대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으로 구체화(내용심사)

- ☞ 분양승인 대상건축물 규정대상은 법 취지와 부합성 · 명확화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절차 및 방법 구체화(신설)

- ☞ 분양건축물 피분양자 보호라는 동 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행 신탁업법을 준용한 수준으로써 원안의결

○시공 연대보증 건설업자의 요건을 산업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설업자로서 자본금이 연대보증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이상인 자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이상이고,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정함(내용심사)

- ☞ 후분양 건축물의 공사중 부도 · 중지에 따른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 인정. 다만, 시공연대보증 건설업자 요건인 자본금 또는 건설실적은 분양보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부 요건은 다소 과도하여 건축분양사업의 위축 소지가 있으므로 후분양 건축물 분양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 개정안중 건설실적(수주 · 시공 실적)요건은 원안의결하되, 자본금 요건은 건설실적 요건과 형평성 및 건설분양사업의 위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화하여 적용토록 개선권고(동 개정안 시행이전까지 규제개혁 위원회에 보고)

○분양사업자(시행자,분양대행사), 시공업체의 명칭 등 분양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규정(내용심사)

- ☞ 분양계약서 포함내용을 명확화 · 구체화함으로써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한 건축물 분양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과반

이상 분양된 경우, 분양신고 면적중 미분양 부분의 면적이 3천㎡미만인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시설 중 미분양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허가 받은 전체물량 등을 신고하여야 함.(내용심사)

- ☞ 건축물 공개분양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수의계약 요건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위법 취지와 위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원안의결(법리적인 문제는 법제처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조건부로 원안의결)

○설계변경시 사전동의 사항 및 방법, 사전 통보사항, 사전 통보방법 규정(내용심사)

- ☞ 피분양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통보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분양관련 분쟁의 사전방지와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설계변경 열거항목 중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피분양자 전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곤란 하므로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설계변경 사전 동의사항 중에서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조항은 삭제토록 권고

○분양대금 납입방법에 대해 분양대금 납입비율 및 시기, 중도금 납입시기 결정 방법을 구체화(내용심사)

- ☞ 분양대금 납입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분양자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이며 주택등에 비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양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분양대금 납부비율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원안의결

○분양광고 내용 및 방법(내용심사)

- ☞ 분양광고 내용과 광고방법, 정정사항의 공표방법 등이 통상적인 규제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신문등 간행물, 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고 공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며,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이상으로 함.(내용심사)

- ☞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정정 사항 등 공표방법·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양광고 정정사항의 공표방법 등이 통상적인 규제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8)

○개발이익의 개념 및 추정에 관한 사항 규정(내용심사)

- ☞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등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개발이익 환수비율(방식)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원안의결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구역 안에서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축목의 벌채 및 식재 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 (내용심사)

- ☞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 법의 취지를 감안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내 ‘행위허가의 대상’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자 지정기준 규정(내용심사)

- ☞ 동 개정안은 기업도시(100~200만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민간 시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는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요청시 축적 5천분의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관한 계획, 관할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출서류로 규정(내용심사)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요청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며, 개발계획승인시 필수적인 서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요청시 제출서류를 구체화(내용심사)

☞ 실시계획승인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산업교역형: 500만㎡(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330만㎡ 완화),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혁신거점형: 330만㎡(위원회 심의를 거친경우 165만㎡ 완화)로 정하고,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산업교역형 30퍼센트, 지식기반형 20퍼센트, 관광레저형 50퍼센트, 혁신거점형 30퍼센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함(내용심사)

☞ 민간시행자의 직접적인 산업투자를 촉구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업도시 유형별 최소면적기준 및 주된용도의 토지배분 비율은 기존 신도시 및 공업도시 개발사례를 감안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민간시행자에 대한 직접사용토지 의무비율 수준은 민간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곤란하며, 기업의 산업투자 유도를 통한 기업도시 개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원안의결

○선수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이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행자가 공사완료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됨을 규정(내용심사)

☞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부도 및 파산을 하거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양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조성토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투기우려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이라고 구체화(내용심사)

- ☞ 그러나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포괄위임 및 자의적인 판단소지가 높으므로 삭제하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11) 자동차안전기준 규칙(강화3)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일반형 제외)도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강화)

- ☞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경우 운행행태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과 동일하고, 또한 교통사고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좌석 안전띠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대상차량 : 2,046대(연간 230대), 설치비용 : 대당 25만원(연6,000만원)

다만, 현재 좌석안전띠 설치 및 착용실태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범위를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16톤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8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까지 확대(강화)

- ☞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차량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로상의 교통흐름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적 물류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형 자동차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속도제한 장치 부착대상 차량을 대규모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있는 차량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으므로

(※신규제작 차량이 모두 전자식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에

제한속도만 설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비용 불필요) 원안의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상하로 이동하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강화)

☞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로써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이미 합의된 바 있고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격벽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경우 현재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 업체에 부담을 가저올 것으로 예상됨.

※시내일반버스 : 24,807대

※설치비용(단가)

- 기존 보호봉 : 대당 10만원수준
- 상하이동식격벽시설 : 대당 500만원
- 고정식 격벽시설 : 대당 30~50만원

그러나 동 개정안에는 보호격벽시설을 상하 이동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버스 업계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기술적으로도 신규제작 차량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보호격벽 시설을 모두 갖추는데 장기간(9년)이 소요되어 신속한 보호격벽 시설 설치가 어려우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등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또한 보호격벽시설은 폭력 등 위험상황발생시 운전자에게 버스운행중단 등의 긴급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정도의 기능을 충족하면 되고 실제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의 부상이나 졸도시 신속한 긴급구조 등 안전조치에 오히려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와 함께 보호격벽시설은 운전자의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시민과 운전자의 의식수준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호격벽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되 운전자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버스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설치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을 획일적(상하 이동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일정수준의 격벽시설을 설치토록 개선권고(※ 상하로 이동하는 문구삭제)

1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신설1, 강화1)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위반에 대한 처벌 구체화 및 강화(강화)

☞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복합개발지구내 특정사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하도록 정함(내용심사)

☞ 사업간 지원이 불가능했던 개발체계를 지역복합개발지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명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발이익의 범위와 산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임의 결정하여 타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역복합개발지구 방식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개발이익의 범위와 산출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내용심사1)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바,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임 (내용심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제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투자보고서 열람·비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융관련자료

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과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
되므로 원안의결

1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강화1)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80이하 범위안에서 하고,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이하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강화)

☞ 국민·임대주택건설 상한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규모 상한비율(80%)은 서울시 조례등 지자체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준용한 수준이고 임대주택 규모 면적 제한 상한비율 역시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전체 세대수의 25%)은 재건축 사업(용적률 증가분의 25%, 전체면적의 5~15%)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므로, 현행 서울시 조례(17%) 범위 내에서 완화·운용하도록 개선권고

15) 교통안전법(신설3, 강화4)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교통안전진단 실시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이 실시함.

아울러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교통시설설치자 등이부담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시. 아울러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은 교통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특별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강화)

☞ 교통시설 설치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사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교통시설 설치 및 교통수단 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정기 안전진단은 3년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체의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향후하위법령 개정시 타법령과의 형평성, 외국지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통안전 진단대상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필요

- 시·도지사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등의 교통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자동차운행을 규제하는등 교통정온화
(靜穩化)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지역안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대하여 속도·통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신설)

☞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기존의 타
법령과 중복된 규제로써 현행 법령으로 대체가능하고, 경찰청 및 도로관리 공단
에서도 교통안전지역이나 보행자 보호구역 등은 자동차를 규제하는 도로 교통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철회권고

※ 기존의 유사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금지및제한)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24조의 2(보행자전용도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4조(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21조(보행우선구역의지정, 보행시설물의 설치 등)

- 차량등의 사용자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강화)

☞ 업계의 경쟁력강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99. 2월 폐지(자율화)하였던 동 제도를
재도입하는것은 행정의 신뢰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현재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운수업체(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또는 기억장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장 등이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신설)

☞ 교통사고 예방및사고조사, 안전진단 및 점검 등 안전운행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필요성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은 교통사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교통수단 운영자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신설)

☞ 새로운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업체 및 운전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기존 교육제도의 프로그램을 보강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운수업계에서도 기존 교육제도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 따라서 현행개별법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와 중복되며 운전자 에게 새로운 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등의 비효율적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교육 제도의 미비점을개선·보완(이론 및 현장실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등으로 기존 요건보다 강화(강화)

☞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요건을 타 법령에 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유사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유사법령(금고이상의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3 (감리원의결격사유)

○ 차량 등의 사용자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립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거부·방해한 경우, 교통사고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강화)

- ☞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며 과태료 상한액의 인상규모는 유사한 사례의 타법령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현행 과태료 300만원은 1984년도에 책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유사법령의 과태료 수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9조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화1)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도로를 조정하여 지역내 소통을 담당하는 시·군·구도, 도시계획도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법상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는 공제대상으로 추가하며 도로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와 혼란을 초래하는 진입도로 개념 삭제(강화)
- ☞ 공제대상 조정에 따른 사적 비용증가와 공적 편익증가를 분석한 결과 편익이 보다 크므로 공제대상 재설정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7) 주차장법 시행령(신설1)

- 300대 이하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자체가 주차장확보율,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설치금지 근거 조항 마련(신설)
- ☞ 설치제한 규모인 300대 이하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가능 기준 및 설치의무면제(비용부담으로 대체, 주변 공용주차장 무상이용)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의결
- ※규제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및 규제순응도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18)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 골재채취 단지의 관리비 징수에 대한 징수항목 및 정산 등 규정(내용심사)

☞ 단지내의 골재채취와 환경보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하는 골재공영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단지관리비 징수 필요성 인정은 인정되나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라목)’은 포괄 위임으로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9)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내용심사5)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 및 절차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의 내부규정이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부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내용심사)

☞ 철도차량안전규칙(건설교통부령)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서 운전 취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도운영자 등(철도공사)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구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훈령에 의해 운영하였고, 현재는 철도공사에서 자체 사규(운전취급규정)로 운영중인 제도임.

○ 철도차량제작자 및 철도운영자 등은 신규로 제작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철도차량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등 전반에 관한 위험도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위험도분석의 대상·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내용심사)

☞ 기존 철도차량의 결함, 안전사고 요인 등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규로 제작되는 철도차량의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차량의 결함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철도차량의 고속화, 자동화 등 철도 운영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는 점과 위험도 분석이 외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철도운영자 등은 최초 승인요청시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유지관리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변경시 예도 같음.(내용심사)

☞ 철도차량의 제작시부터 폐차시까지 전과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철도차량관리의무자(철도공사)로 하여금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철도 차량 유지관리 계획을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다만, ‘유지관리계획을 문서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필요.

〈철도차량운전규칙〉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업무규정)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이 정한 업무규정이 이규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내용심사)

☞ 철도차량운전규칙(건설교통부령)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운전 취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도운영자등(철도공사)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자체 운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수없으며(회송의 경우와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특별한 사유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 객차의 중간에는 연결할 수 없고 파손차량·동력이 없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객차에 연결할 수 없음(내용심사)

※ 여객열차에 화차를 연결할 경우 객차와 화차간의 자체강도 및 제동장치 등 기계적인 차이로 인해 여객의 승차감이 저하되고, 열차분리등의 철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구 철도청 훈령 및 국유철도운전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해 여객열차에는 화차의 연결을 제한하여 왔고,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여객과 화물을 분리하여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0) 철도건설법 시행령(내용심사1)

○ 국가이외의 자(원인자)의 요구에 의해 운영중인 철도노선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이자가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중인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는경우 원인자가 신설비용의 절반(50%)을 부담한다. 단, 역사 진입도로 설치비용은 전부(100%)를 부담. 또한 운영중인 노선에 역사를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신설비용(역사 진입도로설치비용을 포함) 전액을 부담한다.(내용심사)

☞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댐건설 등으로 운영중인 노선을 이설해야 할 경우 또는 도시발전,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철도이용자 증가로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가 건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음.

현재 원인자 요구에 의한 철도건설비용의 부담비율은 정부 지침(예산편성 및 사업비관리 지침, 기획예산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여 비용부담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1) 철도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내용심사2)

○ 철도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하계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할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법에서 정한 한도액(1억원이하)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을 설정(내용심사)

☞ 철도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시 사업정지 처분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이용자가 받게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과징금부과금액도 법에서 정한 한도액(1억원이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철도사업자가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에서 정한 기간(6월이내)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처분기준을 설정(내용심사)

☞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철도사업을 '한국철도공사' 및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일반 사업자가 경영할수 있도록 철도사업법이 제정('04. 12. 31 공포)됨에 따라 철도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조치이며, 사업정지 처분기준도 법에서 정한 기간(6월 이내)내에서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4, 내용심사7)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에 레미콘공장 등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추가(강화)

☞ 레미콘 공장 등의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나, 제품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의무화 보다는 운영중인 철강구조물 공장인증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레미콘·아스콘 품질점검 및 부실업체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 하며, 교육수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철회권고

○외국기술을 도입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도입기술 실적을 신고토록 의무화(강화)

☞ 외국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필요하나, 동 규정은 일부기술에 대해 중복 규제로써, 이중적으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관리의 혼란과 피규제자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현재체계하에서 외국도입 건설기술신고대상 범위확대 등을 산자부와 협의하여 건설기술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건설신소재, 건축공법 및 설비관련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도 포함.
(강화)

☞ '10층이상 16층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추가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법령정비로써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총 공사비가 5억이상 또는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가 1~2인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소규모공사의 경우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고, 또한, 현재도 발주자가 공사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공사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 감리, 발주청 공사 감독, 노동부 재해예방 기술지도(월 1회)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철회권고

○ 인증받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해서는 인증받은 날부터 1년 6월이 되는때에 공장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토록 하고, 인증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다시 받도록 함.(내용 심사)

☞ 사후관리조사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공장자체가 양수 또는 이전된 경우에는 공장의 제작능력에 대한 재신뢰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내용심사)

☞ 법상 처벌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부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법 위반 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못하던 불합리성을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때는 현재 8개월 업무정지를 24월로 상향 조정(내용심사)

☞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 책임을 부여받은 감리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유사업법사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3년의 업무정지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 · 검사 · 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2월의 업무정지(내용심사)

☞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감리보고서는 감리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및 부실공사 원인규명을 위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감리보고서의 미제출 · 중요내용 누락 · 허위 작성 등 불성실감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경력등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에서 300백만원 이하로) 및 12월의 업무정지 신설(내용심사)

☞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건설기술자의 경력 등은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관련 입찰제도 등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1년정도의 업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건설기술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내용심사)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 전담인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자본금 규정은 교육내실화와는 직접 관련이 적고, 진입장벽으로만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하고 또한, 사이버교육 등 강의실이 필요없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강의실 규정을 배제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하며 아울러 취소요건 중 '년간 교육실적 200명 미만인 경우'는 교육수요가 없는 교육기관의 지정취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소규모교육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산정방식 및 측정기준 변경, 부실벌점 기준 추가(강화)

☞ ①평균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은 발주청이 임의로 점검횟수를 늘려 평균부실벌점을 낮출 수 있어,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없고, 발주청과 업체간 부패 소지가 높은 실정이므로 점검횟수를 공사건수로 변경하여 부실벌점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②PQ시 불이익부과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누적평균부실벌점이 2점미만인 경우에도 PQ시 불이익을 줄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부실벌점기준 추가와 관련하여 성실한 설계감리 및 책임있는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벌점기준에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시 첨부서류 규정(내용심사)

☞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양도·양수여부 및 합병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강화1, 내용심사2)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3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규정하고 직접시공 의무가 있는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시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는 영업정지 6월을 부과하고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내용심사)

☞ 건설산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입찰브로커화 방지와 일괄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영업 정지 6개월 및 시공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는 동 제도의 실효성 및 동법내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등의 관리, 시공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일괄하도급의 범위 명확화(신설)

☞ 동 개정안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지침(건경58110-453)」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체계 보완 및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4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로 2명 사망한 때에는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 과징금으로 처분기준 강화(강화)

-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동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의 처분기준은 동 법내 유사행위 처분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4)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강화4)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제출서류 중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임대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서류를 포함(강화)

- ☞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등을 받아오던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공인회계사의 재무관리서류를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진단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철회권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임대조건 조정권한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이 최근 물가 또는 전월세가격 변동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강화)

-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보증금 · 임대료만 제한할 뿐 상승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상한선 5%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있는 바, 이로 인해 물가 및 전월세 증가를 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되는 추세임. 따라서 일정수준 이하로 상승률을 제한하여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비교 기간, 대상, 지역' 및 '물가종류' 등을 구체화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제도 남용을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매입임대주택 임대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강화)

- ☞ 민간 전월세주택을 제도권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매입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없고 대규모 임대수요 확보 등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순수민간건설 임대인 경우에도 안정적인 임대공급을 위해 5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의 규제수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에 비해 공적 의무가 거의 없어, 동 제도를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이 5년 이상의 임대 사업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 의무기간을 확대 하더라도 선의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 및 전대요건을 강화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강화)

☞ 거주기간 제약을 통해서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고 또한, 임차권 양도 및 전대의 최종 승인권자인 임대사업자가 현장확인 등의 심사절차를 강화할 경우 불법양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철회권고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설)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도록 의무화(강화)

☞ 금번 개정안은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현행 고시로 운영되던 인정제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26) 건축사법 시행령(강화1)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받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확인을 하지 아니한때는 업무정지 6개월 규정(강화)

☞ 개정안 내용이 허위 및 부실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미확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지나치며, 건축물 붕괴 등 문제발생 전 현장확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기존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이 필요함과 아울러 현장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실진단에 따른 부실발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처벌조항을 개정토록 개선권고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2)

○도시의 개발, 관광·산업단지의 조성,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가 당해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대중교통 시설계획기준」을 설정(내용심사)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철도·지하철등의 교통 관련시설을 건설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을 당해개발(건설)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대중교통 시설계획 기준안」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시설기준은 개발지역의 여건, 사업목적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법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제3호 나항)

－ 도시철도역이나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 등의 주변 개발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중 ‘나. 대형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를 ‘대형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가능성 및 당해 대중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으로 수정(※입법취지를 명확히 표현)

○대중교통 시설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지구의 면적이 25만㎡(75,625평)이상 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개발사업과 도로·철도·도시철도·비행장 및 공항, 항만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 설정(내용 심사)

☞ 대상사업의 면적(25만㎡이상)기준과 인구(5천명이상)기준은 상호 연계성이

없으며, 규모설정에 대한 과학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구의 특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설정

사업지구	개발면적	비고
택지개발·도시개발	20만㎡내외	주택용지비율45%, 용적률200%기준
재개발·재건축	10만㎡내외	용적률 200~250%

- 따라서 사업지구의 특성,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현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기준을 준용하여 교통영향평가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사업의 규모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반영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존도시의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와 연관성이 적고 교통영향 평가시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대책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

28) 측량법(신설3, 강화3)

- 측량업자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에 대한 취업 및 퇴직상황, 그밖에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와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신설)

- ☞ 측량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기술자 이중등록 방지를 위해, 동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 규정은 동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와 동 법내 유사 규정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시 결격사유 범위 확대(강화)

-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시, 측량법과 관련이 있는 법률위반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등록을 금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나, 동 개정안에 열거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들과 측량법 간, 그리고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입법예고시 제출의견(법무부) :모든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과도한 규제임.

○측량업자 등록시 결격사유 범위 확대(강화)

-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철회권고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화(신설)

- ☞ 현행법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써 원안의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대여 금지(강화)

- ☞ 부실측량 예방 및 부문별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개정안은 성능검사 대행자에 대해 측량업자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측량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측량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측량업자의 자본금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신설)

- ☞ 측량업자의 경영능력 및 용역수행 실적 등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개정안은 측량업자에게 매년 자본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어 측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삭제토록 하고 아울러,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 시기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 · 위임토록 개선권고

29)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신설10)

○유수지의 침수 구역안으로써 침수가능지역 내에는 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등을 설치제한(신설)

☞ 유수지는 강우가 집중되는 곳이므로 보행자 안전위험 및 지반약화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가능지역내에서의 지하도로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도로내에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공동구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지표면에서 4m 이내에 지하도로 설치를 제한(신설)

☞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공동구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m정도의 지하공간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보행로 설치기준을 지하보행로 너비(최소 6m이상), 천장높이(3m이상) 규제(신설)

☞ ①지하보행로 너비 최소 6m이상은 실내에서 기분 좋게 걷거나 도중에 멈추어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3m 정도가 필요하고, 상품 진열 등을 감안할 경우 6m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고 ②천장높이 3m이상은 여유있는 활동공간 확보 및 지하공간 내의 화재 대응 및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도상가의 설치기준 중 지하도상가내 점포총면적을 지하보행로면적과 지하광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로 제한, 지하보행로와 접하는 점포 면의 길이를 3m이상으로 제한, 지하도출입시설에서 3m이격하여 점포설치, 점포 모서리에 2m가각 전제,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제한, 지하도 상가내 가스취급업, 위험물 취급업·약취업종·주류판매업·공연장 및 극장·그밖에 위생, 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도의 조례로 금지하는 업종에 대해 업종 제한(신설)

☞ 지하도상가의 설치기준 중 지하도 상가내 입점 점포용도 제한은 지하공간 내에서 대규모 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업종의 금지는 필요하나,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을 일체 금지할 경우 일반음식점 진입이 불가하므로 이를 재조정하도록 개선권고

○지하도 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출입구의 너비는 2m이상, 출입구가 있는 지상 보도의 최소너비는 2m이상, 에스컬레이터 설치 의무화, 지하도 출입시설의 덮개 설치 의무화(지역여건상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하도 출입시설간의 내측간격은 100m이내로 제한(신설)

☞ 원활한 보행 및 비상시 접근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 연결로에는 너비 2.0m이상의 지상출입 계단 설치 의무화(신설)

☞ 지하층 연결로는 지하도로 및 인근 건축물의 양시설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등 재난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쌍방향통행에 필요한 2m이상의 지상출입 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역광장의 설치기준을 지하광장을 1개소이상 설치, 면적은 지하도 상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지하광장의 천장높이는 지하보행로 천장 보다 30cm이상 높게 설치토록 기준설정(신설)

☞ 폐쇄된 지하공간의 특성상 쾌적한 공간확보를 위해 지하광장을 1개소이상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며, 면적은 지하도상가면적의 10%이상으로 적절한 수준(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결과)이며 지하광장 성격상 개방성 및 쾌적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천장높이 제한 필요(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결과)하므로 원안의결

○지하도 상가면적의 100분의 2이상의 면적에 채광창 등 설치의무화(신설)

☞ 일반건축물의 경우 채광창을 100분의 10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시설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보도 광고물이 5cm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규정(신설)

☞ 보행자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광고물 돌출기준은 필요하며, 지하공간내 안전관리 및 시야확보 등을 위해서는 조명광고물(최소 두께 17cm필요) 설치가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보도 이용시설에 사용되는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와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한(신설)

☞ 지하공간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화재위험이 높은 배관 등의 내부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1)

○임야 취득요건을 강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삭제하고 토지 소재 시·군으로 한정(강화)

☞ 농지 취득요건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적 임야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내용심사1)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설정(신설)

☞ 동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시행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금품수수 액수의 구간설정은 경실련, 법원판례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금품수수액과 영업정지 처분기간 간의 적정성은 준거할만한 입법사례 미비로 판단이 곤란하므로 일정기간(2년)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원안의결

※2년 동안 건설분야 뇌물수수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또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개정안의 범위 내에서 보완적인 정책수단(경고 등)의 도입을 검토하되, 이와 관련한 법기술상의 문제는 법제처와 협의

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2, 강화2, 내용심사2)

○개발계획 수립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내용심사)

- ☞ 동규제는 법개정시 도입한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계획 수립의무’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내용심사에 해당하고 개발사업 규모 및 공원 확보 비율은 동법 규제심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므로 원안의결

○도시 자연공원 구역내 행위허가 기준마련(내용심사)

- ☞ 동 규제는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수림보전이 주요 목적인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특성과 개발제한구역과 29.6%정도가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산지보전효과가 큰 식목용 임업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개정안에 추가토록 개선권고

○공원시설 중 골프장·골프연습장 설치기준 강화(강화)

- ☞ 골프장 규모를 6홀에서 9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입지규제 방식(면적 제한방식, 시설총량제한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므로, 일단 관련조항을 개정치 않고, 현행규정을 유지토록 하고, 추후 현장실사 및 심층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지규제방식 등을 재논의토록 철회권고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원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신설)

- ☞ 근린공원의 지정목적인 도심내 녹지공급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적절한 시설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규제수준(20% 초과금지)의 경우, 대도시(서울시) 근린공원내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비율이 전체시설의 약 16.3% 정도로서, 상한기준보다 낮으므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신설)

- ☞ 도시공원내 녹지보호 및 도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조치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나,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행위 및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의 경우,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레저용 전동차(4륜형 영업용 배터리카, 65km/h) 등을 제한해야 하나,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조차(최고속도 40km/h)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는 출입이 가능토록 개선권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가설건축물은 층수는 3층 이하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써 판매 및 영업 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하며,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건축물 또는 단기가설공작물은 존속 기간이 3월이며 연중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허가목적이 교육, 종교, 문화, 예술, 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강화)

☞ ① 층수 및 재료제한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층수 및 재료제한은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기준과 일치시키는 조치로써 입법미비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바람직 하나 ② 단기가설건축물, 단기가설공작물의 존속기한 설정은 경기, 집회, 전시회 등은 지자체 여건 및 성격에 따라 행사 기한이 다양하므로 일괄적으로 존속 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조례로써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사설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강화1, 내용심사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시 첨부서류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강화)

☞ 동 개정안은 토지취득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확인·적발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과 토지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개정안은 규제의 실효성 의문 및 개인정보의 침해, 과도한 벌칙규정 등으로 시행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이에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근의 토지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위해 동 개정안을 일정기간 시행하되,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검증·보완을 조건부로 원안의결

※'06년말까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농업용 토지는 2년 등 토지이용목적별 의무보유기간 설정(내용심사)

- ☞ 동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정성 여부는 토지이용목적별 허가 기준(실수요성 등)과 평균 보유기간 실태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강화1)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 설치(강화)

- ☞ 사이버모델하우스 설치는 청약과열을 막고, 일반국민인 청약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내용심사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을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로 정하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설정(내용심사)

-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외에 항공기와 선박을 추가한 것으로써 육상교통 수단외에 해상, 공중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함.

다만, 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형 시내버스에는 휠체어승강기 설치의 권장사항으로 규정(시행령 별표 2)하고 있으나, 휠체어승강기 이외에 모든시설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시행규칙 별표 1)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와 함께 일반형 시내버스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범위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버스에 설치해야할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중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제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도록 개선권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 등 여객시설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교통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내용심사)

☞ 현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중 여객시설에서의 교통 정보제공 관련 조항을 이관한 것이며,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 성은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여객시설 종사자가 수행 가능하나 수화통역은 전문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시장 또는 군수는 외곽이 간선 또는 보조간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주거지역, 학교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 등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방 500m 최대 1,000m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내용심사)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은 외국의 사례에 준하여 설정한 것으로써 적정한 범위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보행우선구역지정·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시범지구」를 지정 실시한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법령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의 범위내에서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범위(1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설정하였고, 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내용이 적정하고, 관련법령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였기 원안의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 관리의 적합여부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내용심사)

☞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한도액(200만원)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였고 과태료기준 및 절차도 현행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집행의 연속성과 유사법령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3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설정(내용심사)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기시행중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집행의 연속성을 기하고 유사 법령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교통사업자는 신규면허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내용심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법 및 정책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술
- 기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정하였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의견을 반영(입법예고안은 8시간이었으나 4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연간 신규면허 · 등록사업자 수를 고려하여, 통신교육등 교육방법에 대한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필요.

36)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1, 강화2)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호이상에서 5호이상으로 규정(강화)

☞ 동 규제강화는 매입임대주택제도의 정상화 조치로써 IMF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나치게 완화된 등록조건을 환원하는 것으로 미분양해소 등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혜택이 5호이상 임대사업자로 조정되었으므로, 등록조건 강화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및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적용기준을 60㎡에서 60㎡~85㎡까지로 확대(강화)

☞ 60㎡초과~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및 택지를 저렴하게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임대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신설)

☞ 동 규제는 모법에서 규정한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보험제도임. 보험사고 원인자에게 보험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원인이 주로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위험부담을 등을 재검토하여 임차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임차인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수수요율을 조정한 후 그 근거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37)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1, 강화3, 내용심사4)

○지하수 상부보호시설에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을 부착 의무화(신설)

☞ 현재 지하수보존·관리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 관리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위치파악이 어렵고, 오래된 시설은 관정소유자조차도 파악하기 곤란하여 지하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하수 관정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문 설치의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허가/신고 준공시 확인사항으로 시설의 위치,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지하수 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 절차로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토록 함.(내용심사)

☞ 동 규제는 준공확인 및 시정명령 제도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사항과 시정명령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시행상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굴착행위 변경신고시 굴착깊이 또는 굴착지름 및 시공업체명을 신고토록 의무화 (내용심사)

☞ 동 규제는 굴착행위 변경신고제에 따른, 신고사항을 구체적인 규정한 것으로제도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지중열을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공사'를 추가하여 신고토록 의무화(강화)

☞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시공기 위해서는 토지굴착(10m~500m)이 필요하며, 지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열냉난방공사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주기를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은 2년, 기타 허가시설(지하수법)은 5년으로 규정(내용심사)

☞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 등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지하수 사후관리 주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오염지하수 정화를 위하여 지하수 관정에 유기물질 또는 특정화학물질을 주입하는 행위' 추가(강화)

☞ 지하수 오염정화를 위해 화학물질을 주입은 기술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전문가가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의결

○토지굴착 목적 등이 종료한 경우, 해당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기간을 1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강화)

☞ 원상복구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확률이 높으므로 원상복구 기간을 단축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하수 관련 교육대상·주기·교육위탁기관·내용 등 교육의무에 대한 구체화(내용심사)

☞ 교육의무화 규제는 법 규제심사시 철회되었으나, 의원입법에 의해 신설된 사항으로 금번 규제심사는 교육대상, 주기 등에 대한 내용심사임. 교육주기 (3년)를 검토한 결과,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우선적으로 최초 등록업체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교육성과를 분석한 후 교육주기 등을 재조정토록 개선권고

○굴착행위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강화)

☞ 토지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굴착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설1, 내용심사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사원·임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강화)

☞ 중개법인 개설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규정으로써, 중개법인의 법정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고절차(10일 이내)도 법무사, 공인
노무사 등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 제27조1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중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가 기능함 등을 규정(내용심사)

☞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공평과세 기반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취지와 현행 입법례를 감안하여, 신고내용·절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협회의 공제사업 및 공시 절차 구체화(내용심사)

☞ 공제사업의 내용 및 절차가 현행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내용심사)

☞ 동법 제51조의 과태료 부과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의무화(내용심사)

☞ 동법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사항으로 신고
기한·절차(10일이내)도 동법 시행령 및 현행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동 개정안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동법의 위임범위 이내에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토록 함에 따라시행령에서 7일이내에 반납토록 하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등록증을 반납해야 함.(위반시 과태료 50만원)(내용심사)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기일 등은 현행 입법례를 준용하여 적절한 수준으로서는 판단되어 원안의결

○법에서 위임된 업무정지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동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준을 동법의 위임범위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중개업자는 법 제38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중개사무소간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업무의 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중 중개사무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함.(내용심사)

☞ 동 개정안은 무등록 중개행위등 불법행위 발생소지 차단 및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등록의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법 중개업자에만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써, 현행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9) 하천법(신설2, 강화1)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토석·쓰레기·동물의 사체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을 추가(강화)

☞ 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우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필요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천 또는 인근에서 하천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로 인하여 하천을 훼손하여 하천공사를 유발한 경우, 훼손 부분을 복원토록 의무화(신설)

☞ 하천공사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 그 밖에 하천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한국하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신설)

☞ 동 규제는 ‘한국하천협회’ 만을 하천법상 협회로 인정하는 진입규제로 다양한 협회 설립이 가능토록 ‘한국하천협회’ 명을 삭제토록 하고, 협회설립조건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개선권고

40) 발코니설치기준 고시(신설2)

○발코니 구조변경시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cm 이상인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기존아파트의 2층이상~10층이하만 해당)토록 의무화(신설)

☞ 동 규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아파트의 2층이상 10층이하만 해당되는 규제로 아래층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거실 부분만 확장한다고 할 경우, 방화판(알루미늄판) 설치에는 세대당 10만원정도의 비용만 소요되고, 방화유리의 경우에도 50만원정도면 되므로 비용측면에서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등을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토록 의무화(신설)

☞ 동규제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선택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1)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 규정(강화2, 내용심사1)

○100세대이상은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규모를 40㎡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및 남녀가 구분된 공간, 취사시설을 확보해야 함.(강화)

☞ 동 규제강화는 고령화추세에 맞춰, 노령층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로당이 노인생활공간으로써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주택법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2,000세대 이상으로 정함.(내용심사)

☞ 동 규제는 주택법에 도입('05. 1. 8)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제도도입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체등급평가 능력보유(고급 기술자) 등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2,000세대 이상('04년기준 14건)만 규제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보육시설 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보육시설 면적도 300~500세대미만은 30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이상으로 확대(강화)

☞ ①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500세대→300세대)는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 대부분이며(04년 300세대이상 401건, 70%), 이들 단지에서도 보육시설 수요가 높은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내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규제대상을 300세대로 확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②보육시설 정원(300세대이상 : 30인, 500 세대이상 50인)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며, '300세대이상은 20인 및 500세대 이상은 40인이 적절하다'는 용역결과와도 상이하므로 각각 20 및 40인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1, 내용심사2)

○법 15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내용심사)

☞ 유사입법 등의 과태료 부과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의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5일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강화)

☞ 동 개정안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도입하는 규제로 보수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진단 부실간의 직접적인 인과성 규명이 미흡하고 동법에 의한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로 정책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철회권고

○법 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민간 관리 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강화)

☞ 동 개정안의 통보시기·방법·절차 등이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강화3)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적용 지역 확대(강화)

☞ 택지개발법·도시개발법 등 현행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당해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폐율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은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강화)

☞ 건축물 규모에 따른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성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330㎡이하인 대지의 경우에만 용적률·건폐율을 가중평균값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은 삭제하고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현행규정을 유지토록 개선권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미이행시 이행 예치금을 활용한 행정대집행을 명시화하는 조치 부과(강화)

☞ 동법 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제도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이행강제 절차를 명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4) 종합물류업자인증 등에 관한 규칙(신설2)

○종합물류업자인증신청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신설)

-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3개 대분류사업)분야별로 각1개 이상씩 총 3개이상의 사업(세분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각 사업별(세분류 사업)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해당 물류기업 총매출액의 3% 이상 되어야 함.
- 해당 물류기업 총매출액중 '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20%이상 되어야 함.
(전략적 제휴기업은 구성기업별 각20%)

☞ 자격요건별 기준을 검토한 결과

- 각 분야별 1개이상(총3개이상)의 사업영위 요건에 대해서는 종합물류기업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업요건으로써 적정함.
- 매출액 요건은 각 사업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의 사업체도 3%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매출액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

〈 예 시 〉

· A기업=100억(운송업)+50억(시설운영업)+30억(서비스업)

⇒ 각사업체 모두30억원을 충족하여 인증신청가능

· B기업=1억(운송업)+0.1억(시설운영업)+1억(서비스업)

⇒ 각사업체 모두총매출액(2.1억)의 3%(6백만원)를 충족하여 인증신청 가능

- 제3자 매출비중 요건은 기존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매출비중 분포현황 등 기초 자료가 없어 기준설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나 선진국(60~70%)에 비해 크게 낮은수준으로써 규제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며 종합물류업에 대한 기본적 요건은 가능한 상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정기검사 거부, 정기 검사결과 인증기준 미달, 정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 반영을 추진하고 본 안건은 철회권고

제 5 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집필자 : 오 현 사무관 (Tel.2100-2455, obara@opc.go.kr)

1. 과학기술부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비파괴검사 기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과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원자력법개정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정안 등 1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 7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3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규제 32건)

○심사대상 32건중 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과학기술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24건임.

<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221차 경제2분과위 (2005. 6. 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24차 경제2분과위 (2005. 7. 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비중요 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 231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6 *비중요 6
비파괴검사기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제 231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1)	원안의결 6 개선권고 4	신설 10 *비중요 10
과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2005. 4. 27 예비심사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2005. 5. 11 예비심사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2005. 5. 11 예비심사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원자력법 개정안	2005. 5. 16 예비심사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005. 5. 31 예비심사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과학기술인공제회퇴직연금급여사업운 영규칙 제정안	2005. 11. 25 예비심사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24 개선권고 8	신설 24, 강화 7 내용심사 1 *비중요 32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신설)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 : 위치도, 지적도등본,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환지계획서 등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준공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은 대체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조항(제74조 등)에 의하여 별도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법 시행령에서 이들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환지계획서의 경우, 필요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실시가 가능한 바, 이 법시행령에서 별도로 중복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토록 권고함.

○건축행위의 규제 등 (강화)

- 전용주거구역 등 여타 용도지구 : 종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규정과 같음.
- 산업시설구역(신설) : 첨단기술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구역으로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건축행위 제한

☞ 산업시설구역은 첨단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구역으로서 동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상의 '일반공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설계수명 만료된 발전용 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방법 등 (강화)

- 평가보고서 제출시기
 - 설계수명만료시 계속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 제출
 -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
- 계속 운전시 평가내용
 - 수명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추가함
 -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현행)
- 계속 운전시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 원자로의 설계수명은 통상 30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기술의 발달로 10~20년 연장 가능. 따라서, 설계수명을 초과한 발전용 원자로를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기존의 11개 평가 항목외에 '수명평가'와 '환경영향' 등 2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 시행령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내용중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함.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처리현황 등 보고의무(강화)
 -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사항이외에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 · 저장 · 배출 및 처분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보고토록 함.

☞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 · 저장 · 배출 및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신설6)

●심사내용

-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승인 (신설)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우주물체의 제작 ·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보유
 - 우주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
 - 우주물체의 발사 · 추적 · 운용(우주센터)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보유
 - 우주개발전문기관은 우주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시설보안 등을 위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이 운영 · 관리하는 우주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승인 받도록 함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우주물체의 등록 절차 등(신설)
 - 예비등록시에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발사계획서 제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제출
 - (예비)등록내용 변경시 등록변경통보서를 제출
 - 우주물체 예비등록 및 등록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우주물체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 : 별지 제2호 서식

☞ 우주물체의 사용용도, 안전성 및 사고예방 등 사전점검을 위한 예비등록과 우주물체 관리 및 국제등록을 위한 등록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별지 서식 (예비)등록신청서에 등록처리기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등록처리기간(예비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 30일, 예비등록변경통보서 및 등록변경통보서 15일)을 명시함과 아울러, 등록증 교부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함.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등 (신설)

- 발사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
- 과학기술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의 적합성여부와 심사계획을 통보,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보완·시정 요구
- 법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시에는 신고토록 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의 변경시에는 신고토록 함.
- 발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
- 각종 신청서 양식 규정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
-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 별지 제5호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 별지 제6호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
- 발사허가시 고려사항으로 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과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으로 정함.

☞ 발사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및 발사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처리기간(우주발사체 발사허가 1년, 변경 처리기간을 180일)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서 첨부서류(별지4)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것을 개선 권고함.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액 명시(신설)

- 탑재중량 1톤미만 : 4,000만 SDR

탐재중량 1톤이상 : 6,000만 SDR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한 법률에 따라 최소배상 한도액을 정하였는 바,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 선진국의 보험금액과 비교할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 (신설)

- 법 제16조 제5항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정함.
 -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우주관련 분야 10년 이상
 -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
- 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은 상기 우주사고조사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준용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관련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의 위원 자격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등 (신설)

-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납부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4) 비파괴검사기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0)

●심사내용

○비파괴검사기술 활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신설)

- 조사대상 : 신기술·신형장비·기술도입 등 산업적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 동향 파악과 적용에 관한 사항, 비파괴검사업의
발전 관련 사항
- 조사방법 : 통계, 문헌, 현지조사 등
- 실시시기 : 매년 실시 등

☞ 법에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태조사 방법과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실태조사의 시기는
'매년' 실시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할 것을 개선 권고함.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 등 (신설)

- 기술인력 : 5인이상(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 1명 포함)
- 장비기준 : 6개 검사 관련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 처리기한은 30일로 함.

☞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상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 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아울러,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 권고함.

○국가기술자격에준한 검사자 및 책임자의자격요건(신설)

- 검사자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면허취득자, 비파괴검사자 종사자 교육이수자 및 외국 자격취득자
- 책임자 자격요건 : 비파괴검사기술사, 기술능력과 현장경험을 갖춘 자(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이상)

☞ 법에서 검사자의 자격요건을 비파괴검사종목 기술자격취득자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요건을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외국기술
자격취득자,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취득자중 관련 종사자 등으로 확대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비파괴검사 책임자의 경우, 기술사이외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검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근무 경험이 5년 이상인 기사 등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실시(신설)

- 비파괴검사자, 책임자가 수료하여야 할 교육훈련 종류, 시간 등을 정함
- 기본교육, 전문교육, 관리교육 등

☞ 산업 및 기술수준 발전에 따라 검사자 및 책임자의 검사능력도 향상되어야 하며, 발주자 역시 품질보증을 위해 검사자의 자질 향상 및 높은 기술자격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자격취득후 비파괴업무 종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훈련은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경우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발주자의 안전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보고의무 (신설)

- 비파괴검사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설비의 설치대상과 기준을 정함.
- 설치대상 : 방사선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계속하는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설치기준 : 전용 이용시설(「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자의 선량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설비한 상시 고정시설)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사업장내에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임시 간이시설)

☞ 법에서 비파괴검사시 방사선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설비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전설비 설치 대상이,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발주자'로 되어 있는 바,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
- 위반행위 조사 · 확인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 이의 제기

-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 등 참작,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사업자의 검사자 관련사항 보고 (신설)

- 비파괴검사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검사자의 인적사항, 기술자격 및 근무기간 등을 과학기술부(비파괴검사협회에 위탁)에 보고시 보고시기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보고시기 : 매년 1월말까지

☞ 검사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파괴검사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 및 필요시 경력확인증명서 발급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검사자 보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법 제11조에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인력기준을 제출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시 등록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인력 변경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므로 매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 제11조와 제15조의 검사자의 인력 관련사항은 중복우려가 있어 검사업체 등록기준에 명시된 인력이 변경되거나, 인력기준 이외에 검사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에 한정하고, 매년 보고의무를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함.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 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처분내용 : 등록취소, 3~9월 이내 업무정지 등

☞ 검사대상물의 안전성 향상과 무자격자의 검사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정지 등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비파괴검사협회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신설)

-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파괴검사협회가 정관 변경시 인가를

반도록 규정 하고 정관변경신청시 관련 첨부서류를 정함.

· 첨부서류 : 변경이유서, 개정 정관,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기본재산의 처분시 관련 서류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에서 정관 변경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비파괴검사업체의 보고사항 (신설)

–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수행 여부 판단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아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비파괴검사 용역 개요 등 사업자의 절차이행 과정설명서, 검사계획서의 사본, 검사결과서의 사본, 기타 입증 자료

☞ 비파괴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5) 과학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제한 (신설)

– 연구기획평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치산자 등 일정한 자에게는 자격을 제한함

· 자격제한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수행주체의 R&D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국가자격인 연구기획평가사의 자질확보를 위해 금치산자 등 일정한 자에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6)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신설)

-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3년이내의 기간동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료를 납부받은 기관이 기술료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화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전략기술 수출 승인 및 승인취소(강화)

- 전략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수출 승인요건〉

- 수출기술의 전략기술 해당여부
- 전략기술 수입국가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부적격자 해당 여부 등

〈수출 승인 취소요건〉

- 승인된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승인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 수출통제사유 발생 등

☞ 현행은 승인요건은 고시에, 취소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상위법령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7) 원자력법 개정안(신설1, 강화2)

●심사내용

○원자력 안전 및 통제교육 실시(신설)

-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안전조치 및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육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200여명

☞ 원자력안전 및 통제교육은 IAEA「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핵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 의결함.

○분기별 생산전력량에 대한 자료제출(강화)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의 운영으로 생산된 매분기별 전력량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자료제출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

☞ 현행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규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상위법령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 시행(강화)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방사성물질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대상기관 : 65개 기관)
- 핵물질사용기관(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사용 및 판매기관 43개, 운반수탁기관 19개 등

☞ IAEA의 「방사성물질안전운반규정」을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관리 및 운반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고, 불의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8)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과태료(내용심사)

-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

9)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운영규칙 제정안(신설3)

●심사내용

○퇴직연금급여적립금 운용방법(신설)

- 적립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정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
- 운용방법 : 금융기관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 수익증권 매입 등

- ☞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방법을 정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회원의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사유(신설)

- 예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사유 :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례는 유사입법례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회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신설)

- 적립금의 운용수익등 운용현황
-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사항 등을 정함.

- ☞ 회원으로 하여금 적립금 운용사항에 대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운용수익 등을 통보하는 사항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실적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 정보통신부

집필자 : 최승원사무관 (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중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강화 9건, 내용심사 15건 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 1건, 비중요 23건)

○심사대상 24건중 1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보통신부의 2005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정보통신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2. 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5. 5. 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 220차 경제2분과위 (2005. 5. 27-5. 30)서면심사	개선권고 8 철회권고 1	내용심사 9 *비중요 9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제 222차 경제2분과위 (2005. 6. 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4	강화 5 *비중요 5
전파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제 228차 경제2분과위 (2005. 9. 2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강화 3, 내용심사 3, *비중요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개선권고 1	강화 1 *비중요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제 238차 경제2분과위 (2005. 12. 16) 제 239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3) 제 161차 본회의 (2005. 12. 2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6 철회권고 1	강화 9 내용심사 15 *중요 1, 비중요 23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로 규정 (내용심사)

☞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 함으로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징수하도록 규정 (내용심사)

☞ 고시에 정한 비율과 같이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시행령에 정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9)

●심사내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정보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내용심사)

☞ 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한 것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구비서류중 정관은 심사할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여부를 3월 이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회 연장의 기간이 불명확 하므로 '2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인가 신청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양도·양수 관련 증빙서류, 양수인의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의 사업현황,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합병·분할인가 신청서에 합병·분할계약서 사본, 합병·분할 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합병·분할 당사자의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병·분할 당사자의 사업현황, 합병·분할 후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의 사실,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내용심사)

☞ 양수, 합병·분할, 상속 등으로 위치정보사업 자등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인가신청(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인가 신청시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계획서만 필요하므로 나머지 구비서류는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함.(재무구조, 사업 현황은 사업계획서로 확인가능). 이 경우 사업계획서는 규칙 제2조 제1호의 사업계획서로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의 양도 등을 받은 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안 제18조제3항 중 ‘이용 및 제공목적’,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업개시 일시’, ‘이용약관 변경여부 및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으로 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설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허가서(위치정보사업의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에 한함),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지 또는 폐지사실의 통지계획을 기재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위치정보사-승인,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해야 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위치정보 사업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및 그 사유,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30일 이상 게시의 방법 등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함.(내용심사)

☞ 휴지 또는 폐지의 사업내용 및 설비내역은 허가(신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불필요함. 다만, 일부휴지의 경우 정보주체 보호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봄. 따라서 제7조 1호, 2호 및 제12조 제1항 1호, 2호를 ‘일부 휴지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설비의 내역’으로 할 것을 개선 권고함. 아울러 허가서와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 함. 한편,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주체 통지의 경우, ‘전부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사업내용’과 ‘폐지의 사유’를 통지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일부 휴지의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휴지의 사유’로 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의 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내용심사)

- ☞ 법률의 위임사항을 위반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인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 하여 그 처분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이용자를 위하여 휴지의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1년간 사업정지를 당할 때 사업자가 입는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 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총 합산 기간을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로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 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토록 함.(내용심사)

- ☞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기준, 납부방법, 가산금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 법령의 예를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납부시 체신관서로 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 법령의 예를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10일 전까지 이용약관 및 변경내용을 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내용심사)

- ☞ 법률에는 단지 이용약관 제출의무만 있고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다만, 위치정보주체의 보호와 공공이익 등을 위하여 사업개시 전에 또는 이용약관을 변경하기 전에 요금 및 조건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출 일자를 사업개시전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일자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만, 변경시 변경된 이용약관만 제출하면 되므로 이용약관 및 변경 내용을 이용약관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등의 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한 때에는 유보한 사항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내용심사)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안 제15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철회할 것을 개선 권고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자 인적사항, 점검내용, 점검근거 및 목적 등을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치 정보사업자 등은 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내용심사)

☞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행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위하여 사전에 점검통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치정보사업자의 자료제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의 신설이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구조가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배우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개인위치 정보주체와의 관계,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개인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방지 및 무권한자의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 등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내용심사)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때 제출할 사항의 규정은 법률의 근거없이 신설된 규제로 철회권고. 동 규정은 법률의 취지상 긴급 구조기관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상황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긴급구조기관이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변경 하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됨.

4) 전자서명법개정 법률안(강화5)

◎심사내용

○공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작성표준과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작성표준 및 지침에 위배되거나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발생 시킨 경우 인증업무준칙 변경을 명할 수 있음 (강화)

☞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작성표준과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준 경우 업무준칙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한 것은 '불만' 등의 개념이 주관적이므로 구체화가 필요하고 업무준칙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작성표준을 따르고 있다면 준칙변경을 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불필요하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대상기관에 등록대행기관을 추가하며, 보호진흥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시 공인인증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신원확인을 하지않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장애발생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 · 감독권이 없는 등록대행기관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이 아닌 보호진흥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되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특정공인인증서 요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보호진흥원이 전자서명인증 관리업무 수행시 공인인증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강화)

☞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만 해당되는데 공인인증기관과 계약 등에 의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등록대행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 지정, 검사 등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므로 지원업무를 하는 보호진흥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철회 할 것을 개선권고

○누구든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제한된 용도를 초과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양도·대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강화)

☞ 공인인증서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보호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장애발생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특정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강화)

☞ 보호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련조문을 삭제하므로 철회를 개선권고

5) 전파법중 개정 법률안(강화3, 내용심사3)

●심사내용

○심사할당 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10년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기존 심사할당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후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토록 함.(*대가할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은 20년 이내) (강화)

☞ 심사할당 주파수에 대한 이용기간 설정은 이용기간이 정해진 대가할당 주파수와의 형평성 제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는 00년 전파법 개정으로 심사할당으로 간주되었고,

그 후 이미 5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이용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요건을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전파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수의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나, 정부의 재량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이므로 타당함. 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의 이용실적에 대한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시에도 당해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음.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강화)

☞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시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할당대가 미납시 할당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국의 운용휴지기간 만료 이전에 무선국의 운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강화)

☞ 무선국 시설자가 휴지기간중 무선국을 재운용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전파사용료 기피방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인증기기를 변경시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기기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내용심사)

☞ 형식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규칙으로 운용중인 인증기기 변경신고 규정의 상위 입법화, 규정미비로 불합리하게 처벌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 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다만, 무선국 취소요건을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 것은,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한 결과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므로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한 경우'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강화1)

●심사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전송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전송된 정보 등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의 거부등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S/W부정복제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 권고적 성격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미이행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현행 과태료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올리는 개정안은 '02. 12. 30 과태료 조항 신설후 시정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가 없는 실정에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격한 과태료 상향 조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타법 유사규제(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 통신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를 비교검토시 현 단계 에서는 1천만원이하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할 것을 개선 권고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2년 이상 기존가입자에게 2년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지원을 허용하고, WiBro, W-CDMA 등 신규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 허용하며,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한을 2년 연장하 되 보조금 허용 대상 확대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가입시점 등 정보 제공은 통신위원회가 요청을 하는 경우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로 규정함.(내용심사)

☞ 일몰제 시행의 소기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행 단말기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일부 논의도 있었으나,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 및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다만, 향후 규제일몰제의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함.

3. 기상청

집필자 : 오현 사무관 (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기상업무법전부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5건)

○심사대상 5건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상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5건임.

< 기상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3
기상업무법 전부개정안	2005. 5. 2 예비심사	원안의결 2	신설 2
계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5 *비중요 5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안(신설3)

●심사내용

○기상측기제작 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자격(신설)

–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 수리 및 사후 보증수리단계까지 기상측기의 철저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기상측기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상측기 제작업자 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필요함.

다만, 기상측기 제작업자가 적정한 시설기준 또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규제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예 : 신고, 등록 등)할 것을 개선 권고함.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량기 제작 또는 수리 및 계량증명업자는 해당 자치 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 관리(신설)

- 기상측기를 제작, 수리, 설치 및 수입한 업자는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함.(검정유효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부령으로 정함)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안 제29조 제1항 제2호)

-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정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 ·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청 할 수 있음.

- 허위 등으로 검정대행기관지정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검정대행 기관은 취소할 수 있음.

☞ 기상현상을 측정하는 기상측기의 성능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작된 기상측기에 대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검정 제도 및 검정대행기관 지정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상측기와 계량기가 동일 측정 단위를 사용 중인 기기의 경우, 향후 이 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복 적용되어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량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 권고함.

○과태료 부과(신설)

-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상측기 제작 등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상측기 제작 후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의 이행성 확보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부과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 기상업무법 제정안(신설2)

●심사내용

○기상 등 긴급방송 요청권(신설)

-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 등의 정보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청받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에게 기상 등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기상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신설)

- 기상청장은 기상관련 공무원, 기상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정취소 사유〉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1년에 3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상 등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법안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제 6 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집필자 : 오 현 사무관 (Tel.2100-2455, obara@opc.go.kr)

1. 농림부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안, 인삼 산업법시행규칙개정안,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농어촌정비법시행 규칙개정안,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령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개정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17개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강화 35건, 내용심사 14건, 누락 6건 등 총 7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71건)

○심사대상 71건중 2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림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6건임.

< 농림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4.2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 5, 내용심사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4.2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20차 경제2분과위 (2005.5.27, 서면)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8.1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5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9.9)	원안의결 8 개선권고 3	신설 1 강화 10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	제 230차 경제2분과위 (2005. 10. 14)	원안의결 3 개선권고 5 철회권고 1	신설 3 강화 6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강화 4 내용심사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5	신설 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5. 4. 20 예비심사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안	2005. 7. 22, 예비심사	원안의결 1	신설 1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	2005. 11. 10 예비심사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1 내용심사 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5. 12. 12 예비심사	원안의결 2	신설 1 내용심사 1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법을 개정안	2005. 12. 3 예비심사	원안의결 6	누락 6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2005. 12. 3 예비심사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계	-	원안의결 49 개선권고 21 철회권고 1	신설 16 강화 35 내용심사 14 누락 6 *비중요 7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강화5, 내용심사1)

●심사내용

- 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출자금 기준 상향 조정(강화)
 - 지역조합 3억원 이상→5억원이상, 품목조합 2억원 이상→3억원이상

☞ 출자금 납입기준은 2000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의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 및

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출자금 확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자율합병 등으로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사업규모 확대로 조합원 실익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향조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지역농협 58개소(5.2%), 품목조합은 2개소(5.7%)에 불과하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조합 및 품목별 조합에서도 수용한 사항이며 기준미달 조합은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일('05. 7. 1)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 연장)에 인가기준을 충족하면 되므로 출자금 상향조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04년 법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1인)를 두도록 규정(강화)

– 개정법에 따라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 단, 법시행일 2년 이후(2007. 7. 1) 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은 1,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과규정 됨.

☞ 농협법에 의하여 조합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상임이사가 도입되었으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은 제도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04년 법개정에 따라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간년도에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1회)를 받도록 규정(강화)

☞ 갈수록 규모화 및 전문화 되어가는 협동조합의 현 회계제도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조합원의 자체감사로서는, 여러 한계가 발생함. 따라서 일정규모(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909개조합(68.5%)에 대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 회계제도의 선진화 및 조합경영의 투명화에 기여하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 해소 및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범위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앙회는 부실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 거절이 가능하도록 함.(강화)

–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 100㎡ 이상 사업장 및 중앙회와 호환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조직 구비
- 제명회피 목적의 탈퇴 후 2년 미경과(이사회 결정)

- 법령·정관 위배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피해를 입힌 후 2년 미경과 등(이사회 결정)

☞ 중앙회의 회원가입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이어야 하는 바, 단순히 사무실 면적기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하여 회원발전을 저해할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의 최소기준을 100㎡로 하고 있으나, 현재 품목별 조합의 사업장 최소 면적은 256㎡이므로 규정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장의 면적 등으로 중앙회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입법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최소기준을 100㎡로 하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함.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전산조직' 보다는 '전산설비'가 호환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함.('전산조직' → '전산설비'로 수정).

중앙회 회원가입 거절기준 중 '제명회피 목적으로 탈퇴 후 2년 미경과', '법령·정관 위배로 중앙회 등에 피해를 입힌 후 2년 미경과' 조합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강화)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자
 - 농업분야 석사이상으로서 관련분야 5년이상 종사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경력자
 - 최근 5년간 법령에 의한 주의·경고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업무 외의 다른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업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의 처리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준법감시업무외에 일체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도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법감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개선 권고
-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위험 관리에 관한 업무, 감사업무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내용심사)

- 농업 · 축산대표 : 신용부문을 제외한 중앙회 10년이상 근무 및 이와 동등한 경력
- 신용대표 : 농업 · 축산경제부문을 제외한 중앙회 및 금융기관 10년이상 근무 및 이와 동등한 경력
- 전무이사 : 중앙회 10년이상 근무 및 이와 동등한 경력

- ☞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전문경영을 위하여 전무이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무이사를 기존 대표이사 수준으로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2)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공제규정 기재사항 및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공제규정 기재사항 : 공제사업 실시, 공제상품, 공제계약, 공제분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지급사유 발생 또는 신청지연 등의 사유시 적립 기준, 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 ☞ 종전에는 법률에 의하여 '공제규정기재사항', '공제책임준비금 적립기준' 등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나(훈령으로 규정) 이를 농림부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상위입법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조합감사 및 중앙회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함.(내용심사)

-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
- 조합감사에게 결산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

- 중앙회장에게 결산승인후 2주내 제출
- 대의원 1/3이상 요구로 감사를 실시한 조합의 경우에는 감사종료후 2주일내 제출
- ☞ 주식회사 등도 총회 개최 1주일전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감사보고서도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기준으로 판단됨.
- ※ 주식회사 등도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개최 1주일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양곡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및 매입자격 제한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함.
 - 관수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가공용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주류제조업(쌀소비 월간 10톤이상이고 제조시설면적 100㎡이상)
 - 공공용 : 수급권자, 무료급식 단체, 초·중·등교육기관 등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설정
 -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기간동안 정부관리 양곡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정한 양곡관리대상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 기장 또는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 현재농림부장관의 지침으로 시행중인 사항을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농림부장관이 정한 양곡관리대상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서 위임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내용심사)
 -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정함.

- 표시사항 : 품명, 중량, 원산지 등 표시
- 표시방법 : 글자크기, 위치, 표시 문자등을 규정
- ※ 표시위반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에서 위임한 거짓 · 과대의 표시 및 거짓 · 과대의 광고에 대한 범위를 정함.
 -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 · 광고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특’ 등의 표현으로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등
- ※ 위반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신설2, 강화5)

◎심사내용

○민간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강화)

- 농림부장관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유효기간을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인증능력 구비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한 인증기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민간인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촉진하며, 국제여건에 맞는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설정하여 국내인증농산물이 국제시장에서 동등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외국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 일본 · 미국 5년, 캐나다 3년, 독일 1년 등)

○친환경농산물 관련 행정형벌(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추가(강화)

-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당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나 유사한표시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는 행위, 미인증품 등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선전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입농산물의 부정 친환경농산물 표시 등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인증신청의 자격제한(누락강화) 기준을 정함.

- 인증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자
 -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 인증기준미달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상기 자는 형의 확정 또는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한 제한기간 없이 즉시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1년) 인증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지위의 승계시 지위 승계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함.(신설)

- (현행)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사업 양도, 사망,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함.
- (신설)인증기관의 지위 승계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신설)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자의 지위 승계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을 양도,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위 승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가 부실해지고 이에 따른 부적합품 유통, 정부 운영 「인증정보제공시스템」의 신뢰 저하 및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됨. 따라서 지위 승계자에 대한 자격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인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시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해당 인증기관이 지정취소를 당한 경우 지위 승계자가 신고할 대상이

없게 되므로 신고대상에 농림부장관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함.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변경 ·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명령(강화)

- (현행)인증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여 잔류농약 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변경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정)사후적 검사방법이외에 생산 · 유통과정 등을 조사하여 인증기준 미이행 등의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경우에도 표시변경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현장에서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표시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 인증기준 미달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특히 화학비료사용여부 판별을 위한 사후 검사기술이 없고, 잔류농약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농약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 · 유통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치가 필요하여 원안의결

○보고 및 점검 등(신설)

- 농림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위해 인증기관과 인증받은 자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18조의 3 제2항의 '관련문서'는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로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함.

○과태료의 부과대상 확대(강화)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보고 · 자료제출 또는 점검행위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지위 승계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이행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생산자(농민)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불응한 생산자(농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인증기관에서 분기 1회이상의 현지점검을 통한 조사, 부적합품 생산시 인증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생산농가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함.

5)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신설1, 강화10)

●심사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확대 등(강화)

- 도축장에서 운용 중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HACCP 자율적용 대상에 '가축사육 농장'을 추가
- 고시로 운영중인 HACCP 변경 지정을 상위 입법화
- 시행규칙으로 운영중인 HACCP 지정 전 사전교육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상위 입법화하고, 사육단계 HACCP 도입에 따라 농업인을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
- HACCP기준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선진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를 가축사육단계를 포함한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도입, 도축장별로 차이가 심한 HACCP 수준의 평가, HACCP 교육의 강화, HACCP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HACCP 기준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내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축산물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설)

- 소비자보호원에서 비포장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지적·개선요구하여 닭·오리고기 등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 실시하도록 함.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 도모, 수입산과의 차별화,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대상영업자, 시행시기 등을 법률에 구체화시켜 규정토록 개선 권고함.

○항생제 등 잔류위반 농가 타인 명의로 가축 출하를 금지(강화)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생제 등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익명 또는 타 농가 명의로 가축 출하를 금지하도록 함.

- ☞ 항생제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되는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규제검사 대상 농가들이 익명 또는 타 농가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허가사항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강화)

- 시행령으로 운영중인 아래 변경허가 대상을 상위 입법화
- 변경허가 사항: 영업장소재지 변경, 도축대상 가축종류 변경 등

- ☞ 변경허가대상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었던 것을 법으로 상위입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 품목제조 신고(강화)

- 축산물가공업품목제조보고를 신고로 전환
- 시행규칙으로 운영중인 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 보고를 신고로 전환

- ☞ 축산물가공업 등 품목제조보고를 제품생산후에 할 수 있음을 영업자가 악용하여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사후적인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허가의 취소 등(누락 강화)

-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사실 미공개 또는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행

- ☞ 축산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사항이 누락되어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징금 처분(강화)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도축장에서 HACCP를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정지 처분 조치

☞ 과징금처분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에 불응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할 것을 개선 권고함. 다만, 도축장의 HACCP의무적용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HACCP를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강화)

- 위생교육대상자에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추가

☞ 식육판매업자의 위생교육 정례화, 위반업소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생교육 확대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유통기한이 경과한 포장식육 및 위해평가 미완료 축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강화)

-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포장육 형태의 식육에 대하여도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토록 함.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 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가공품 및 포장육의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시 판매 등의 금지가 가능하나 포장육 형태의 식육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시 판매 금지 등이 불가 하여 이를 보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경우에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의 일시적 금지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영업소 폐쇄대상 확대(누락강화)

- 영업소 폐쇄 대상에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
- 변경신고 : 휴업, 재개업, 폐업, 영업자의 성명, 영업자 명칭·상호·소재지

☞ 휴업후 재개업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휴업신고없이 사실상 폐업을 한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자의 소재지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영업장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수 변경 미신고는 제외토록 개선 권고함.

○과태료 상한액 인상 및 포장유통 의무 위반자 등 과태료 부과(강화)

-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
- 축산물에 대한 포장유통 의무 위반자,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익명 또는 타 농가의 명의로 가축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축산물에 대한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에 대한 규제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익명 등으로 가축 출하금지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규제의 실효성, 타 법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과태료 상한액 인상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6)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안(강화3)

●심사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등(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마련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농어촌지역주민은 민박지정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처리기한 7일)

-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시·군별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변경)신청시 제출서류인 '주민등록 등본', 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시도행정정보시스템으로확인·조회가 가능할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도록 할 것과 민박사업자지정신청서에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기재토록 할 것을 개선 권고함.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강화)

- 규 모 :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1조 이상 비치

☞ 현행 농어촌민박은 객실 7실 이하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객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객실에 대한 면적제한이 없어 대형화·상업화된 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농어촌민박의 규모를 주택연면적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상업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어촌민박 주택규모를 150제곱미터미만으로 제한한 사항은 농림부의 관계자회의 개최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운영중인 13천여 농어촌민박의 규모(134제곱 미터), 농어촌지역 주택 규모(150제곱미터미만이 전체의 90% 이상)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사항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의 재산상 불이익 및 관리를 위해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야 하고, 현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상업화·규모화에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으며, 전통가옥에서의 숙식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방시설인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하도록 한 것은 숙박객 안전 및 사업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

- 농어촌민박사업자 당해주택 거주,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등 단계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민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신설3, 강화6)

◎심사내용

○신약등의 재심사 및 위반시 행정처분 등(신설)

- 재심사 기간 및 대상
 - 신약 등의 시판후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후 4년 내지 6년 후에 해당 신약 등을 재심사
- 검역원장이 재심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범위, 재심사 자료의 요건, 조사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안전성 · 유효성 관련자료,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련자료 등을 작성한 후 검역원장에게 제출
- 재심사 결과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품목변경허가 신청 등 조치토록 함.

☞ 약사법 제2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약 등의 안전성 · 유효성 등 재심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심사 절차 · 시기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물용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후, 시판과정에서 이상반응,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고, 축산물에 잔류후 인체 섭취시 사람에게 위해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경과후 안전성 등을 재심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규칙개정안의 상위법인 약사법 제26조의2제1항 에 의하면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외약외품’에 대해서는 재심사관련 사항이 없음으로, 개정안 제7조의 2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의 ‘동물용 의약품등’을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아울러, 재심사는 품목허가후 4~6년 이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심사 기간 도래시기를 사전에 검역원에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의2 제2항 후미의 '기입하여야 한다'를 '기입하여야 하며, 재심사신청기한 도래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 제한 (강화)

-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된 제제의 수입금지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수입품목허가 제한대상을 검역원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소 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등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함유한 것으로써 검역원장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수입품목허가 제한대상에 추가

☞ 수입금지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규칙 별표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광우병 등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사용 및 함유 품목 등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동물용의약품등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강화)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제조관리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함.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제조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를 두며, 제조 관리자 변경시 규칙 제24조제4항에 의거 제조업체는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실제 제조관리자가 제조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 퇴직 등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조관리자는 이중 취업, 면허 대여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농림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려함.

제조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은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제조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조관리 자의 보호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이미 제조업체에 제조관리자 변경신고의무(개정안 제24조 제4항)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실태 강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강화)

- 우수한 고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토록 함.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자는 생물학적제제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
-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금지토록 함.
- 허가된 제조소외의 장소에 동물용의약품등의 보관 금지

- ☞ 현재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검역원 고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조및품질관리 기준(GMP)을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생산보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동물용의약품 신기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특허 침해를 방지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허가된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제품의 변질을 방지토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허가(강화)

- 동물용의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외품중 위생용품의 제조 및 수입품목 신고시 제출 서류에 '성상'에 대한 자료를 추가함.
-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제조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판매증명사항도 추가함.
- 최초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수입자및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8조규정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제출을 품목허가 신청서상에 포함함.

- ☞ 동물용의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수입품목신고시 유사제품과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 性状에 관한 자료제출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신청서 구비서류 제출시 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제조 증명서'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로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시 시설기준령에 의한 시설(영업소, 시험실, 창고)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최초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시에 관련시설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것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최초 수입시 수입자가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되어 있으나, 시설기준령 제8조에서는 시험기구뿐만 아니라 창고, 영업소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를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 내역서'로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함.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신설)

-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 수입업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구비서류 :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품질 및 성능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시 품질관리시설 등을 갖추고 수입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진단서는 자연인은 확인 필요가 있으나 법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진단서 인정시점을 '진단서로써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아울러, 법인등기부 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함.

○동물용의약품등 판매질서 준수 및 위반시 행정처분 등(강화)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 준수사항을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확대하여 적용함.
- 제조·수입품목 미허가(미신고) 제품의 판매, 판매목적의 저장·진열 금지
- 판매업소외 장소에서 판매금지 및 진열금지
- 판매촉진 목적의 현상품 및 경품류 제공금지

-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자 준수사항에 주의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이상 보존토록 규정
- 출고된 제품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수토록 하고 그 기록을 2년이상 보관토록 하는 의무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확대
- 동물용의약품 운반용 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규정

☞ 허가(신고)제품의 판매시 준수사항을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로 확대하여 무허가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사항은 농가 등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동물용의약 외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그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금지 규정과 허가(신고)된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은 동 규칙개정안의 상위법인 약사법 제41조제1항과 의료기기법 제17조에는 관련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써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철회토록 권고함.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시 수불현황의 1년간 작성 · 비치의무 준수, 불량제품의 회수 기록 보존을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확대하는 준수규정, 주의동물용의약품(인체나 동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정한 품목) 판매시 판매 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이상 보존토록 규제를 강화하는 안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나 시행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 권고함.

가축방역상 목적으로 농가에 출입하는 동물약품 운송차량에 대하여 식별표판을 부착토록 의무화하는 규제 강화안은 동 규칙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소의 시설 및 설비요건에 동물약품 운송차량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며, 전염병 발생지역 등의 입 · 출입 제한 관련사항은 타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물용 의약품의 배송이 주로 물류회사 택배를 이용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동 규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 신고 (신설)

-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 수리업 신고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리업 신고수리를 받도록 함.

· 구비서류 :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의료기기법에서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에 대해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제출서류 등 하위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진단서는 자연인은 확인 필요가 있으나 법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진단서 인정시점을 '진단서로써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진단서로써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 아울러, 법인등기부 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함.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강화)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이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과 임대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임대업 신고를 하도록 함.

- ☞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과 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신고토록 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8)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4, 내용심사3)

●심사내용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강화)

- 현행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지도·명령
 - ①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장비의 대국민 지원지도와 동원명령
 - ② 동물병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방지 등을 위한 기구·장비의 구비 및 시설 개선의 지도와 명령

③ 기타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지도와 명령

－ 개정

- 농림부장관외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도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하여 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수의사법 개정으로 농림부외에 시·도 및 시·군에서도 수의사 또는 동물 병원에 대하여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지도·명령의 내용을 추가하여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업무개선을 위한 지도·명령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동물병원외에 수의사에 대하여도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

○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사유 추가(강화)

－ 현행

- 면허효력 정지사유(1년이내) : 불필요한 검사·수술 등 과잉진료 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 등

－ 개정

- 면허효력 정지사유에 ①허위·과대광고 행위 ②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를 추가

* 면허효력정지 15일(1차), 1월(2차), 6월(3차)

☞ 동물병원의 허위·과대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어 유사한 의료법령과 같이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함.

○ 수의사국가시험 과목 개편(내용심사)

－ 현행

- 수의사국가시험은 수의내과학 등 10개 과목에 대하여 실시

*시험과목 : 수의내과학·외과학·약리학·산과학·전염병학·공중보건학·수의법규·생리학·병리학·해부학(시행령 제9조)

－ 개정

- 수의사국가시험은 4개 분야별과목에 대하여 실시

*시험과목 : 기초수의학·예방수의학·임상수의학, 수의법규 및 축산학일반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시험과목을 의료인국가시험 등 유사한 시험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수의학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의 연구용역 결과(‘04)를 반영하여 시험과목을 4개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시험내용과 출제 범위는 시험관리기관장(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동물병원개설시 시설기준(내용심사)

- 현행
 - 동물병원개설시 갖추어야 할 진료실 · 처치실 · 조제실 · 임상병리검사실 등 시행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
- 개정
 - 동물병원 시설기준중 중요사항(시설종류)만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고, 시설종류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일부시설은 면제
 - ① 수의사이외의 자가 개설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서 '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 창고'를 제외
 - ② 양축농가의 현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시설 면제

☞ 진료시설 · 장비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시설 기준중 중요사항(시설종류)은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의료법과 같이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되, 일부 시설은 제외하여 개설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수의사이외의 자의 진료행위 범위 (내용심사)

- 현행
 - 수의사이외의 자도 광역시장 ·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 · 벽지에서 이웃의 양축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무상진료행위 가능
- 개정
 - 수의사이외의 자가 할 수 있는 무상진료의 범위에 '사고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응급처치행위' 추가

☞ 부상당한 유기동물 · 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독 · 지혈 등 응급

처치는 수의사외의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진단서 서식 신설 및 폐사진단서 보존의무(강화)

－ 현행

- 진단서에는 병명 등 8개항목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함.(동물의 종류 · 품종, 병명, 발병연월일, 치료 소견, 진단연월일, 동물소유자 성명 등)

－ 개정

- 진단서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서식을 신설하고, 폐사진단서도 부분을 3년간 비치하도록 규정

☞ 동물병원 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진단서 및 폐사진단서의 서식 통일, 폐사에 따른 분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사진단서의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진료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존의무(강화)

－ 현행

- 진료부에는 병명 등 5개항목을 기재하고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기재사항: 가. 동물의 품종 · 성별 · 특징 및 연령, 나. 진료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 개정

- 진료부 기재사항에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추가하고 1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의사법시행규칙상의 진료부 기재사항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령 위반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신설6)

●심사내용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준 등 규정 마련(신설)

- 우수농산물인증기준(영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 우수농산물인증 교육 이수자가 생산한 농산물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농산물
 - 이력추적관리대상으로 등록된 농산물
 - 동 기준 모두 충족시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음
- 우수농산물인증 대상품목 결정(영 제14조의3)
 -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대상품목 선정
-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영 제14조의4)
 - 절차·방법 등 세부규정은 농림부령에 위임
-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절차(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 인증기관에 우수농산물 인증 신청
 - 인증기관장은 심사반을 구성, 인증 심사
 - 인증적합 판정시 우수농산물 인증서 교부
- 우수농산물인증품 표시방법(시행규칙 제15조의4)
 - 인증품 표시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의 표지를 붙임
- 유효기간의 연장(시행규칙 제15조의5)
 -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농관원장이 정한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개정 법률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기준, 대상품목 결정, 신청 및 인증 절차, 우수농산물인증품 표시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 하위 법령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령 제14조의 2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중 제1항 제2호는 '당해 농산물이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의해 생산된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농림부장관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교육실시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수농산물 인증신청시 농업인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동 교육관련 사항은 삭제할 권고함.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신설)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절차(시행규칙 제15조의6)
 -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에게 지정 신청
 - 농관원장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 결정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도 · 감독(시행규칙 제15조의7)
 - 농관원장은 지도 · 감독이 필요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장부 또는 서류 등의 확인 등 지도 · 감독할 수 있음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시행규칙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
 -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지정 후 시설 · 장비 등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조치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조치

☞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법에 위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기준 등 제도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 규칙안 제15조의 7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위한 지도 · 감독’ 조항은 우수농산물인증제도가 처음 시행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 · 감독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에 지도 · 감독에 대한 위임 근거가 미흡하며, 필요시 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 또는 서류의 확인 등은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또한 시행규칙안 제15조의 8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항은 현장에서 실제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향후 상위법 개정시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세부규정 (신설)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에게 지정 신청
 - 농관원장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여부 결정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을 위한 지도 · 감독(시행규칙 제15조의10)
 - 농관원장은 지도 · 감독이 필요할 경우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시행규칙 제15조의11)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지정받은 후 시설 · 장비 등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취소 처분

☞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 친환경인증제도 등과는 다르게 민간인증제도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규정은 친환경 인증제도의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안 제15조의 10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을 위한 지도·감독’ 조항은 우수 농산물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에 지도·감독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 또는 서류의 확인 등은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또한 시행규칙안 제15조의 11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항은 현장에서 실제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향후 상위법 개정시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함.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신설)

- 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시행규칙 제15조의12 내지 제15조의13)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가 기록·관리되고, 이력 추적관리농산물과 다른 농산물이 구분관리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리콜 등 사후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농산물
 - 동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등록을 받게 됨
 - 이력추적등록의 절차(시행규칙 제15조의14)
 - 농산물이력추적을 원하는 생산·유통·판매자는 농관원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농관 원장은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자에 대해 등록증 교부
 - 농산물이력추적대상품목 결정(시행규칙 제15조의15)
 -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이력추적대상농산물의 품목을 선정
-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 위해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한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여 '06.1.1부터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개정법률 '05.8.4 공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절차, 품목결정 등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에 위임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

○농산물이력추적등록사항, 표시방법 등 (신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시행규칙 제15조의16 및 제15조의 17)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생산 · 유통 · 판매자가 기록 ·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농관원장이 고시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시행규칙 제15조의18)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 · 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표지를 붙임.
- 유효기간의 연장(시행규칙 제15조의19)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은 농관원장이 정한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자를 위한 지도 · 감독(시행규칙 제15조의20)
 - 농관원장은 지도 ·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등록사항, 관리기준, 표시방법, 유효기간의 연장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다만, 제15조의 20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자를 위한 지도 · 감독' 조항은 법률에 지도 · 감독의 위임근거가 없고 필요시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 또는 서류의 확인 등은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농림부장관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등의 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 · 품질 또는 인증 · 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바, 필요시 지도 · 감독을 추가로 신설할 사유는 미흡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위한 처분 및 공표명령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신설)

- 원산지 표시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 원산지 등의 미표시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경우 : 표시정정
- 원산지 등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또는 표시정정
- 공표명령의 기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표시위반물량 : 30톤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3억원이상(가공품의 경우 6억원이상)
- 최근 1년내에 시정처분을 받은횟수 : 3회이상

⇒공포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반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고지 방법(시행규칙 제24조의 4)
- 위반업체의 대표, 상호 및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번호와 위반품목의 물량 및 위반내용과 함께 시정방법과 그 기한을 고지

☞ 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해 원산지표시등 위반자에 대해 시정처분 및 공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표시이행, 표시정정 및 표시삭제 등 처분규정을 정하고, 표시 위반물량이 과도하거나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위반 사항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자체 규제심사시 공표기준의 표시위반물량을 50톤→30톤 이상, 판매가격의 합계가 5억원→3억원 이상 또는 가공품은 10억원→6억원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안 제24조의 4 ‘처분의 고지’는 행정관청에서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시행령안 제27조 의3에 근거가 미흡하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함.

1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후 지정신청에 대한 경과규정 (강화)

- 인삼 자체검사업체가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자체검사업체 :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중 일정한 시설 · 기준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면, 직접 제조한 홍삼 등을 자체 검사할 수 있음.(인삼산업법 제17조)

- ☞ 인삼자체검사업체가 지정취소된 후 재지정신청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지정취소된 후 곧 재지정신청을 할 우려가 있는 점,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양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취소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원형태극삼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내용심사)

- 제조기준은 머리 · 몸통 ·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갖추어야 함.
- 검사기준은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 · 몸통 ·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갖추어야 함.
- ※ 태극본삼은 잔뿌리가 제거된 상태이나, 원형태극삼은 잔뿌리 보존

- ☞ 제조 · 판매되는 인삼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인삼제조업체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인삼수요자로서는 인삼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1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부채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을 임대기간중 제3자에게 매도 금지(신설)

- 한국농어촌공사는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등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공사는 임대기간중에는 당해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음.

-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기간중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도록 함은 당해 농업인의

계속적인 영농 및 환매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12)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신설2, 강화1, 내용심사1)

●심사내용

○경마장개보수시 대체 경마장 추가경마시행 승인(내용심사)

- 경마장의 개보수 등으로 경마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시행하지 못한 일수이내에서 다른 경마장에서 추가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경마장 개보수 등으로 인해 장기간 경마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필 관계자의 생업 및 경마산업의 계속성을 위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함.

○광고 등 경고문구 표기 대상(신설)

- 법률에서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광고에 표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고의 범위를 마권구매와 관련된 포스터, 신문·잡지·옥외전광판 광고로 규정함.

☞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 대상광고를 관련 포스터, 신문·잡지·옥외전광판 광고로 규정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함.

○경마장, 장외발매소내 사실확인 조사(누락강화)

- 법에서 마사회가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사실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경마장 3개소, 장외발매소 32개소)

☞ 다수인이 사용하는 경마장 등의 질서유지 및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사회가 영조물 운영주체로서 질서유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신설)

-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조사후 서면으로 통지 및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1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심사내용

○마권 및 광고의 경고문구 표시내용 및 방법(신설)

-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을 정함.
 - 경고문구의 내용 : 마권구매가 유발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표시방법 : 마권과 구매권은 뒷면에 표시, 포스터 등 광고는 광고면 하단에 선명한 색상으로 표시
 -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가 정함.

☞ 법에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과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에서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태료 징수절차(신설)

-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하도록 함.

☞ 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14)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누락6)

●심사내용

○축산자조금별 유사명칭 사용금지(누락)

- 농림부장관의자조금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아니한 자는 한우자조금,육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개정안에서 육우자조금 추가)

※ 자조금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과 정부의 축산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구성됨. 현재 6개 축산단체별로 한우자조금 등 6개의 자조금이 있음.

☞ 임의단체에서 자조금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축산단체의 의무거출금 조성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누락)

- 축산단체에서 '의무거출금'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자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납부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투표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10일이내에 공표하도록 함.

※ 거출금의 종류

- 임의거출금 :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거출금
- 의무거출금 :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출금

☞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금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단체에서 거출한 금액의 100%이내에서 보조지원을 하므로, 투표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축산업자를 위해 공표하도록 함은 자조금 설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축산단체의 대의원 선출 및 거출금 납부 여부 투표실시 등(누락)

- 축산업자는 자조금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대의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축산단체는 60일이내에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거출금 납부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 결과 거출금 납부여부에 대해 부결된 경우에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도록 함.

☞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함과,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거출금 납부여부 등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축산단체의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공시(누락)

-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축산단체가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자조금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누락)

- 농림부장관은 자조금 관련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축산단체의 거출금액의 100%이내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조금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과태료 부과(누락)

- 과태료(300만원~1000만원이하)
· 자조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한 자
· 대의원 선거 미실시
· 자조금 조달 및 운용사항 미공시 등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15) 농지법시행령개정안(내용심사3)

●심사내용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구체화·명확화 (내용심사)

- 현행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현행)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개정안)
건축물의 경우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 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은 허가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를 줄여준과 동시에 허가신청자의 허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조정(내용심사)

－ 현행농지전용 허가제한사항이 2003. 1. 1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상충되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 500㎡이하의 휴게음식점은 농지전용이 가능토록되어 있으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

－ 농지전용 허가제한 면적기준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상의 ‘관리지역’의 세부용도지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전용 제한규정을 적용

☞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의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행위제한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법률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허가제한 면적기준을 5단계로 단순화하여 완화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함.

○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내용심사)

－ 농지보전부담금(종전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하고, 이 경우 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하며, 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함.

·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50,000원)

※ 개별공시지가의 30% 및 상한금액은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05. 12. 12)

☞ 개정 농지법('05. 7월 공포)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현행 농지조성비 징수수준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 산림청

집필자 : 오 현 사무관 (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산림조합법시행령개정안,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산지관리법개정안,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10개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15건, 내용심사 5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27건)
- 심사대상 27건중 1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은 철회권고하였고,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5년도 총 신설 규제는 7건임.

<산림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중 개정안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5건 철회권고 2건	강화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강화 3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 215차 경제2분과위 (2005. 3. 25)	개선권고 2	강화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6
산지관리법 개정안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 234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2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안	2005. 5. 20 예비심사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05. 8. 25 예비심사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계	-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13 철회권고 3	신설 7 강화 15 내용심사 5 *비중요 27 총 27 건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강화8)

●심사내용

○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확대 등(강화)

-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안경관 및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추가

☞ 경관이 수려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가 주변의 산지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산지에 공익용산지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확대(강화)

-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제한대상은 '명승지·유적지 그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도 산지전용허가제한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회권고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 산림경영시설의 허용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현실화하고, 수도원·기도원을 종교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법령화하는 등 허용행위를 보완

☞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일부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도원·기도원을 명시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유권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개선권고. 행위제한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별도의 행위제한에 관한적용예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선 권고

○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 등(강화)

- 산지전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신청자에게 해당 허가구역의 경계를 페인트로 표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이 발생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벌채된 수목 등을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

☞ 허가구역의 경계침범 및 불법형질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석허가와 같이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을 유도하고 편법·탈법적인 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행위제한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별도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예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선 권고함.

○ 산지전용신고 대상강화(강화)

-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의 신고대상면적을 농림업종사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신고로 가능한 시설에서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을 제외

☞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농림업종사규모별로 산지전용신고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함. 국립수목원완충구역의 보전을 위해 국립수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한시설에 일부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시설은 별도로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도록 부칙에 의제규정을 두도록 개선권고. 또한, 이 영 시행당시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개선 권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감면 등(강화)

-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취급수수료 등을 공제함.
-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660㎡ 미만의 주택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

☞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취급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함. 다만, 허가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공제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농림어업시설 등 양도시 용도변경승인(강화)

- 산지전용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 및 농림어업용 시설을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농림어업용으로 전용된 시설이 비농림어업인에게 탈법적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상위법령(산지관리법)에 먼저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

○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강화)

- 채석경제성평가의 조사기관중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 사무소를 제외
- 소위 '알박기' 등 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장 인근 300미터 안의 가옥 및 공장의 동의를 2/3로 완화하는 대신 대규모 발파 등에 의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채석토록 함.

☞ 응용이학분야는 채석과는 무관하므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함. 알박기 등 탈법사례를 방지하고, 대규모 발파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채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채석장 인근 300미터안의 가옥주 등의 동의를 '전원동의'에서 '2/3 동의'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상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3로 완화하는 것은 채석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이 동의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석장과 거리, 기존 또는 신규 채석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함.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3)

●심사내용

○ 농림업인 입증의 객관성 확보(강화)

- 농업인 입증을 위하여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업인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농림업인의 입증을 객관적으로 하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농림어업인용 주택 · 부대시설을 위해 산림전용시 '농지원부'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인 입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규칙 제7조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써 농림어업인에게 별도의 자료제출의무를 법률에 근거없이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함(산지전용허가 등 인 · 허가과정에서 필요시에 농지원부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산지전용허가 · 채석허가 · 토사채취허가시 제출서류(강화)

- 입목축적조사서는 1년이내 작성된 것으로 하며 산지전용허가신청시 평균 경사도를 새로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시 제출서류를 보완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협회가 확인한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및 골재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입목은 매년 생장하므로 축적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이내에 조사 · 작성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시 시설 설치조건에 대한 판단과정에서의 부패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평균 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함. 골재채취업 등록업무는 지자체의 권한임(골재채취법 제14조)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골재 협회에 등록증 사본을 확인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토사 채취 등 허가서류에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산지전용지 · 채석지 등의 복구(강화)

-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충분한 객토를 하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절개면의 높이, 소단높이 · 폭 등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산지전용인 경우와 채광 · 채석인 경우로 나누어 달리 규정함.

- 채광·채석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단에는 평균깊이 1미터 이상으로써 너비 3미터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함.
-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음

☞ 산지전용지·채석지 등의 복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을 또다시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파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규칙에서 정한 사항중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함.

3)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산림조합중앙회 회원가입 제한 (강화)

- 부실조합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발생
 - 예금 등 채권이나 외부차입금에 대한 상황이 정지상태인 조합
 -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없이 채권지급과 차입금상환이 어려운 조합
- 부실우려조합
 - 재무상태 취약으로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
-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해 재설립된 조합

☞ 산림조합법 제89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실조합 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실우려조합'을 선정함에 있어 주관적 가치판단 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중앙회의 회원가입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 부실우려조합의 선정시 중앙회가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권고

○ 외부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대상조합 범위 (강화)

-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
-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

※ 금감위에서 각 협동조합 건전성 기준으로 순자본비율 2%이상을 요구(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 대상조합 범위(04년기준)

· 전체 144개조합의 51%인 73개조합(평균자산규모이상 59개, 2%미만 14개)

☞ 전년도 회계연도말 회원평균 자산 및 순자본비율은 통상 3월에 파악됨. 따라서 1~2월에는 회계감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간에 긴급하게 회계감사를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자료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함.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신설6)

●심사내용

○ 과태료 부과 (신설)

– 재선충병 방제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로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정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 100만원 : 방제사업을 위한 토지출입요구에 불응, 국가의 방제조치에 비협조
- 200만원 : 소나무류 생산 · 유통자료의 불비치, 감염시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불응
- ☞ 특별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타인토지출입시 고지(신설)

– 재선충병이 발생한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2일전에 연접한 토지소유자에 출입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연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선충병 구제 · 예방을 위해 출입사유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한을 존중함과 아울러 사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신속히 조치해야 할 방제사업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방제명령의 이행(신설)

- 시장 등이 감염목의 소유자 등에 대해 임목의 벌채·파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방제명령 통지시에 방제조치를 7일내에 하도록 함.

☞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초기에 방제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지역여건(방제면적 및 방제수량, 진출·입 용이성 등)과 방제방법(벌채, 훈증, 소각, 파쇄, 소독, 농약주입 등)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방제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방제명령 이행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4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선 권고함.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벌채 또는 굴취 (신설)

- 반출금지구역과 연접하는 지역에서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소나무류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연접지역:반출금지 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구)
- 벌채·굴취되는 소나무류가 감염목이거나 감염우려목일 경우 훈증·파쇄·소각처리

☞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소나무류 벌채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되었을 경우 소각 등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피해지역의 산림관리 (신설)

-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금지거리를 피해지역으로부터 10km이내로 함.
- 감염목 벌채후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 이내 로 함.

☞ 매개충의 연간 이동거리(연간 최대 5km), 벌채 후 남겨진 산물이 매개충의 산란장소로 2년간 이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림 등 금지거리를 피해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산사태 등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 수종으로 조림하는 경우에는 산림법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 (신설)

-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생산·유통자료의 서식을 정함.
- 단속과정에서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비치해야할 관련 서식을 정하고, 재선충병 검사를 위한 시료의 무상수거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단속 대상인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로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개선 권고함.

5) 산지관리법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의 비농림어업인에게 매각시 용도변경의 승인(강화)
 -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로 전용한 자가 비농림어업인에게 일정기간(5년) 안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농림어업용 시설로 전용된 시설이 비농림어업인에게 매각되어 탈법적으로 전원주택 등으로 용도변경되어, 산림훼손 및 부동산투기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농림어업인에게 매각하여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의 매매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도변경의 승인임을 명시할 것과, 용도변경의 승인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함.

-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등 목적의 산지전용시 지목변경 금지(신설)
 - 산지전용을 한 경우로서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등의 경우 지목 변경금지

☞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와 같이 다시 산림으로 복구가 예정되는 일시적인 산지전용의 경우에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 신청을 통해 산림이외로 지목변경후 이를 개발용도로 사용하는 등 산지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2)

●심사내용

< 표준지 개소수 세분화 및 조정 >

구 분		5만㎡	5~10만㎡	10~20만㎡	20만㎡
개소수	현행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
	개정	5개 이상	10개 이상	15개 이상	20개 이상

○ 입목축적 조사방법(강화)

- 전용면적 1만㎡ 미만 : 전수조사 가능
- 표준지(400㎡이상/1개) 면적 비율 : 현행 전용면적의 2%에서 5%로 상향조정
- 표준지 개소수 세분화 및 조정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표준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의 150%이하여야 산지전용 가능

☞ 전용면적이 1만㎡ 이하 소규모인 경우 표준지 조사 외에 전수조사 방법도 할 수 있도록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준지는 전용하려는 산림 전체를 대표할 만한 곳이므로 유사사례의 경우처럼 5%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준지 개소수 세분화 및 조정은 일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언제 3조 제4항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은 법체계상 고시에서는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도록 권고함.

○ 평균경사도 측정방법(내용심사)

- 현행 :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개정 : 평균경사도 측정시 수치지형도 또는 실측방법을 이용.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시 격자는 10m×10m로 설정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이하이어야 산지전용 가능

☞ 산지전용시 검토사항인 평균경사도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산자락 하단부, 산정부 용어 명확화 (내용심사)

- 산지전용은 표고 100분의 50미만이어야 가능하며,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산정부(山頂部)의 높이로 규정되어 있어, 산자락 하단부, 산정부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

※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아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서 그 지역과 연결되는 산지의 최고지점

※ 산정부 : 전용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함.

☞ 산자락하단부 및 산정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허가기관간 해석과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7)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자연휴양림의 시설기준 (내용심사)

- 현행

- 형질변경가능면적(자연휴양림지정면적의 5%이하)
- 건축물연면적(자연휴양림지정면적의 0.5%이하)

- 개정안

- 휴양시설 설치로 형질변경 가능한 산림면적을 10ha이하로, 휴양시설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1ha이하로 함.

☞ 금년 7월부터 주 5일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른 국민의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사실상 확대조정, 완화하고자 하는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8)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특수개발지역의 해제(내용심사)

- 특수개발지역의 해제사유중 ‘공익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방침에 따라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 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내용심사)

- 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사유중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휴양림 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개정

☞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방침에 따라 구체화·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3. 농촌진흥청

집필자 : 오 현 사무관 (Tel.2100-2455, obara@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우량비료인정기준 제정안,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개정안 등 총 2건의 고시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2건)
- 심사대상 2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하고, 1건은 조건부동의하였으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촌진흥청의 2005년도 총 강화규제는 1건임.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우량비료인정기준(고시)제정안	2005. 6. 3 예비심사	철회권고 1	신설 1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고시)개정안	2005. 6. 3 예비심사	조건부동의 1건	강화 1
계	-	철회권고 1 조건부 동의 1	총 2건 *비중요 2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우량비료인정기준(고시) 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우량 비료 지정취소(신설 1)

- 우량비료로 지정된 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량비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 취소 사유 >

- 시비효과 저하
- 토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시
- 지정할 때와 비교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사유 발생시 등

☞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기득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규제에 해당되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법령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동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2)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고시)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강화)

- 기존 고독성 농약외에 국제적으로 위해 우려 문제제기된 아래 농약을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으로 추가(현행224품목→243품목으로 확대)

- 구매자의 주소·성명 및 판매수량을 기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장부를 익년말까지 보존하여야 함.
- 추가 농약(19개 농약) : 로테르담협약대상 농약, 스톡홀름협약 대상농약, 네오아소진(Neoasozin) 농약 등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농약을 확대하는 것은 취급·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문제발생시 추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농약판매업소 등의 판매수량 기록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우선 고시에 규정·시행토록 하되, 시행후 즉시 상위법인 「농약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4. 해양수산부

집필자 : 최승원사무관 (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5년도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안’,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 59개 법령에 대해 신설 65건, 강화 72건, 내용심사 56건 등 총 19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3건중 5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7건은 철회권고, 13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수산부의 2005년도 총 신설 규제는 65건임.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도선법중 개정법률안	제 213차 경제2분과위 (2005. 1. 2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강화 4 *비중요 4
2.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14차 경제2분과위 (2005. 3. 11~3. 14) 서면심사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5. 3. 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단일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기준(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5. 4.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5.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17차 경제2분과위 (2005. 4. 22)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10. 어업허가 및 사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 218차 경제2분과위 (2005. 5. 13)	개선권고 2	강화 2 *비중요 2
11.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예비심사 (2005. 5. 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어획물운반등록 등에 관한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 221차 경제2분과위 (2005. 6. 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비중요 3
14.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 221차 경제2분과위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강화 2, 내용심사 2 *비중요 4
15.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6. 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해운법중 개정법률안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4
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9.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 223차 경제2분과위 (2005. 7. 7)	개선권고 2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0. 도선법중 개정법률안	예비심사 (2005. 7. 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1. 부선의 구조 및 설비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14)	철회권고 1	강화 1 *비중요 1
22.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카훼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5.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5. 9. 15)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26.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7.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5	내용심사 5 *비중요 5
2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5. 9. 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선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0. 선박직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3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 228차 경제2분과위 (2005. 9. 23)	원안의결 3	강화 4 *비중요 4
33.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5.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6.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7.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8. 선박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9.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5. 11. 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40.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4 개선권고 5 철회권고 2	신설1, 강화 3 내용심사 7 *비중요 11
4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 232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8) 제 233차 경제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2.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안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원안의결 26 개선권고 11	강화 22, 신설 10 내용심사 5 *비중요 37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원안의결 19 개선권고 13	신설 32 *비중요 32
44.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6	신설 13, 강화 3 내용심사 5 *비중요 21
45.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 개정안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46. 수로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37차 경제2분과위 (2005. 12. 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6 *비중요 6
47.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48.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9.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6)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50.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 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품질 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16)	개선권고 1	강화 1 *비중요 1
52.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안	제 238차 경제2분과위 (2005. 12. 1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53.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1 개선권고 55 철회권고 7	신설 64 강화 73 내용심사 56 *비중요 193
---	---	-------------------------------	---------------------------------------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선법중 개정법률안(강화4)

● 심사내용

-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도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기시험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포함되도록 변경 (강화)
- ☞ 과거 5년간 사고 분석에 따르면 사고자는 모두 필기시험일 기준 5년 이내 1년이상 승선자로서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대표적인 과도한 진입규제 이므로 철회권고
- 2년 이내에 3회의 견책을 받은 도선사는 업무정지 3개월,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도선사는 면허를 취소 하도록 함. (강화)
- ☞ 도선사로 하여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 선장이 도선사를 승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사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 시켜야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강화)
- ☞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도선구 중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승·하선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선장 및 도선사로 하여금 승·하선 구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 제20조보다는 제25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선권고

- 도선사 승·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가) 승무하지 않았을 경우와, 선박운항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과근거 조항 수정 (강화)

☞ 승·하선구역 준수에 대한 과태료 보고 및 검사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며, 사업장 출입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출입 목적, 출입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도록한 관련 조항 제29조를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신설2, 강화3)

● 심사내용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존층파괴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 화합물 등의 배출 규제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선내 발생 폐기물 소각시에는 승인된 소각기로 소각을 의무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및 기름·유해 액체물질 적하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신설)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73/78)의 기준에 맞게 배출 규제 및 방지 설비 설치로 국제신인도 제고 및 외국항 이용시 출입금지 등 불이익 사전예방을 위해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6에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23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급유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대표샘플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선박급유업자(제2항의 단서의 선박급유업자는 제외한다)는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내에 보관하며 당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당해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대표 샘플을 보관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급유업자 또는 선박을 점검하여 연료유공급서 및 그 사본을 검사하여 공급된 연료와 실제 사용하는 연료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의 품질 확보와 기준에 맞는 연료유 사용으로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를 추가함. (강화)

☞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등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선박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현행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조치명령을 추가함.) (강화)

☞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규제하여 적합한 설비를 갖추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해양오염방지법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및 동 기관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연료유공급서(사본)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샘플을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운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등 대기오염방지 관련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함. (강화)

☞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오염방지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2)

● 심사내용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 (신설)

☞ 제정된 법률의 취지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잔존선가를 지급하면서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인망 어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어선을 정리하고자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불법 어선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신청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정리대상 어선의 계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일미만 50만원, 10일이상~20일 미만 100만원, 20일이상~ 30일미만 200만원, 30일 이상 300만원)를 부과함. (신설)

☞ 정리대상 어선 가액의 중복산정 방지, 정리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항 · 포구에 어선을 계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 단일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기준 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선체 유조선의 계속운항을 판단하는 상태평가검사기준 및 상태평가 검사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함. (내용심사)

☞ 단일 선체 유조선의 상태평가검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서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조선의 안전사고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5)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국제선박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현행 선박법(국적취득), 국제선박 등록법(취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50%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지방교육세, 농특세, 재산세 추가면제) 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국제선박등록으로 국적취득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면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할 것과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 운항할 것을 의무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 신청하도록 함. (강화)

☞ 과거 국제선박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던 것을 1단계로 축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변경시한 설정은 국제선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6)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 주소, 대표자, 선명(船名)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강화)

☞ 과태료 금액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 속하고, 어업면허(유효기간 10년)의 적정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강화3)

●심사내용

- 어촌계의 설립에 있어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 자격이 있는 자 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왔으나 이를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강화)

☞ 어촌계 설립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설립 후 어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 인정되어 원안의결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의 조합장은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신설)

☞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이므로 철회권고

- 개정수협법 제16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직전연도 말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규정. 다만 소규모 조합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함. (강화)

☞ 일선 수협의 업무 중 신용부문 비중이 높고 갈수록 규모화 및 전문화 되어가는 현 회계업무에 대하여 회계전문가가 아닌 조합원의 자체감사로서는 체계적인 통제가 미흡함. 조합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안정적 운영과 경영정상화 강화를 위하여 전 조합에 대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조합의 재정규모, 신용사업 비중 및 타 조합과 비교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300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이사의 자격을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산업관련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향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관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 (강화)

☞ 상임이사제 도입의 법 취지에 맞게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전담 상임이사는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규정 (강화)

☞ 수협법 개정(04.12.31)으로 직선 조합장 중심의 조합운영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합의 자산규모와 도입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용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9)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선박소유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함.

이 기준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검사, 협약적합증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및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대표 샘플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신설)

☞ 협약발효('05. 5. 19) 대비 국적선 보호를 위해 임시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 협약 내용은 법에 수용할 내용이므로 법 개정시간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협약발효를 위한 필수사항이 아닌 수수료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0)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수산업법 개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업의 명칭과 양식물 및 생산종묘의 종류, 시설기준(시설장비 :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방지시설, 월동시설, 기타 부대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함. (강화)

*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환경보전법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시설

* 기타 부대시설·장비 : 관리사, 창고, 기계실, 현미경 등

☞ 시설 및 장비중 수질오염방지시설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줄 필요가 있어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2관련 별표3의2제1호 및 비고, 제50조 관련 별표10의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조치' 로 개정할 것을 개선권고 하고, 또한 같은 부분 중 기타 부대시설·장비는 어업인 스스로 어업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거나 행정관청에서 어업지도(교육)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굳이 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14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9중 1.연근해어업 마.근해안강망어업, 자.연안개량안강망어업, 카.근해자망어업, 타.근해통발어업, 파.연안자망어업, 하.연안통발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부여 (강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필요함. 단, 부대조건 부여는 법률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이므로 부칙에 3년의 규제일몰제 적용하여 존속기간을 두고, 조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개선권고

11)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신설1)

●심사내용

○ 승인받은 신항만건설사업계획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 (신설)

☞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상위 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는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2) 어획물운반등록 등에 관한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폐지신고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내용심사)

☞ 폐지신고를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등록증 반납은 등록폐지된 등록증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체가능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으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강화3)

●심사내용

-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등 불명확한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기준을 삭제토록 하고, 품질관리, 유통중 위생상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생산·출하 과정의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사후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등 산지유명도, 상품의 차별화 요건을 추가함.(강화)

☞ 산지 특산물과 다른 수산물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수산물 중에서 품질심사 후 품질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한 기준이라고 판단됨. 농산물 품질인증의 기준과 유사하여 원안의결

- 유전자 변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추가함.(강화)

☞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에 앞서 있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 향후 동 물품의 교역을 확대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까지 표시토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7조에서도 같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한 검사방법이 미개발 상태, 유해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존속기한 5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자격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검역)시 자격취소(자격정지 3월), 검사기관의 공신력 저해시 자격정지 6월(1월) 등 검사원(검역관)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신설 (강화)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써 검사원(검역관)은 국민의 건강, 소비자의 신뢰 확보, 국가신인도 제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그 품질,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을 검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여야 함. 따라서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검역)를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 법령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만, 검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검사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소속 검사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오가 없는 검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검사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은 철회할 것을 개선권고

14)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강화2, 내용심사2)

●심사내용

- 품질인증 표시항목중 생산연도, 무게(식품위생법에 규정) 등을 삭제하고, 생산자(생산자 단체)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친환경수산물여부 등은 추가토록 함. (강화)

☞ 제조공정 서류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시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제조공정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시항목 중 생산자 명칭과 연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친환경수산물 표시는 어업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점임을 감안할 때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품질인증 유효기간 2년)

-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내용으로 사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 주소(지번),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또는 냉장 · 냉동실 등의 주요시설 등을 규정함. (내용심사)

☞ 소유자, 상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고기준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변경신고만 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요시설의 변경은 품질과 직결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장·냉동실, 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 자숙솥, 압찰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 냉장냉동업의 경우 냉동기'로 개선권고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의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전형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으로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함. (내용심사)

☞ 검사원 및 검역관은 식품의 안전성과 수생질병을 검사·검역하는 자로 국민의 건강과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준은 현행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부령으로 상위입법화 하는 것으로, 실기시험 기준이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나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타당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식용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해물질 검사 실시를 추가토록 함. (강화)

☞ 현재 이식용(수입) 수산물 중 판매용 활어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중금속, 항생물질)를 하고 있으나, 낚시터 방류용 어류 및 양식용 치어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역(질병검사)만 실시. 양식용 치어의 경우 양식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낚시터 방류용 어류는 낚시인들이 식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식용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낚시터 방류용 어류'로 개선권고

15) 선박설비기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선원실 면적 증대, 레이더 반사기 성능기준 보완,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선박에 설치하는 취사용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 설비 기준 및 설치기준 신설 등 선박의 시설기준을 규정 (강화)

- ☞ 선원실 면적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해사협약을 수용하는 것임. 액화석유가스 설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육상설비 외에 선박에 대해서도 규정하려는 것이며, 레이더 반사기 기준 관련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사항을 수용하는 것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형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검사시 검사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접근설비 설치 및 지침을 작성 · 비치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16) 해운법중 개정법률안(강화3,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외국인이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강화)
- ☞ 외국인도 최초 입항 전 국내항에서 준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취항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이 경영하는 여객선도 우리 국민이 이용하므로 여객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공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 ☞ 여객선은 도서주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써 공익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그 휴업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항공법, 철도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현행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 · 제출하도록 한 것을,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추가함. (강화)
- ☞ 운항관리규정은 여객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상위입법화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관련 법률 위반시 면허(또는 등록)의 취소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조문을 일일이 열거 명시함. (내용심사)

☞ 현행 법률에 행정제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현재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옮겨온 것이며,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정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제1항과 안 제38조의 본문의 내용 중 안 제21조 제1항의 본문을 '---一部 또는 全部의 정지(당해 事業者가 保有중인 旅客船의 一部에 대한 港灣에의 入·出港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命하거나 3千萬원이하의 課徴金を 賦課---'를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생략)를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로 개선하고, 안 제38조의 본문 중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로 개선권고

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강화1)

●심사내용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고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 동력보트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레저차원을 넘어서 과도한 유어행위를 제한하여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8)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어도설치협의서에 첨부할 서류에 어도설치계획서, 어도설계도,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를 규정하고, 어도설치 후 15일 이내에 어도설치결과서를 제출(사진첨부) 하고 어도시설 사후관리부를 비치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함. (내용심사)
- ☞ 설치할 어도와 설치한 어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개선권고

19)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강화1, 내용심사2)

●심사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추가함. (내용심사)
- ☞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위입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승선경력 또는 선박운항분야 경력, 안전관리체제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로 개선권고
-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요건에 안전관리대행선박의 소유자를 추가함. (내용심사)

☞ 선박의 신소유자가 선박등록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종 증서를 교부할 때, 안전관리 대행 등록증도 재교부하여 주면 되므로 철회권고

○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확인·진단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 및 안전관리체제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강화)

☞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권고

20) 도선법중 개정법률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도선사의 정년이 65세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것을 정년연장을 폐지(*법률 개정 후 면허 받은 도선사부터 적용)함.(내용심사)

☞ 국무총리 주재 규제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05. 3. 31)으로 도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도선사를 확보하고, 도선사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1)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 기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종전에는 유인부선에 2개의 구명부환 및 최대 탑재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예선에 비치하는 구명뗏목의 규모를 예선과 부선의 최대탑재인원을 합산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명설비의 비치기준을 변경 (강화)

☞ 본 기준은 부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예선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고,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철회를 권고

22)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강선의 선체구조 기준의 창구덮개판 치수산정시 적용되는 하중 상향조정 1~1.75ton/m²→2~3.5ton/m², 창구코밍 부식여유두께 상향조정 5mm→6mm로 규정하고, 창구덮개 구조 산정기준의 목재창구덮개를 지지하는 간이보가 강재인 경우 최대허용 처짐은 스패의 0.0044배, 강재창구덮개의 최대 허용 처짐은 스패의 0.0056배로 규정함. (강화)

☞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약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3)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고시)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대상품목을 현행 137종에서 144종으로 확대 (7종 추가)함.(강화)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제도는 제조업체의 생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IMO 등 국제기구 결의사항 등 이미 채택되어 발효중인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확대, 성능시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4) 카훼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차량갑판과 램프갑판 두께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현행 갑판 두께를 구하기 위한

계산식 규정이 없는 것을, 차량갑판, 램프갑판 두께 산정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카훼리선박의 복원성기준도 현행 24m 미만 카훼리선박의 복원성기준 판정기준 이 없는 것을 24m 미만 카훼리선박의 복원성기준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적용토록 함. (내용심사)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현행 규정은 미비하지만, 1964년 이후 선박검사기관에서는「한국선급 적용지침」을 적용하여 갑판두께를 검사하고 있어, 동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카훼리 선박은 차량을 탑재하여 운항하므로 전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복원성 확인이 필요함.

2001.4월 이후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선박검사기관에서는 개정안의 복원성 기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중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25)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교부신청 및 교부,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소형선박의 기준톤수 변경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변경은 소형선박 톤수를 30톤→25톤하고 톤수 변경시 해기사면허도 변경토록 하며, 25톤 이하는 소형선박조종사, 26~30톤은 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이상으로 변경하고 면허변경 유예기간은 3년으로 규정 (내용심사)

☞ 국제협약(STCW,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승무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라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제 톤수제도 변경에 따라 소형선박의 톤수 조정은 적정하며, 소형선박 톤수 조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변경 등을 위하여 유예기간 3년을 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조직 및 운영계획, 교육시설 현황, 교직원

인적사항 · 자격, 담당과목 · 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정관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선박 및 항만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토록 함 (내용심사)

- ☞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라 한국 국적의 외항선을 타는 외국인 해기사가 알아야 할 국내 법령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절차, 국제협약 및 국내 해기사 자격 취득시 요청되는 수준(법령에 대한 시험)보다 완화된 최소한도의 법령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6)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중 일부개정령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갑판상의 화약류 적재방법에 화재 · 폭발 예방을 위해 6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적재할 것을 추가하고, 화약고 종류를 변경(밀폐형, C형, A형)하고, 설치요건만을 규정, 구조 조건 등을 삭제하여 단순화, 선박내 고압가스의 충전행위를 금지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토록 규정 (내용심사)
-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험화물의 해상 운송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7)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내용심사5)

●심사내용

- 국제협약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외국항 입출국시 소지의무에 따른 선원신분 증명서의 교부, 재교부 및 교부제한 등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 (내용심사)
- ☞ 국제협약(ILO)에 따라 '05. 6. 1일부터 외국항 출 · 입국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므로,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등 체불임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불임금 청구는 파산선고 등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지급은 보험업자 등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함. (내용심사)
- ☞ 육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98. 7)에 임금을 보장받고 있어, 노사정 합의('04. 8)에 따라 선원임금보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세부절차는 적정하게 규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쟁의행위가 금지된 위험물 운송선박의 위험물 종류를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물질, 화약류, 산화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등 총 7종으로 규정 (내용심사)
- ☞ 선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제한하던 쟁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선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규제 법정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 선원 교육과정에 고속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승무원이 교육받도록 함.(내용심사)
- ☞ 국제협약 '고속선 안전에 관한 국제코드(HSC Code)'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 승무원의 교육과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선원건강검진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해양청장에게 신고토록 함.(내용심사)
- ☞ 의료법에 따라 의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AIDS 등 검사를 위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해양청에 신고토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강화1)

●심사내용

- 5톤 미만 어선,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호수 · 하천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무선설비 비치의 의무화 함.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 종사하는 현존 어선은 기 설치 장비 인정하고, 신조어선은 건조시부터, 기존 선박은 2007~2009년까지 단계별 시행 (강화)

☞ 다른 선박간에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충돌사고 등 긴급시 교신이 가능토록 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9) 선원법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함. (내용심사)

☞ 규제개혁기획단의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05. 3)'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며 부과수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0) 선박직원법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켰을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규제개혁기획단의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05. 3)'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수산업법 개정('05. 3. 31)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립예정지내에서 새로운 권리 설정제한 예외대상자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추가(내용심사)

☞ 보상비 증가, 불필요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시행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립예정지내의 권리 설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상종묘어업 또는 구획어업 등 타 허가어업과의 형평성, 기 허가받은 어업의 권익 보호, 매립사업자와 불필요한 보상비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개정(2005. 3. 31)에 따라 허가어업으로 바뀐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권리자에 추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를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인접한 토지를 추가함. (내용심사)

☞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이미 인접토지 소유자까지 권리자로 인정하고 있고 매립으로 인해 인접 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강화4)

●심사내용

- 공유수면매립면허시 제출하던 서류 일부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제출토록 규정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강화)

☞ 매립면허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부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매립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추가(강화)

-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이 매립면허시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추가(강화)
- ☞ 매립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임의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강화)
- ☞ 매립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나, 제출서류를 개정안 '토지이용계획서' 보다는 '변경전·후 토지이용계획서'로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33)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선원법시행령」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내용심사)
- ☞ '05. 3. 31 개정·공포된 선원법 시행을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타법의 유사사례를 볼 때 고시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원활한 예선운영을 위하여 선·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이용자 3인,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 대표 3인, 예선사용자 대표와 예선업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내용심사)

☞ 예선운영협의회에 각 분야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항만이용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도선사를 포함토록 한 것은 현지에서 예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 협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35)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도선운영 중앙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선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및 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포함한 도선이용자대표 3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지방협의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할 도선구의 도선이용자대표 3인이내,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 이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도선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2인이내 등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내용심사)

☞ 항만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여 도선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36)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도선약관의 기재사항중 도선이용자의 특정도선사에 대한 선택·기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강화)

☞ 도선사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선사운영협의회의의 약관중 도선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선사이용의 선택, 기피사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도선구역(별표 제4호),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별표 제5호), 도선구간(별표 제6호) 등을 확대함. (강화)

☞ 부산신항 개장에 따른 도선구역의 확장과, 불합리한 목포항의 도선구간 재조정, 울산항 항로고시 변경에 따른 도선구간을 재조정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37)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국제해사기구에서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담는 용기에 대한 시험기준을 새로이 정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세균등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담는 용기의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2개의 물리적 성상을 갖는 위험물은 성상별로 세분하여 국제연합번호를 부여하며, 대형금속용기에 담아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 (*대형금속용기 사용가능위험물 1,427종에 612종을 추가함) (내용 심사)

☞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이 국제협약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위험화물의 취급 및 해상운송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물 수출입 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내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38) 선박법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선체박에 추진기관(일명 船外機)을 붙인 선박과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중 추진기관을 설치한 범선을 등록대상 선박으로 추가함. (강화)

☞ 소형 레저용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레저용 선박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가입 등 안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형 레저용 선박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소형선박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의 비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법 위반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강화)

☞ 등록대상으로 규정된 소형 레저용 선박의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미 등록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9)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소형낚시어선을 총 톤수 3톤미만으로 규정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과 승객 준수사항은 갑판실 외부에 부착토록 하며, 강풍·태풍·해일·풍랑주의보시, 시계 1km이내 제한시, 기타 해상상황 악화시에는 출항을 제한 (내용심사)

☞ 낚시인구의 급증과 소규모 어선의 안전사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관리하기 위한 지정제도는 소규모 낚시어선의 승객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낚시어선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 미게시 10만원) (내용심사)

☞ 낚시인구의 급증과 소규모 어선의 안전사고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낚시어선 지정에 따른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준수사항 미게시’ 등 위반시에 법 제23조제2항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과태료 부과는 승객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0)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1, 강화3, 내용심사7)

●심사내용

- 특수법인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정관의 제 · 개정' '해산' '회장의 선임'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고, 협회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신설)

☞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 및 어항의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조사 · 연구, 홍보 등 정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한 다면, 정부의 지도 및 관리 · 감독을 위하여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인가 또는 승인,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 제57조에서는 협회의 정관기재 사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시행령안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일부내용은 규제개혁단의 '05년도 준공 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완화대상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므로 정관의 변경 인가, 보고 의무, 시정 요구는 다른 법률과 비교 검토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법률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은 철회할 것을 권고

- 어항개발사업허가 신청의 우선순위(*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2순위 : 수협, 어촌계, 3순위 : 한국어촌어항협회, 4순위 : 민간사업자)와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시 검토사항, 허가신청서식 및 허가절차 등을 규정 (강화)

☞ 어항개발사업을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함. 다만, 안 제24조 제3항의 어항개발사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법의 위임근거가 미흡하고, 민간 참여의 제약이 될 우려가 크므로 삭제를 개선권고

-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항관리규정(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위 입법화 (강화)

☞ 이해관계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34조의 허가기준중 제1호의 허가우선 순위는 법의 근거가 미흡하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를 개선 권고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지행위에 어항구역내 어선수리소(선양장)외의 장소에서 선박의 수리 또는 도색작업 금지,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어구건조, 선박의 무단

계류 등 어촌관광기능 저해행위 금지를 추가함.(*법령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 어항내 금지사항의 신설(어선수리소 이외에서 선박수리 또는 도색작업, 어촌 관광기능 저해 행위)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양수산부의 자체 규제심사시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사항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렵고,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삭제를 요구한 사항으로, 자체 규제심사 결과가 타당하므로 동 조항의 철회를 권고

○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승인이 아닌 신고대상 또는 공고 및 열람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 (내용심사)

☞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수협, 어촌계 등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승인이 아닌 신고토록 함으로써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제2호는 논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시행령안 제10조 제1호의 조문을 '사업의 명칭, 목적, 사업의 개요 등 단순한 사항의 변경'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서식 및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을 정하고, 어촌종합 개발사업 완료시 책임감리대상사업으로써 당해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내용 심사)

☞ 하위법령에 위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위한 서식 및 절차, 철저한 시공감리를 실시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준공확인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수협, 어촌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 어촌종합개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승인기관에 준공전 사용신고 및 허가절차 등을 세부 규정(내용심사)

- ☞ 수협, 어촌계 등이 조성 또는 설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준공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함. 또한 자체 규제심사시 사용신고서의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법 제9조제1항에 위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다른 자에게 양도 · 임대 또는 사용시 승인절차와 사용승인기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건축물 면적의 30% 이하를 목적외로 사용 등)를 규정 (내용심사)
- ☞ 법 제9조에 위임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외 사용 승인절차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승인신청시 처리기간을 7일로 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내용심사)
- ☞ 활용가치가 떨어진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절차를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폐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준공전 사용신고의 경우의 처리기간은 3일임)
- 법 제31조의 규정의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저장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 처분의 제한 등의 사항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등록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내용심사)
- ☞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등록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등록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기간 연장허가의 처리기간은 7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은 3일로 규정 (내용심사)

- ☞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등의 사항은 기존 법령의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만,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 처리기간 현행 7일 → 3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처리기간: 현행 3일→1일)

4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선박투자회사법」개정으로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으로 사업계획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건전한 금융질서에 합치되어야 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주주로 규정 (강화)

- ☞ 선박운용회사는 투자자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금융을 조성하는 선박투자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주주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소수의 주요주주에 의한 경영권독점 및 그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선박운용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소유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운용회사의 사업계획과 주주요건을 관련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운용회사는 설립자본금 중 일정금액(40억원) 이상을 최저순자산액으로 상시 유지하여야 함. (신설)

- ☞ 「선박투자회사법」제34조의 2는 선박운용회사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자본금 중 일부를 최저순자산액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최저 순자산액(순자본)을 40억원으로 규정한 것은 자본금의 위장납입·납입후 출자자에 자본금 대여·

출자자의 자산 매수 등의 투자자본금을 회수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2) 선박안전법 전부 개정안(신설10, 강화22, 내용심사5)

●심사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2톤미만 선박 등에 대하여도 감항성 및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함.(강화)

☞ 2톤미만 선박 등과 13인 이상 이용하는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대하여도 안전검사를 추가하여 해상에서의 선박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정기검사시 일정기준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선체두께를 계측하도록 함.(*강화 플라스틱선을 제외한 선령 10년이상 선박) (강화)

☞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검사준비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선저구조부재에 대한 계측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유조선, 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은 선체구조 부재의 두께확인 선박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함. (강화)

☞ SOLAS 협약에 의한 강화된 검사(ESP)를 수용하여 타 선박에 비하여 선체의 피로도가 심하여 쉽게 선체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산적화물선과 사고시 대형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 선박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부선등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예항검사를 받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예항검사에 합격한 예선에 대하여는 예항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항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토록 함.(강화)

☞ 부선 등 구조물의 예향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검사에 대해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임 범위를 정하지 않고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대형 해양사고 및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시 출항정지된 국적선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특별검사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특별점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받도록 함. (강화)

☞ 선박건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건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하여야 하며, 건조검사를 할 수 없는 도입선박에 대하여도 건조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도록 함. (강화)

☞ 선박건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건조를 미연에 방지하며, 도입선박의 검사미필에 따른 운항중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강화)

☞ 해당 선박이 지켜야 될 항해 조건을 준수하며 운항하게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항해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사업장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함.(강화)

☞ 우수사업장의 취소 후 일정기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수사업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제조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품질 확보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취소 후 우수 사업장으로 재지정 될 수 없는 기간 2년은 과도하므로 1년으로 단축
 할 것과 민원인에게 적용되는 우수사업장 지정기준을 고시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지도감독 강제의무를 필요시 하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도록 함. (내용심사)

☞ 형식승인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1항의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으로 수정하여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에 관한 요건을 정함. (강화)

☞ 형식승인시험 능력이 부족한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안전성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구조적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내용심사)

☞ 컨테이너의 구조변경시 새로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변경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컨테이너소유자는 컨테이너의 상태와 안전승인판의 표시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수점검기준에 따라 보수점검을 하고 그
 점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내용심사)

- ☞ 컨테이너의 수송 및 취급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정점검 법인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강제의무를 필요시 하도록 개선권고
- 누구든지 안전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 하거나 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파손·균열 등으로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강화)
- ☞ 컨테이너의 수송 및 취급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현행 만재할수선 표시 대상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로 만재할수선 기준을 정하도록 함. (*현행 24m이상 선박→12m이상 선박, 12m이상 여객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박→여객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박) (강화)
- ☞ 전복 등 해양사고가 24미터미만 선박의 과적이 원인이 되고 있어 이들 선박의 과적을 방지하여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대상선박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의 항해상 위험 방지를 위하여 복원성 유지에 관한 기준 및 대상선박 범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복원성기준을 정하도록 함. (*현행 24m이상의 연해주역 항행 선박→12m이상 선박) (강화)
- ☞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한 선박의 복원성기준 및 대상선박의 범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에 구명신호서 등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토록 함. (강화)
- ☞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해도, 항해지침서, 등대리스트, 항로고시, 조석표 등의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토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전에 관련된 비치하여야 할 항행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비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도록 개선권고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항해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고, 선교와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간에 통신장치를 설치토록 함. (강화)

☞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선교의 시야확보 및 선교와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간의 의사소통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를 갖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강화)

☞ 선박에서 적·양하에 사용되는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한하중 등을 규정하여 하역작업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상위 입법화 하는 것으로써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역설비기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하고,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관한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함. (내용심사)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상위 입법화하는 것으로써 하역장구의 안전성 확보로 화물의 하역작업시 인명의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운송중 선박 또는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는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토록 함.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 운송시 가스 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함. 또한, 선장은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 (강화)

☞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운송중 화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사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살충제사용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화물 및 화물단위체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포장·저장 또는 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확인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고 운항토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적재 및 고박을 하도록 함. (강화)

☞ 현행 해양수산부령(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제277호)에서 규정된 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 및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 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해양수산부령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 (강화)

☞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하고, 산적화물의 운송중 화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유, 윤활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강화)

☞ 국제협약(SOLAS)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기관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이 법(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7인으로 하고 공개선임절차에 의하며,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함. 임·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신설)

- ☞ 정관 변경시의 승인, 전문직종의 유능한 인재의 임원 임명,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 등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겸직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상위입법화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과 협정을 맺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협정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공단 및 선급법인의 요건 및 자체규정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한, 선급법인규칙이 이 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신설)
- ☞ 국제해사기구(IMO)의 정부대행검사기관(RO)에 대한 관련규정을 수용하고, 정부대행검사기관에 의한 선박검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체의 두께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계측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두께계측업체에서 계측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지정 ·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설)
- ☞ 선체의 두께계측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선박두께의 확인이 선박안전 등에 중요하므로 지정 및 취소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 검정 및 안전승인판에 검사증인 표시에 관한 업무를 고시로 지정하는 검정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설)
-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 컨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위험물의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고시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설)

☞ 위험물의 검사 또는 승인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정위반 등의 사유시 업무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현행 선급법인의 취소규정에 추가하여 공단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여 검사등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또는 업무 취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실한 업무 미이행 등의 경우 자의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업무대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국가는 대행검사기관이 정부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검사대행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책임범위, 국가의 구상권 등을 규정하여,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 대행검사기관, 우수사업장 및 각종 형식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에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필요 장소에 출입하여 선박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내용심사)

☞ 현행 규정에 형식승인시험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일부 기관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으로 부적합선박 또는 시설 등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항만국통제(PSC)는 국제협약(SOLAS)을 수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수리 등의 시정조치, 구조 및 설비 등의 현저한 결함시에는 출항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신설)

☞ 국제적인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해양사고에 의한 선박과 선원의 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규정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항만국통제시 사용되는 국제협약은 대통령령으로, 기준미달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가 아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선박의 감항성, 거주설비 등 안전설비의 결함발견시 결함사항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함선박의 출항정지 및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신설)

☞ 한국원양어업협회 등의 의견처럼 거주설비, 위생설비는 고의신고 남발이 우려되므로 향후 제도운영 후 필요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1단계에서는 감항성, 안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신고할 것을 개선권고

-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자격은 선박검사관(제71조)의 자격을 준용토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법령 등의 위반시에는 해당 기관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강화)

☞ 현행 해양수산부령「선박검사원 자격등에 관한 규칙」(제207호)을 이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검사의 신뢰성 및 안정성과 검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신설되는 조문에 따른 수수료 납부항목을 추가하고, 대행검사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신설)

☞ 현재도 이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행기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 총 26호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확대함. (강화)

☞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32)

●심사내용

○ 용수업자의 용수업 면허의 부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수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심층수·심층수관련제품 등의 무상수거 및 검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 열람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함.(신설)

☞ 심층수관련영업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심층수 관련영업 시설 등에 출입하여 심층수관련 시설 및 제품을 조사하는 것은 심층수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용수업 면허의 부관'이 법 제14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자의적인 부관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별 취수해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취수가 가능한 최대용량과 시·군·자치구의 장의 신청에 의해 취수해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용수업 면허사항과 그 용수구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함. 시·군·자치구의 장이 취수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해역과 관련된 권리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첨부 필요(신설)

☞ 용수업 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료(심층수)'의 확보가 중요하나 정부가 매년 고시를 통해서 취수 최대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부가 허가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12조는 필요시에만 취수가 가능한 최대용량을 고시토록 개선권고.

또한 제13조의 '취수해역의 지정 및 고시'는 현재 시·군·구의 신청만으로 되어 있으나, 심층수 관련 사업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취수해역의 지정시 해저광물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상충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관계부처 협의가 아닌 제8조의 '심층수정책심의회'에서 검토할 예정인 바, 제8조의 '심층수정책심의회'에 '심층수기본계획 및 연차계획, '취수해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심층수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용수업 면허 부여 이전 취수해역별로 용수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용수업자의 취수상한 설정, 용수업자 선정의 세부심사 기준, 취수상한 설정 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한정자산자, 금지자산자 등에 대해서는 용수업 면허를 제한하고, 용수업의 유효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매 5년마다 연장 가능), 용수업의 양수인, 상속인 등은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신설)

☞ 심층수 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기초하여 국유재산 사용권의 영속화 방지를 위한 용수업의 면허제도 도입, 20년간의 면허기간 및 5년의 연장기간 설정, 용수업 양도시 보고의무 규정 등은 용수업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다만, 제14조제5항 용수업면허시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심사기준, 취수상한 설정기준은 용수업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아울러 제15조제4호 용수업 면허시 고려사항은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삭제를 개선권고

- 용수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 가능. 확인을 받은 후 용수업 개시 가능 (신설)

☞ 용수업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규모, 장치 등이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안 제17조제2항 규정의

인가신청에 따른 행정기관의 확인 비용을 용수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유사입법(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편의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동 법안 제4항의 표현이 모호한 ‘인가’ 등은 ‘인가절차 및 인가시 검토기준’으로 개선권고

- 용수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수업 면허 혹은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용수업 면허의 부관 미이행, 심층수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때 등에는 용수업 면허 취소 등 가능토록 하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신설)

☞ 용수업자에게 용수료의 납입, 면허설정에 따른 관련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심층수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심층수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동 법안 제15조(용수업 면허 및 용수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 기준)에 부관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부관의 이행준수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제19조제1항제5호의 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미달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심층수 수질이 사업자의 의지가 아닌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수해역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을 전개한 용수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취수량을 기준으로 용수업자에 대한 용수료를 부과·징수 (신설)

☞ 물에 대한 사용대가는 타 법령에서도 지하수, 하천, 공유수면 등을 불문하고 징수하고 있고, 재화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용수업자에 대한 용수료 부과는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먹는심층수제조업자, 먹는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을 먹는심층수 평균판매가격의 1000분의 75를, 기타 상업목적으로 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층수 평균공급 가격의 100분의 15를 부과·징수토록 하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부토록 함.(신설)

☞ 먹는심층수 제조업자, 먹는심층수수입업자, 기타 심층수를 상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들은 심층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 과 '수돗물우선정책' 에 부합되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심층수의 기준을 고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심층수의 원산지와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설정 가능 (신설)

☞ 심층수에 대한 기준 설정은 심층수 용수업 등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용이, 유사제품의 차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4조 정의에서처럼 '바닷속 깊은 깨끗한 자연상태의 물' 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심층수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심층수 수질기준 설정은 과학적인 연구 · 조사를 선행하여 수질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되, 수질기준 설정시에도 사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지므로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용수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 및 급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신설)

☞ 심층수의 취수 및 급수시설의 기준 설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심층수의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심층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수업자는 당해 용수구역의 심층수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 검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심층수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신설)

☞ 심층수는 먹는심층수와 의약품 · 식품 등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층수 수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정시험방법 고시, 심층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 운영 등은 국민의 심층수 관련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용수업자·심층수관련 제품업자는 심층수 등의 검사결과를 관련제품에 표시 가능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심층수의 원산지,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음 (신설)

☞ 소비자로 하여금 심층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제품 선택을 촉진케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법 안 제24조 제2항과 제28조는 상호 중복, 상충될 수 있는 바, 법령 내용을 재검토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든지, 조문을 통합할 것을 개선권고

- 먹는심층수의 성분, 제조방법, 보존방법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고시 가능. 다만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심층수의 판매 등 금지 (신설)

☞ 먹는심층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먹는심층수의 명확한 기준과 규격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바 이 건 규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법안 제1항의 '제조방법, 보존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아울러 먹는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지라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고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먹는심층수 제조업자는 먹는심층수에 대한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신설)

☞ 먹는심층수의 제조 및 취급과정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동 법안 제3항에 규정된 '품질관리 검사결과 제출의무'의 경우 벌칙(제61조)에 제출의무 관련사항이 없고, 법 제10조에 규정된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도점검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제4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먹는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제2항의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방법에 따를 경우 별도로 먹는심층수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할 추가적인 실익은 없으므로 먹는물관리법을 따르도록 개선권고

- 먹는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먹는 심층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신설)

☞ 먹는심층수의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두고 품질관리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 위해의 방지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먹는심층수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조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신설)

☞ 먹는심층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먹는심층수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건강진단의 경우 먹는심층수 제조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무요원, 운전원 등 먹는심층수의 직접적인 제조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제하고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 등 직접 심층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 먹는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신설)

☞ 먹는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제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보아 원안의결. 다만,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 이법 시행 이전에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을 고려하여 먹는 심층수의 안전성확보 및 지도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할 것을 추가함.

○ 먹는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먹는심층수 제조허가를 제한함.(신설)

☞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만 먹는심층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먹는심층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먹는심층수의 수질 혹은 먹는심층수 생산시설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심층수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제31조 제1항, 제2항(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 제32조 제1항 위반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영업정지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신설)

☞ 먹는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먹는심층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1항 제4호의 법 제31조 제2항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 사항은 허가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법안 제61조에 처벌조항(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이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제32조 제1항은 건강진단 이행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인용조항을 제32조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먹는심층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이 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이나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종전의 먹는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으며, 먹는심층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신설)

☞ 전 영업자와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속 영업자와 일정 원인에 의해서 전

영업자의 영업시설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전 영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먹는심층수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하며, 먹는심층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된 먹는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이 법을 어기어 징역의 실행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수입업 등록을 제한함.(신설)

☞ 먹는심층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의무, 등록제한, 심층수 검사 등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먹는심층수 수입업의 등록, 수입시 신고조항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먹는심층수 수입업자가 먹는심층수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로 개선 권고

- 수입 먹는심층수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심층수수입업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 · 도지사가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 취소 가능. 영업정지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함. (신설)

☞ 먹는심층수수입 · 판매업에 대한 등록 취소는 먹는심층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심층수수입 ·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먹는심층수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이 먹는심층수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이나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이 경우 종전의 먹는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으며, 먹는심층수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신설)

☞ 전영업자와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속영업자와 일정 원인에 의해서 전영업자의 영업시설을 확보한 자에 대해서 전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허가에 따른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심층수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등에 대해 필요한 기준 설정 가능 (신설)

☞ 일정한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 등으로 먹는심층수 판매·소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다만, 법안 제28조의 검사결과와 표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법령조문 명확화 필요

○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심층수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은 먹는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으며, 먹는심층수 제조업자가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먹는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설)

☞ 먹는심층수에 대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고 수입국 기준에 적합한 먹는심층수를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이므로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의 조사,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해양환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신설)

- ☞ 심층수의 수질, 주변지형, 해양환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심층수 취수 해역의 선정, 용수업 면허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시 발생하는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동 규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심층수관련영업자는 취수장치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관련영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신설)
- ☞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선 해양에 대한 사전 위해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보전노력이 필요한 바, 국가 및 심층수 이용자 등에게 해양환경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층수의 생산시설과 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음.(신설)
- ☞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제51조(시정명령)을 제51조(취수중단명령)으로, 제62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벌칙규정으로 개선권고
- 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또는 지하염수 내지 지하해수 등의 심층수로의 판매금지 (신설)
- ☞ 심층수 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소비자가 가짜 심층수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공익상 필요한 경우 먹는심층수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 가능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지 또는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가능함. (신설)
- ☞ 먹는 샘물과의 형평성, 정부의 수돗물 우선정책 등을 고려하여 광고금지 및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용수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장

폐쇄 가능, 시·도지사는 먹는심층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장 폐쇄 가능 (신설)

☞ 법규 위반이 지속될 때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시 까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공익 보호를 위해 행정청이 영업장 등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여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신설)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되어 합당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용수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해 영업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납부하여야 할 용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가능.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 위반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신설)

☞ 용수업 면허를 받지 않고 심층수를 취수한 자 또는 영업정지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및 심층수관련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원안의결

44)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신설13, 강화3, 내용심사5)

●심사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정도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여 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허위 등 부적합한 방법으로 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 (신설)

☞ 표준화된 실험절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국가 해양환경자료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정유 · 저유 · 폐유저장시설, 유조부선, 유해액체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계류 시설 등의 해양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역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함. (신설)

☞ 현행 해양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포함하여 타 법령에 의거 등록 · 신고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어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제25조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할 것을 개선권고(*이법 시행 후 기존시설은 6개월(또는 1년)이내에 신고토록 경과규정을 둘 것, 아울러 개정안 제112조제4호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규정은 과태료 규정으로 대폭 하향조정)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방오도로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여야 함. (신설)

☞ 선박에서의 유해 방오도로 사용규제를 위한 IMO 협약 이행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라 등 복족류의 임포섹스(Imposex : 암컷의 수컷화)를 유발하는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많은 피해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TBT; Tri-Butyl-Tin)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또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유해 방오시스템 검사, 국제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역이용중점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설)

☞ 안 제69조에 해역이용협의시 ‘해역이용중점검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해역 이용협의제도와 해역이용중점검토제도의 중복을 피하려 했으나 사업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해역이용 중점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해역이용중점검토 대상사업자는 착공후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함.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및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조치를 함.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 해양수산부 및 승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신설)

☞ 중점검토대상사업 착공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나, 승인기관이 해양환경영향 조사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사항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로 법 7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가 하는 것은 승인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3개월 이상 공사중지시의 사업자의 통보조항은 해양에서는 육지와 달리 폭풍, 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공사 중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통보를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사업자는 해역이용 중점검토서의 등록 작성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작성대행자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의 대여, 일괄 하도급을 금지토록 함.(신설)

☞ 과학적·객관적인 중점검토서의 작성을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작성대행자로 등록하는 등록제로, 작성대행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은 해역이용중점검토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 미이행 등의 경우 사업승인기관에 사업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사업자 및 승인기관은 응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및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서 또는 중점검토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한정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단지지정자는 지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환경영향변화 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설)

☞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역이용협의절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제75조제1항에 해역이용협의 등을 하지 않거나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승인기관장의 문제로 직접적인 조치명령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제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입 조사·확인 등 상기와 같은 사유로 승인기관의 장만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제4항은 협의내용 통보후 사업 미착공, 사업시행이 부적합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중점검토 포함)의 재협의 절차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승인기관과의 관계임에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해역이용협의를 완료되었음에도 승인기관의 사정으로 승인이 늦어져서 사업착공이 안된 경우에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제4항 재협의 조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신설)

☞ 특수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기 협회에서 확보한 자산을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침해, 공단 운영 참여의 어려움, 방제분담금의 의무부과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 침해 등의 사유를 들며 첫째, 분담금 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하도록 한정하고, 둘째, 분담금 납부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셋째,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 운영 참여 보장을 요구하나,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양 관리공단 설립은 타당하며, 따라서 안 제82조 해양관리공단의 정관의 인가는 필요한 절차이므로 원안의결

○ 해양관리공단의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함. (신설)

☞ 국가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단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임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임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규정은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여 다른공단법에도 규정하지 않은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은 삭제하고,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에서 5년의 기간도 다른 공단법에서 적용한 기간과 같이 2년 정도로 개선권고

○ 해양관리공단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신설)

☞ 국가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단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인하고, 사전에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리공단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단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신설)

☞ 정부의 출자, 출연 또는 국고 보조 및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공단의 지도·감독은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검인·검사·형식승인·성능시험 또는 검·인정 및 인증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재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 등의 배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신설)

☞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약제등의 검인·검사·형식승인·성능시험 또는 검·인정 및 인증표시에 대한 수수료 징수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의결

- 해양관리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함. (신설)

☞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 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사익(私益)을 위하여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요 국가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선박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당해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강화)

☞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2000년 6월 1일 수락하였고, 2003년 1월 1일에 이미 국제적으로 발효하였는바, 관련 규정의 국내법 근거 마련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해양환경관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오염물질의 배출 · 방제 · 수거 · 준설 등의 처리실적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함. (강화)

☞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사업 수행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처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강화)

☞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시 지정 검사대행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 위해성을 증명토록 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현행 해양경찰서의 성분 검사실시로 검사기간 과다소요 및 검사기관 독점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위탁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처리 신고한 것에 한하도록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제한 (내용심사)

☞ 폐기물의 불법 해양배출 또는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해양폐기물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준설업을 신설하고, 해양관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내용심사)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에 대해 등록기준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업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다만,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등과의 등록기준 등이 상이하여 법마다 중복적으로 수집·운반 차량을 확보하고 등록하는 불편함이 있는 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하위법령 제정시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해양관리공단에서 분담금을 징수하여 방제선 배치 등 방제사업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며, 공단에서 관리하는 분담금의 사용용도는 방제사업에 한정하도록 함. (내용심사)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제출한 방제선 배치의무자가 납부한 분담금은 방제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하므로, 주로 방제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제79조 제1항 제4호중' 해양환경 및 '을 삭제하고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홍보'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해양폐기물수거업, 퇴적오염물질 준설업)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장, 해수욕장, 하구역,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를 검사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배출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 사업장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심사)

☞ 해수욕장, 양식장 등의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조문신설에 따라 현행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천만원, 5백만원, 1백만원 이하로 3단계로 세분화하고, 해역이용협의 강화 관련 신설조문의 과태료는「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여 형평성 유지하고, 기타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서 누락된 과태료를 신설함.(내용심사)

☞ 현행 법률에서 근거가 미약하거나 누락된 규정 및 신설된 규정은 형평성에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5)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남북항로에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 제1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운항기간은 정기선은 1년, 부정기선은 6월의 범위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함. (내용심사)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항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 하면서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 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임. 다만, 부정기 화물운송 사업의 한국해운조합 추천(제4조)문제는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나, 남북간 해운의 특수성(북측의 일방적 선사 지정으로 인한 마찰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46) 수로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6)

●심사내용

○ 일반수로조사 신고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현장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를 하게하며, 현장지도에 소요되는 비요은 수로조사 신고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며, 공사의 종류별로 수로조사 실시 항목을 명시토록 함.(내용심사)

☞ 일반수로조사의 면제범위 설정, 수로조사성과 심사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동의. 다만, 일반수로조사의 기술지도시 현장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수로조사 신고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시행규칙안 제5조 ③④항)은 ‘기술지도’는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며, 법에 비용부담 근거가 없는 점, 최종 성과심사시 수수료를 일반수로 조사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수로조사 신고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일반수로조사이시 공사종류별 조사항목과 관련한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시행규칙 안 제6조)은 일반수로조사 업무의 운영을 위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의결 하나, 법상 위임근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법 개정시 일반수로조사 항목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삽입할 것을 개선권고

○ 수로조사표 이전신청은 14일전에 시행하고, 신청인은 수로조사표 이전경비를 납부해야 함. 이전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조사표 이전여부를 결정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협회에 통보해야 함. (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수로조사표의 이전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시행규칙안 제8조 제2항의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수로조사표 이전여부 결정권한’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미약하여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후 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것을 부대 권고

○ 수로도서지 판매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는 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시로 규정했던 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대행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세분화 함. (내용심사)

☞ 해양수산부 고시의 상위법령 규정과,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 받기 위한 구체적 신청절차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의 업종과 등록기준을 수로조사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으로 업종 세분화하고 업종별 등록기준으로 장비와 기술인력을 규정함. (내용심사)

☞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일반수로조사의 실시로 수로사업량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수로사업 등록업체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종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의 수정은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수로사업자의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3월, 6월 및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내용심사)

☞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양정을 달리함으로써 수로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수로업무법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규정 (내용심사)

☞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과태료 부과 금액의 차등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7)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고시)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방법 및 기준(고시)중 설계기준의 풍속상향은 작업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에서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 초당 20미터 이상으로, 휴지상태(태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상에서 20미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은 서해안 : 초당 55미터 이상, 동해안 · 남해안 : 초당 60미터 이상, 목포 : 초당 70미터 이상, 울릉도 : 초당 75미터 이상으로 하며, 브레이크장치 검사항목은 태풍이나 돌풍을 대비하여 '주행장치에는 레일크램프 또는 휠브레이크 등을 설치하여 주행브레이크와 동시 작동되어야 하며, 최대순간 풍속 35미터의 바람에도 크레인이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검사항목 추가신설하고, 조명장치의 커버 및 패키징의 물성변화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수형이어야 하며, 커버 및 패키징은 온도의 변화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로 조문 보완토록 하고,

후지풍하중계수를 기상이변 등을 대비하여 시설장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후지풍 하중(후지시)계수 '1.3'을 '1.5'로 상향조정하고, 후지시 지진하중계수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제한적으로 내진설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진수평하중은 수직정하중의 20퍼센트를 적용'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함. (내용심사)

- ☞ 항만시설장비에 설치된 각종 감지장치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설계풍속, 브레이크장치, 후지시 풍하중 및 지진계수 등은 시설장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적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8)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항만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설치신고 한 내용 중 상호 및 설치위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해야 함.(강화)
- ☞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당초 설치신고 한 내용중 변경사항을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항만시설장비의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장비 중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복구방안(대책) 등을 강구하여 관리청에 보고해야 하며,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 장비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함. (강화)
- ☞ 시설장비검사기간을 명확히 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시설장비관리자 스스로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복구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청에 보고토록하고, 장비사용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에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9)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고시)개정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이식용수산물의 잉어헤르페스 바이러스병 등 3종의 질병 추가 및 총 27종의 질병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질병기준 수준으로 검역기준을 변경하고, 낚시터 방류 이식용수산물의 식용이용이 점차 증가에 따른 식용활어와 동등한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검사항목 및 기준을 신설함.(내용심사)

☞ 낚시터 방류 이식용수산물의 식용이용 증가와 국제수역사무국의 새로운 지정질병 지정 등에 따른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기준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국제기준 수준으로 변경하여 이식용수산물에 의한 국내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낚시터방류 이식용수산물의 위해물질 검사기준중 '식용활어에 적용하는 해당 위해물질기준'은 추가로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용활어에 적용하는 해당 위해물질기준'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50)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건제품은 10개에서 13개로, 횡감용 수산물중 신선·냉장품은 10개, 냉동품은 7개로, 냉동수산물은 19개로, 조미 가공품은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품목별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을 설정함. (강화)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대상품목 확대와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성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식품공전 등을 토대로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5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수산물거래 위반자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 및 해기사 면허취소 (강화)

☞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 보고와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교환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어로 방지 등을 통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법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소관련 별표Ⅱ 개별기준 1. 라목 8,9호 의 3차 위반시 어업면허 또는 해기사면허 취소는 향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을 신설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선권고

52) 내항해운의 면허등 관리요령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따른 수송수요판단 산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안여객선 고객만족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부진향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공고,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응모시 가점 등의 기회부여 (내용심사)

☞ 선사의 서비스경쟁력 강화와 여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평가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만, 수송수요 판단 산정에 필요한 서비스 평가제도가 해운법에 근거가 없이 고시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고시안을 유지토록 개정안을 철회권고

○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과 예약예매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함. (강화)

☞ 연안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하여 여객선 이용자 편의제고, '06년부터 도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지원 예정에 따라 투명한 예산지원을 위해 전산매표시스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제도의 도입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증선, 대체, 감선 등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의 경우 1년 이상의 계획과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토록 함. (강화)

☞ 빈번한 사업계획변경신고로 인해 여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해운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성수기 증선 이후 여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에 대비, 감선할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동 규제는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흡하므로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53)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기준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범선의 선수격벽의 설치는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제221조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방화구조 및 방화조치에 대하여는 선박방화구조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 (내용심사)

☞ 선박 충돌시 침수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수격벽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나 범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울러 선박화재에 대비한 규정도 범선의 경우에는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5. 해양경찰청

*집필자 최승원사무관(02-2100-2454, ch5809@opc.go.kr)

(1) 2005년 신설·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5년도에는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8건, 강화 8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17건)

- 심사대상 17건중 1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경찰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8건임.

< 해양경찰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 229차 경제2분과위 (2005. 9.3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32차 경제2분과위 (2005. 10. 2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1	신설 7, 강화 7 내용심사 1 *비중요 15
계	-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2	신설 8 강화 8 내용심사 1 *비중요 17

(2) 2005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함. 구조계획서 내용변경시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경찰로 하여금 유효성을 확인토록 함. 선박소유자는 연 1회이상 여객선 비상수색구조 통신훈련을 하여야 함. (신설)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승인, 비치, 변경신고의 경우, 수난구호법에는 여객선소유자에게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의무만을 부여하였지 승인받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하위 규정에서는 작성서식에 따라 기재·비치하고 해경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구조 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신고 등은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고시 해양경찰청의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비치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가 구조계획서를 작성, 해양 경찰청에 신고하고, 해양경찰청은 이를

확인토록 하며, 향후 수난구호법 개정시 (변경)신고조항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조건으로 개선권고,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유효성확인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유효성확인에 따른 조치규정이 미흡하므로 향후 법 개정시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만,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여부의 확인 · 점검의 필요성과 담당자의 재량 행위 최소화를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의 여객선 비상수색 구조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선박소유자에게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신훈련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현행 고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법 개정을 조건으로 동의 하고,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법 제5조의 2에 규정하도록 한 바, 동 조항을 별지서식에도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강화)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 비치의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7, 강화7, 내용심사1)

◎심사내용

-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기준 및 교육 과정을 규정하고, 조종면허갱신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함. (내용심사)

☞ 운전면허증 전면에 적성검사 도래기간을 표시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불이행을 예방하고 있는 바, 별지 9호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증에도 갱신기간을 표시하여 면허갱신 불이행을 사전예방토록하고, 면허증 발급은 14일로 단축 개선되었으나, 재(갱신)교부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가능하므로 개정안 14일에서 3~7일 이내로 처리기간 단축을 개선권고

○ 수상안전교육 및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신설)

☞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요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기간이 없는 바, 별지 제6호 서식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업무처리기간(14일 이내)을 명기할 것과, 지정취소시 취소통지서 교부후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반납하도록 별지 제8호 서식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8조 조문에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반납기간도 명시(14일 이내)할 것을 개선권고

○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정지 1~6월(1~3차) 및 지정취소(4차), 면허시험 대행업무가 미흡할 때에는 경고(1차), 3월(2차), 6월(3차), 취소(4차)토록 하며, 취소·정지 절차는 개선·보완명령(영 제12조)→미이행시 대행기관 지정취소·정지통지서 통지→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대행기관지정서 반납으로 규정함. (강화)

☞ 취소·정지절차에서 대행기관지정서 반납을 별지 제19호서식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취소·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13조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며 대행기관지정서의 반납은 대행기관 지정취소의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반납기간을 명시(14일 이내)할 것을 개선권고

○ 수상레저활동시 지시가 없는 한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 레프팅시에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를 위한 안전장비를 추가함. (강화)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무면허 조종금지 예외규정의 동승자 자격을 1급 조종면허취득자로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조종이 아닌 경우로 함. (강화)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동승자가 안전운행자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 또는 약물복용인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의 예외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기존 8가지 운항장비외에 위성항법장치(GPS), 구명동의 등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구비해야 함. (강화)

☞ 야간운항장비에 위성항법장치(GPS), 구명동의 등 비치의무는 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정기준은 안전검사대상 레저기구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정원, 그 외 기타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하며, 해난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탑재한 경우에는 정원초과 금지의 예외를 적용함. (신설)

☞ 법에 정원초과 금지규정 신설에 따른 정원초과의 대상 및 산출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무리한 과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검사시 책정된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레저기구는 해양청장이 고시하는 것은 적정하나 좌석수, 기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개선권고

- 모터보트(20마력이상, 선내기제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30마력이상) 등의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기구신청서(양도증명서, 이해관계자등 3자의 동의서, 안전검사증 사본 첨부)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5일 이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소유권(공유의 경우 그 지분), 소유자 이름 및 법인 명칭, 주소변경시,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변경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때 등 변경등록 대상은 사유발생 2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등록말소는 즉시처리) (신설)

☞ 수상레저에 주로 이용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의 관리 및 재산권 보호 등 등록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등록대상을 초기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이 5일이내,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1~3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금액(사망시 최고 1억원) 이상으로 정함.(신설)

- ☞ 보험(공제)의 가입금액을 자동차손해보험 이상으로 할 경우 최초 보험에 가입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가입금액 한도를 자동차손해보험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30일내 하여야 함. (강화)

- ☞ 법 제37조에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다만, 사업자 및 개인이 안전검사를 신청시 안전검사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별지 제29호, 제30호 서식에 안전검사처리기간(14일 이내)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에 안전검사원 5인 이상 요건에 우수사업장·형식승인 지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추가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법에 시·도에서 대행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도에도 지정 신청토록 하며,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보고사항 및 절차, 검사원 수, 시설·장비 기준, 점검, 관리감독 사항은 해경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정지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정지절차를 준용하고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정지통지서' 통보후 지정서를 반납토록 함. (강화)

- ☞ 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 등은 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취소·정지 절차에서 대행기관 지정서 반납을 별지 제34호서식 「안전검사 대행기관 취소·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30조제3항 단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행기관 지정서의 반납은 대행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만 한정하며 반납기간을 명시(14일 이내)할 것을 개선권고

○ 법 제45조에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이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 인명구조장비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안전점검 결과 원상복구,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신설)

☞ 등록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게 되나, 안전검사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의 레저활동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비 · 원상복구 절차와 관련 정비 ·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레저 사업자가 이행계획서 제출시 처분관청이 발부한 명령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바, 동 명령서는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명령서 첨부 조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 정지표지를 부착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별지 제43호 서식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표지 주의사항3)한 바, 사용정지표지 부착의무, 미이행시 처벌 규정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에 규칙 제35조 제4항의 부착의무는 사용정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법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 별지 제43호 서식 주의사항 3의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권고

○ 수상레저기구의 국내산업 보호 · 육성의 기반을 위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기준, 필요한 시설 및 인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신설)

☞ 우수사업장 인증절차는 국내 수상레저 관련산업의 보호 · 육성을 위한 것으로 법에 규정된 위임범위에서 최소의 절차를 규정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나, 취소 · 정지 절차에서 우수사업장인증취소시 인증서 반납을 별지 제46호서식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취소 · 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37조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며 우수사업장 인증서의 반납은 인증 취소의 경우에만 한정 하도록 하고, 인증서 반납기간을 명시(14일 이내)할 것을 개선권고

○ 국가 · 지자체 설립 시험 · 연구소,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기타 해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2조의 수상레저기구를 형식 승인 대상품목으로 하며, 타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검사,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형식승인 면제 대상으로 함. (신설)

☞ 수상레저기구 제조사업체가 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구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형식승인 및 검정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등은 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 기관의 지정 취소·정지 절차에서 형식승인·검정기관 지정서 반납을 별지 제56호서식 「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에 규정한 바, 시행규칙안 제43조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며, 지정서 반납은 지정 취소의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지정서 반납기간을 명시(14일 이내)할 것을 개선권고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등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인명안전장비 미착용 80만원, 운항규칙 위반 80만원, 안전교육 미이수 30만원, 면허증 미반납 20만원,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미이행 30만원,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후 기간내 미이행 20만원, 보험 미가입 30만원, 등록번호판을 미부착 30만원) (강화)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제 7 절 환경분야(환경부)

집필자 : 김종민 사무관 (Tel. 2100-2451, kjmin@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2005년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 42개(비중요 규제 12건, 자체심사로 가름한 12건)의 법령에 대해 신설 13건, 강화 74건, 내용심사 33건 등 총 12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46건, 비중요 74건)

○심사대상 120건 중 2건에 대하여 철회를 권고, 28건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고, 9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환경부의 2004년도 총 신설규제는 12건임.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12차 경제 2분과위 (2005. 1. 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	제 213차 경제 2분과위 (2005. 1. 21)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1, 비중요2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5. 4. 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16차 경제 2분과위 (2005. 4. 15)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216차 경제 2분과위 (2005. 4. 15)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6.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5. 5. 3)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비중요2
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강화 6 *중요2, 비중요4
9.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제 218차 경제 2분과위 (2005. 5. 13)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1, 비중요2
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19차 경제 2분과위 (2005. 5. 2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강화 5 *중요2, 비중요3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219차 경제 2분과위 (2005. 5. 2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강화 6 *중요3, 비중요3
12.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5. 6. 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2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22차 경제 2분과위 (2005. 6. 2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제 224차 경제 2분과위 (2005. 7. 14)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2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3, 비중요3
15. 수도법 일부개정안	제 224차 경제 2분과위 (2005. 7. 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1, 비중요1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 225차 경제 2분과위 (2005. 8. 8 ~ 8. 16 서면심사)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중요1, 비중요3
17.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 225차 경제 2분과위 (2005. 8. 8 ~ 8. 16 서면심사)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8. 소음진동규제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25)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2
19. 소음진동규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25)	원안의결 5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5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26차 경제 2분과위 (2005. 8. 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2.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중 경유밀도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4.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27차 경제 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5.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제 227차 경제 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신설 3,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4, 비중요 3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 229차 경제 2분과위 (2005. 9. 30)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2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29차 경제 2분과위 (2005. 9. 3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 230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1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2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30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14)	원안의결 6 개선권고 4	강화 5, 내용심사 5 *중요 5, 비중요 5
30.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제정안	제 231차 경제 2분과위 (2005. 10. 2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1
3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2 *중요 1, 비중요 3
3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3.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33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1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제 234 경제 2분과위 (2005. 11. 1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내용심사 3 *중요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제 235차 경제 2분과위 (2005. 11. 2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2 *중요2, 비중요1
3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8.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36차 경제 2분과위 (2005. 12. 2)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1
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236차 경제 2분과위 (2005. 12. 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 3 내용심사 3 *중요3, 비중요3
40.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1. 사전환경성 검토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2.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6)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90 개선권고 28 철회권고 2	신설 13 강화 74 내용심사 33 *중요 46 비중요 74

492

493

2.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관리지역내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2의 2에 의해 관리지역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의 인 · 허가, 승인 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하는 대상을 추가함.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관리지역내 청정지역에서 공장 증설시 누적합계가 5천㎡이상이 되는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으로 함.

☞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증설 면적이 일정면적(1,500㎡) 이하인 경우에는 3종류의 서류(현장사진, 수질 보전관련 오폐수처리대책, 위치도 등)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고시 「사전 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부대 권고함.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신설3)

●심사내용

○ 조사 · 목록작성 · 고시의무 부과

–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 · 공고하도록 함.

☞ 국민신탁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국민들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권리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자체와 우선매수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신탁재산을 처분 ·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신탁재산 처분 · 양도, 담보금지, 제한 · 문화유산 매수관련 사전 협의 규정 위반시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국민신탁이 관리하는 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에 있어 국가 · 지자체의 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권리변동에 따른 통지의무 부과

– 자발적 협약 · 보호서약의 당사자는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민신탁에 통지하여야 함.

☞ 국민신탁의 신탁재산 보전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1만㎡미만의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중 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기준 적용
- ☞ 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입주허용업종에 따른 폐수배출기준 적용이라는 점과 본 환경규제로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규제는 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의 신설 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2의 2에 의해 관리지역 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신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 소규모 공장의 신설수요가 급증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며, 사전환경성 검토가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속한 시일에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운영 가이드 라인과 관련하여 서류 간소화, 주위의 타 공장에서 받은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를 활용 및 사업비 규모 대비 검토보고서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분과위에 보고하도록 함.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1만㎡미만의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중 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기준 적용

☞ 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입주에 따른 폐수배출기준 적용이고, 비용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검정대행자 지정(변경)신청

－ 실내공기질 분야 및 수질분야 총유기탄소 측정기의 정도검사 대행자 기준에 실내공기질 분야 4인 이상, 수질분야 5인 이상을 추가함.

☞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측정대행업 등록

－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실내공기질 분야 3인 이상, 악취 분야 2인 이상으로 정함.

☞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 업자의 등록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 6)

●심사내용

○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승인

－ 형식승인대상에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기 및 수질분야 총유기탄소 측정기 추가

☞ 타 분야의 기존 측정기에 대해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환경측정기 정도검사·검사대행자 지정(변경)

- 실내공기질분야 기술인력 4인 이상, 장비(시료채취 기준장비 등) 21건이고, 수질분야 기술인력 5인 이상, 장비(총유기탄소측정기 등) 16건

☞ 타 분야의 기존 검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측정대행업 등록

- 등록기준에 악취분야 기술인력 대기환경사 등 2인 이상,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실내공기질분야 기술인력 대기환경사 등 3인 이상, 장비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함.

☞ 타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및 시약소모대장 기록 및 2년간 보존의무 신설

☞ 타 분야의 기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측정대행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측정기록물 관리위반, 산출근거 허위산출, 부과금 관련 측정 부실 등의 위반자에 행정처분 강화

☞ '시료채취기록부 등을 작성,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초위반시 영업정지 1월은 법 취지로 볼 때 과도하므로 1차 경고 후 2차 위반시 영업정지토록 개선권고

○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 표준시료의 측정결과의 평가, 측정·분석능력,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평가·검정하는 종합정도관리제도 도입, 검증서 부여

☞ 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검증하고, 검증서 발급의 근거마련을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7) 하수도법 일부개정안(강화 3)

●심사내용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사용료 징수

- 중수도 설치의무자가 중수도 수준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 설치의무 면제, 사용료 납부

☞ 중수도 설치에 갈음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전문업체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제조업자,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자, 산업설비공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건축주 시공은 삭제

☞ 전문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부실시설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추가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특정공산품(주방용 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의 사용으로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경우 제조·수입·판매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하수관거 정비 실태에 비추어 하수처리장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하수처리 실태, 하수관거 정비실적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07. 5월까지)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8)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5)

●심사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누출검사 강화

- 설치 후 5년이 지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함. 단, 누출검사를 받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아니함.

☞ 설치 후 10년이 지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도록 개선권고. 또한, 유류 및 유독물의 흘림·넘침으로 인한 토양오염방지대책,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소방방재청과 환경부의 전체적인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개월 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신고 및 투기금지

-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염원인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활동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0m^3 미만인 경우와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m^3 미만인 경우로 함.

☞ 적절한 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양정화의 검증

- 토양정화과정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오염토양의 양이 1000m^3 미만인 경우와 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500m^3 미만인 경우로 함.

☞ 사람 및 환경에 실제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토양오염조사기관 관련, 토양정화검증 추가에 따라 기술인력에 기사1인을 추가하고, 누출검사가 정기검사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을 강화함.

☞ 대부분의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요건 강화가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 시설은 사무실 50평방미터 이상, 반입부지 정화시설 400m^2 이상, 보관시설 400m^2

이상이고, 장비는 시료채취기 등 5종이며, 기술인력은 기사이상 2인 이상, 산업기사 2인 이상, 해당분야 졸업자 3인 이상으로 함.

☞ 사무실 규모를 30 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6)

◎심사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 설치 후 5년이 지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3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

☞ 설치 후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 4년 또는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5년 이상의 시설은 '06. 7. 1부터, 10년 이상의 시설은 '07. 7. 1부터 누출검사를 받도록 개선권고

○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신고 및 투기금지

– 반출정화의 대상을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긴급사고, 오염토양의 양이 5m³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 반출정화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9조의 2 제1호 ‘--협소한 경우’를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4호(그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반출정화계획서의 제출 시 검토 후 반려 · 보완요구에 대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 후 10일 이내 반려 · 보완 요구 또는 적정 통보를 하도록 개선권고

○ 토양정화의 검증

– 토양정화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계획의 제출하도록 하고, 토양정화계획서에 포함할 내용과 제출절차, 변경계획의 제출대상을 정하며, 정화검증수수료 산정 기준, 정화검증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

☞ 토양정화검증업무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인력의 해당분야 종사, 수탁받은 오염토양의 폐기물 여부 확인, 재위탁 금지, 정화일지의 작성·비치 등을 정함.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모든 기술인력은 3년마다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

☞ 등록시 이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토양정화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비 운영기술,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교육내용을 축소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권고

○ 석유계총탄화수소(TPH)항목의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설정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 '가지역'에 대한 TPH항목의 기준을 각각 500mg/kg, 1200mg/kg으로 정함.

☞ 업계와 협의를 거쳐 당초 기준안을 조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10)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지역중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의 경우 10,000㎡이상인 기반시설(화물터미널, 유통단지를 제외한 유통업무 시설)' 추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 30,000㎡ 미만 10,000㎡이상 규모의 유통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신설2, 강화3,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 해양오염방지법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대상인 선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규칙」발효에 따라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의 5)에서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국회 계류 중),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시정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동안 수리실적, 부품결함 현황, 배출가스영향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함.

☞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판매한 운행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원인을 규명하고, 조사된 사항을 자체 시정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결함사항에 대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인증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제조 · 판매 · 공급자는 보증기간동안 저감효율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결함으로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를 시행중이나 이 제도는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에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

○ 과징금 처분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 이익을 얻는 경우 국가는 형벌외에 과징금 부과라는 경제적 제제수단을 통하여 법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 등록

-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를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수송용 연료 및 첨가제 등록과 관련하여 수송용 연료는 현행 규정과 같이 자동차 연료로 하고, 첨가제 등록제도의 부활은 철회하되 제조기준 적합여부의 사전검사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장 종별규모의 분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별 규모 분류근거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으로 함.

☞ 사업장의 종별 산정기준을 연료사용량에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한 후 근거조항을 법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원안에 동의하나, 오염물질 발생이후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종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종전의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종 구분을 상향조정한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처리기술의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오염물질 저감정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년 이내('08. 6월까지)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12) 수도법 일부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정수장운영관리사 도입(안 제17조의 4 내지 제17조의 6)

-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장운영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정수장운영관리사의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함.

☞ 「정수장운영관리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환경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정수장운영관리사」의 국가자격 신설에 동의함.

○ 위생상 조치(안 제21조)

- 다중이용건축물 · 공공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관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옥내배수관은 수질검사 및 진단을 통해 필요시 세척 · 갱생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옥내급수관 세척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척의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설1, 강화3)

●심사내용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판매업자는 생산자 또는공제조합의 집하소까지 제품을 운반 · 인계하고 실적을 통보하도록 함.

☞ 제품 판매업자의 물류망을 통해 회수가 용이한 제품의 폐기물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범위 및 인계방법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용기의 회수 · 재활용

-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의 제조 ·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빈용기 보증금 외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토록 하도록 함.

☞ 비용을 직접 회수하는 소매점에 수수료 지급이라는 인센티브제도를 추가하여 비용기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다만 보증금의 지급대상자와 취급수수료의 지급대상자가 상이하므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용기보증금의 사용용도

- 비용기보증금의 지급 잔액을 비용기회수율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적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함.

☞ 해당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주던 미반환 비용기보증금을 자원 재활용의 촉진 등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재활용제품의 사용시설 및 준수사항 등

- 재활용제품중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RPF)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가 사용해야 할 시설 및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재활용제품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적정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시설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1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임산물 채취 협약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에서 임산물이나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자를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자연자원의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연환경지구에서 임산물이나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에 대로 임산물 등의 채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운영과정에서 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단독주택 주민지원사업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하면서 급수장치, 배수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지원 대상을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민으로 한정함.

☞ 공원 안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거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행정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경중, 위반횟수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 함.

☞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처벌에 있어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15)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숙박시설 설치 제한

-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의 설치 행위를 제한. 다만,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민박을 허용하고,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도서의 밀집마을지구에서 여관 및 여인숙의 설치를 허용함.
-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 제7조 규정의 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의 제한, 제8조 규정의 자연마을지구에서 민박외 숙박시설의 제한, 제14조 제2호 규정의 공원사업 시행기준에서 해안 및 해상공원의 숙박시설 설치시 3층에서 5층까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제9조 규정의 밀집마을지구에서

민박 또는 집단시설지구 미지정 도서지역의 여관, 여인숙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환경부 개정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시설만을 제한하도록 개선권고함.

16)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 취득 및 취소

-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 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을 속임수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시험·검사 전문인 자격제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도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1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신설3, 강화2, 내용심사2)

●심사내용

○ 기타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변경

- 기타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사용량에 대해 수돗물 개발비용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토록 함.

☞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의 부과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먹는샘물 관련영업자의 허가취소요건 추가

-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허가취소요건에 먹는샘물외의 물, 허가받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넣은 경우를 추가함.

☞ 먹는샘물외의 물을 먹는샘물용기에 넣어 판매·제조·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검사기관 지정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서 정수기에 대한 구조 · 재질검사, 정수성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정수기품질검사라고 정의하고,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검사기관 및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 임기 ·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하도록 함.

☞ 검사기관의 종류에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을 추가하고, 시설 · 인력과 검사기관의 지정 · 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에 두도록 개선권고하고, 정수기품질검사 정의부분에 ‘정수기품질 검사기관에서’라는 문구 삭제하도록 함. 또한,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법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정수기 수거검사결과 필요시 시정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 · 지사가 판매중인 정수기를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하거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수기의 제조업자, 수입 · 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수기의 사후관리는 현행 제36조 규정의 ‘먹는물영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개선 명령’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 철회를 권고

○ 정수기제조업자 등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 운영 및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부품 공급조치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 · 판매업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실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품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수기품질검사기관, 정수기제조업자, 정수기수입 · 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수입 · 판매업자에게 부품공급 및 고장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한 내용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그러나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이 소비자보호의무대상 기관으로 포함된 것은 검사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치 못함. 다만,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사업자 단체로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구매자에게 부품공급 및 고장수리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의무 이행을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의무 이행으로 같음한다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

○ 검사 수수료 납부

- 먹는물 검사기관, 정수기품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범위 확대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범위와 관련하여 살충·살균제를 담은 용기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를 추가

☞ 살충·살균제의 합성수지용기 등과 전기제품의 완충재인 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 대상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

- 재활용기준비용에 있어 실제로 재활용용도(고형연료)가 동일한 단일재질의 필름류 포장재를 복합재질포장재와 동일하게 조정

☞ 단일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기타 복합재질 필름포장재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설정
 -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준비용을 설정

☞ 재활용기준비용 설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의결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06년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설정(시행규칙 별표4 제10호 가목)
 - 06년부터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있어 재활용기준율을 2008년까지는 65%로, 그 이후에는 80%로 설정
- ☞ 2008년 이후의 재활용기준율의 80%는 EU의 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의 기준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75%로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20) 유해화학물질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대상자 변경함.
 -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사용자, 유독물중 가스·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 시설 설치자,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사용자, 취급제한·금지물질중 가스·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시설 설치자로 정함.
- ☞ 정기·수시검사 대상 사업체를 독성 및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취급제한물질과 유독물로 구분하고, 제조·사용시설과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기준을 정한 것은 타당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검사업체를 확대할 경우 대상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2개소→ 703개소)하므로 규제의 집행력 등을 감안하여 유독물 제조 또는 사용업체의 규모를 연간 2천톤 이상을 5천톤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또한,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이행실태를 2006년 말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

- 사고대비물질(56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자는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으로 정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고,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이 축소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

○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풍선류 추가

-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칼라풍선에 대한 규제 필요성으로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추가함.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약물로 고시된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5, 내용심사5)

●심사내용

○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안 제2조 내지 제3조)

-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역서를 제출

☞ 확인증명제도(先확인, 後통관)를 화학물질 확인제도(先통관, 後확인)로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유해성심사항목 강화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외 수생생태독성시험 성적서를 추가 제출
- 제출자료 중 기타 해당물질의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첨부토록 함.

☞ 신규화학물질 심사와 관련한 국제적 요구수준과 산업계의 실태 및 시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생생태독성항목의 추가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유해성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하는 제출자료 중 제5호 기타 해당물질의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삭제하도록 권고함.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시험자료, 기타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당해 물질의 분석방법 및 취급·보관방법에 관한 자료의 제출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 요구자료 중 제4호 기타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자료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삭제하도록 권고함.

○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지정

–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및 기관의 사후평가 규정 등을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규정

☞ 고시로 규정된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범위 확대

– 보관·저장·운반시설의 증감 및 제조·사용량증감의 경우 변경등록을 받도록 함.

☞ 유독물 변경등록사유에서 업종별로 나누고, 감소사유를 추가한 사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유독물 등의 취급시설의 검사,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진단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명하여 관리 강화

☞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미비점인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에

관한 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정기·수시검사 주기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은 현행처럼 1년으로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수입허가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영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사항 규정

☞ 취급제한물질 및 유독물의 판매 및 사용에 따른 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

- 로테르담 협약 이행을 위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수출절차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토록 규정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과 관련한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체방제계획 수립

- 자체방제계획의 내용에 화학물질안전관리 인력,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을 추가함.

☞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관련하여 항목 및 절차를 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화학물질관리 서류의 기록 및 보존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된 보존대상서류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과 관련한 서류, 수입면장 등 통관관련 서류, 화학물질 성분내역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 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확인서로 정하고, 화학물질관리대장의 기록·보존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보존서류를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제1호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과 관련한 서류의 경우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권고함.

22)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2)

●심사내용

- 도로보조기층용에 순환골재를 10%이상 사용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로
 - 「도로법」에 의한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건설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1킬로미터 이상인 도로건설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를 정함.
- ☞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량’을 정하는 것으로 의무사용제도 도입 초기인 점, 지역별 순환골재 수급을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용량 기준을 10%로 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적용배제 사항
 - 공사현장에서 40km이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순환골재가 비경제적인 경우에 의무사용 배제의 판단기준으로 함.
- ☞ 법 38조 ①항에서 발주자의 순환골재 사용의무를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품질확보 및 수급상 문제로 의무사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②항에서 상기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2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2)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의무 대상사업 추가, 규모 변경 및 협의시기 조정
 - 신규 평가대상사업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5개 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중 시행계획 성격의 개발사업 5개를 평가대상으로 변경,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대상사업에 추가

-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를 20만㎡로 확대 추진(현행은 10만㎡ 미만으로 제한)
-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규모) 조정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 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중 녹지면적(3만㎡)은 제외, 철도건설 사업의 평가대상 규모를 길이 1km이상에서 길이 4km이상으로 완화, 도시공원의 평가대상 규모를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에서 공원조성 전체 면적 25만㎡ 이상으로 변경,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내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포함시킴
- 평가 협의시기 조정 : 저유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의 협의시기를 해당 사업 인·허가 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록 전으로 변경, 댐건설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확정 전에서 실시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 공원사업의 협의시기를 공원계획 결정전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 전으로 변경

☞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5개 개발사업 및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5개 개발사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하는 개정내용에 동의함.

다만, 20㎡ 이상의 농어촌관광휴양 사업은 근거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아 해당사업(현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은 10㎡ 미만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삭제토록하고, 일정규모 이상 해안 골재채취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중복평가방지를 위해 골재채취 예정지, 골재단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개발사업은 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며, 평가대상 사업 범위의 조정 및 평가 협의시기를 조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의 규모 변경

- 재협의(영향평가를 다시 함.) 대상사업 확대 : 재협의 대상의 사업계획 범위를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폭·밀도·용적·용량 등도 포함하고, 공사가 7년 이상 장기간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사업도 재협의 대상에 추가
- 변경협의(승인기관에 의견제시) 대상사업 규모 강화 : 평가협의를 받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협의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업규모를 15/100 이상에서 10/100 이상으로 강화

☞ 재협의 대상사업은 폭·밀도·용적·용량까지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7년 이상 중지된 사업은 여건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변경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사업계획 등의 통보기한 신설

-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등의 승인 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는 기한을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함.

☞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 주민의견 수렴 대체범위 설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설명회가 생략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소각시설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24)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평가대행자(변경) 등록

- 평가대행자가 최초 등록한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가 실험기기 및 장비로 환경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정도검사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가 사용하는 실험기기 및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다만, 환경조사의 정밀도 유지라는 행정목적은 정도관리에 의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기기 및 장비가 변동될 때 마다 매번 등록받도록 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삭제를 권고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기준

-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환경현황조사시 2차례의 경고처분 후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로 정함.
- 2년 이상 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2차례의 경고처분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로 강화
-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6월 업무정지, 2차 등록취소에서 1차에 등록취소로 강화

☞ 평가대행자의 환경현황조사 시 정도검사를 받은 실험기기 및 장비의 사용의무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신설과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25)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추가(11개)됨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사완료 후 5년까지는 1개 사업을, 공사완료 후 3년까지는 10개 사업을 추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제외)에 추가된 개발사업의 사후영향조사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사개발사업의 사후영향조사기간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

2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지정

- 유해성이 검증되고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있는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지정

☞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은 발암가능성(B2)으로 위해도가 높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된 물질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하는 원안대로 의결

○ 배출허용기준 설정·강화

-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01ppm이하로, 가, 나, 특례지역은 0.1ppm이하로 설정하고,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02ppm이하로, 가, 나, 특례지역은 0.2ppm이하로 설정하며, 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2ppm에서 0.05ppm으로, 가, 나, 특례지역은 1.0ppm에서 0.25ppm으로 하고, 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은 0.1ppm에서 0.05ppm으로, 가, 나, 특례지역은 0.5ppm에서 0.25ppm으로 강화하되, '08. 1부터 적용하여 2년의 유예기간 부여함.

- ☞ 벤젠, 디클로로메탄, 비소의 경우 현행 하천 수질환경기준, 외국의 예를 고려할 때 적절하나 납의 경우 하천 수질환경기준이 0.1ppm인 점을 고려하여 청정지역은 0.1ppm, 가, 나, 특례지역은 0.5ppm으로 조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내용심사3)

●심사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완화

- 완충구역은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 전이구역은 연면적 200㎡ 또는 330㎡ 이하

- ☞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에 허용 건축물의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와 주민 생활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이 정하여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절차

- 생태마을 지정기준으로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 수려한 경관,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 노력 등을 포함.
- 생태마을 지정절차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 ☞ 환경부 내부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및 절차, 해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 자연공원, 생태자연도 1등급,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일(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기타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지역
-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지점, 식생조성방법, 생태통로 내부의 피난처 조성 등 생태통로 설치 시 준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정함.

☞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지역 및 설치기능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제7호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일(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및 제8호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는 지역 특성이 곤란하므로 '제9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역을 고시할 때 참작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삭제될 권고함.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완충·전이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완화

- 완충구역·전이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내용을 정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지역주민의 생활 및 방문객의 생태탐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협의방법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에서 보전지역의 경우 자연공원 주변지역은 고도에 따라 1000m~2000m, 습지보전지역은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면적에 따라 500m~2000m, 도시지역 내 보전지역은 300m로 하고, 보전지역 외 지역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24개 사업계획, 경관영향이 큰 특정시설물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은 경관영향이 큰 44개 사업으로 함.

☞ 보전지역 주변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거리는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생태·경관지역의 경우 경관보호대상의 고도가 아닌 면적 기준은 합리적이 못하므로 고도를 기준으로 최고봉 700m 이상은 경계로부터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은 500m로 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보전지역 외 지역에서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계획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협의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확대

– 개발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추가

☞ △부담금 감축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필요성, △법체계 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철회를 권고함.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강화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포름알데히드 $210\mu\text{g}/\text{m}^3$, 벤젠 $30\mu\text{g}/\text{m}^3$, 톨루엔 $1,000\mu\text{g}/\text{m}^3$, 에틸벤젠 $360\mu\text{g}/\text{m}^3$, 자일렌 $700\mu\text{g}/\text{m}^3$, 스티렌 $300\mu\text{g}/\text{m}^3$ 으로 정함.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실내공기질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실태조사와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기준이 설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적합 여부 및 추가비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권고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일몰제 폐지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 및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6년 5월 30일까지로 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

< 건축자재에서 사용되는 오염물질 >

오염물질 \ 구 분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이상	4이상

※ 192차 경제2분과위원회('04. 4. 2)에서 기준설정의 근거가 되는 측정자료(7개 건축자재)가 부족하여 업계의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되, 환경부에서 기준치의 적정여부를 검증토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부칙에 유효기간 규정이 마련됨.

☞ 환경부에서 200여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추가로 시험한 결과 기준 준수율이 93%에 달해 당초 설정된 기준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부칙규정의 유효기간 폐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강화3, 내용심사3)

●심사내용

○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차량

- 배출가스 검사결과 휘발유·LPG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의 200%를, 경유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의 120%를 초과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함.

☞ 정비대상차량 선정기준으로 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 120% 초과(부적합 차량의 57.3% 수준, 6만3천 여 대)이고, 휘발유차는 배출허용기준의 200%(부적합 차량의 36.7% 수준, 1만 9천 여 대)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정비업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점, 전문정비업체 이용시 비용 및 불편증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따라서 제3호의 경우처럼 정밀검사시 기준에 불합격한 차량을 일반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도록 한 후 재검사에서 불합격차량에 대하여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정비업소와 전문정비업소를 분리하여 도입한 취지에 합당하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휘발유·LPG 차량 허용기준의 200% 초과와 경유차량 허용 기준의 120% 초과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함.

○ 전문정비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 전문 정비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기준으로 시설·장비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 정비용기구, 부대시설 등으로, 인력기준은 정비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으로 함.
-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

☞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전문정비업자 관리

- 시도지사는 매년 정비차량대수, 재검사 합격률 등을 조사하여 공보 및 검사기관에 게시하국, 검사기관은 전문정비업자의 약도,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토록 함.

☞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전문정비업자 행정처분 기준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 업무를 하는 경우는 1월에서 6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고,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서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지정취소,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는 1월에서 6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는 경고 또는 업무정지토록 함.

☞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지정받은 전문정비업자가 영업을 하는동안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고, 법규정(제37조의 9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을 확대한 사항으로 삭제를 권고

○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지정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에틸렌옥사이드, 스티렌, 디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을 대기유해물질로 지정(9종)한 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10종)함.

☞ 대기오염물질 중 위해성 등에 근거한 기초조사, 전문가의 검토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규제대상의 대기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제210회 분과위원회('04. 12. 10)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철회 권고한 사안임.

○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0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이륜차 배출허용기준(EURO-1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예시

- 2006년부터 EURO-2 기준(유럽 2003년부터 적용)
- 2008년부터 EURO-3 기준(유럽 2006년부터 적용)

- 3륜이상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제정

- 2008년부터 EURO-2 기준

☞ 유럽(주요 수출지역)의 이륜자동차 기준을 참고하여 제작사 및 수입사와 협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는 수준 및 일정을 예고하여 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제 8 절 교육 · 문화분야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교육인적자원부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고등교육법 · 시행령 개정안,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4건, 강화 12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6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9건, 비중요규제 58건)
- 심사대상 67건 중 19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2건은 철회를 권고하고, 4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54건임.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원안의결 4 철회권고 1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 1, 비중요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 264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정보공시)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안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원안의결 15 개선권고 1	신설 16 *비중요 16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7.29 본회의 의결)	제 229차 행정사회분과 (2004. 6. 3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5	신설 8 *비중요 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8.19 본회의 의결)	제 269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17)	원안의결 9 개선권고 5	신설 14 *중요4, 비중요10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제 271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31)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 4 *비중요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제 271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31)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276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9)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신설 8 *비중요 8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약대학제 6년제 연장)	제 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 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의대 정원 감축)	제 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11. 30)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6 개선권고 19 철회권고 2	신설 54 강화 12 내용심사 1 *중요 9 *비중요 58

524

525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신설3, 강화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강화)

☞ 평생교육 취지에 맞지 않고, 학습자의 학습계획을 제한하게 되므로 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함.

○ 의료인력 양성분야 학습자 제한(신설)

- ☞ 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학위취득기회를 부여하면서,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습자를 제한한 것은 의료인력의 질(質)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원안동의함.

○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시 중복학점 제외 (신설)

- ☞ 자격증 관련 학습과목과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학위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원안동의함.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인정 기준(신설)

- ☞ 중복학점 취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독학사 면제과정과 학점은행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기관(광운대학교 전산사회교육원 등 10개)의 경우 이를 1개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원안동의함.

○ 대학졸업자 등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설정(내용심사)

- ☞ '98. 3월 이전의 각종학교(추계예술학교 등 33개) 졸업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학점은행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원안 동의함.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강화3)

●심사내용

○ 산업대학의 수시모집시 복수지원 금지 등 제한규정 도입(신설)

- ☞ 산업대학에도 이중등록 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수시모집 합격자들의 과도한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학전형업무의 혼란을 예방하고, 산업대 진학희망자들의 진학기회를 보장하며, 산업대와 일반대학(전문대 포함)간의 신입생 선발의

형평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 (강화)

-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함.

☞ 약대진학 희망자들이 보다 성숙한 상황에서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하게 하고, 약학대학은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제도로서,

-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6년 학제를 채택하고 있고,
-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건의(’02. 10)한 사항이라는 점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04. 7. 13) 및 공청회 (’05. 7. 5)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원안동의함.

○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및 수의사 양성학과 모집단위 신설 또는 정원 증원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전조정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수의사에 대한 정원통제는 의사정원 축소와 같은 맥락이므로 원안동의하되,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도 정원을 통제함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수용하겠음.

○ 의과대학의 정원의 입학 비율을 축소(10%→5%)하고 학사 편입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의료인 관련 양성 인원 축소

☞ 적정수준의 의료인 양성으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은 2000년 8월 의료계 파업시 정부가 감축을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
- 수차례의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회의(2002. 8월, 10월 등)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 정원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신입학 정원 195명을 2004년도에 기 감축하여 이행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급식실시 유치원은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함.(신설)
- ☞ 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전체유치원의 90%)에서 원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영유아보육법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도입하고, 영세유치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양사 배치 기준을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 등으로 한정함.
 - 다만, 위생적인 급식시설이 조기에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치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간 등이 필요한 바 이를 고려하여 경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함.

4) 고등교육법 개정안(신설1, 강화2)

●심사내용

-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기간 (강화)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이전과 동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 '2회 이상의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2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 부정행위와 자격정지 기간의 3가지 유형 및 그 개념을 시행령 및 훈령 등에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함.

- | | |
|----------------------|-------------------------|
| -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 3가지 유형 | ① 당해시험 무효 |
| | ② 당해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 제한 |
| | ③ 당해시험 무효 및 향후 2년간 응시제한 |

- '2회 이상' 및 '2년간', '2인 이상' 의 개념 등을 명확히 규정
 - 훈령 등에 규정할 사항

- 시행령 ①~③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양태 등을 규정

○ 대학정보공시의무 및 공시자료 제출의무 부여(신설)

- 학교로 하여금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용이하게 해당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 학교별 공시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대학의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적절한 방법’이라는 문구는 제3항에서 공개하여야할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 아울러, 해당정보에 접근·열람하는 주체가 누락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또는 ‘제3자가’ 등 적절한 문구를 삽입할 것이며,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한 대학에 그 자료의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함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는 철회할 것을 권고함.

○ 정보공시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변경명령(강화)

- ‘대학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보공시의무를 추가하는 경우 제2항에서 의무위반의 제재수단으로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은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정보공시항목 추가 부분은 철회할 것을 권고함.

5)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16)

●심사내용

○ 외국에서의 한국학교 설립 승인(신설)

-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지원 및 학력인정을 받는 한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학교(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학교의 공익성과 운영의 안정성 보장 및 재외국민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 시설·설비 등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추어 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 외국에서 재정지원을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한국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 문구는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함.

○ 한국학교의 학교법인에 두는 임원

- 한국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당해 학교의 장 및 주재관 1명이 포함되도록 함.

☞ 해외여건상 충족하기 어려운 국내 사립학교의 이사회기준(이사중 적어도 1/3은 3년이상 교육경험자로 구성) 대신, 정부가 설립자금의 50% 정도를 지원한 점과 대부분이 교육비전문가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재외학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해외공관의 주재관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 이사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승인

- 임원은 공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되, 임원정수의 1/2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

☞ 부적합자의 임원취임방지를 위하여 취임시 공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한국 학교의 정체성 및 한국교육과정 유지를 위해 이사정수의 1/2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

- 임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1항)

- 직무상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없게 된 때
 -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 임원진간 직무상 분쟁·회계부정 등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안 제20조)를 선임하여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학교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 공직부적격자의 이사 재선임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학교법인 임원의 보수제한
-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만 지급
- ☞ 학교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재산처분에 대한 보고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관의 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용 재산의 변동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의 예산과 결산제출

-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공관의 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결산 및 재정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재산목록 등의 비치

- 학교법인은 설립시에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재산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학교법인 해산 승인

-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의적 해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함.

○ 학교법인 정관변경 승인

-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학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운영, 재산관리, 교직원 신분 및 학교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관변경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에 의한 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학교법인의 설립승인 취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설립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설립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존치로 인한 폐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학교법인의 보고 및 조사 관련 의무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공관의 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과 재외 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교원 임면 보고

- 학교법인이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법규정에 따른 임면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교원현황 통계 작성·활용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 교직원 해직 등의 요구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과 부당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한국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 제한

- 임원취임 승인취소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부적격자의 학교장 임명배제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함.

6)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8)

◎심사결과 : 본회의 상정 ⇒ '05. 7. 29 본회의 의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보완자료 등을 검토한 후 동 법률안에 대한 사무국 의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
- 다만, 절차상 이해당사자인 '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여 의결은 하지 않음.
- 향후 본회의에서 '대학교육협의회'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에 상정기로 함.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14)

◎심사결과 : 본회의 상정

- 참고인(학계2, 법조계2)의 의견진술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아래와 같은 개선권고 사항 등을 첨부하여 8.19(금) 본회의에 상정기로 함.

〈지적사항〉

- 총입학정원제, 학부폐지문제, 특별전형시 장애인 우대조항 등은 법학교육과 법률 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제재조치 건의, 시정명령, 학생정원 감축 조치 등은 제재조항이 없는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과 중장기적으로 형평을 맞출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항(2건)〉

- 학생정원의 감축조치는 그 조건이 불명확하므로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표현을 추가 규정
- 설치인가의 기준으로 제 2조(교육이념)를 고려토록 한 것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법제처심의시 적절한 용어로 수정

〈기타 사항〉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소속(대한변협) 및 구성문제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사항이 아님을 근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사무국 의견 수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교원확보 요건,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원안동의 (사무국 의견 수용)

8)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강화4)

●심사내용

○ 대학설립 심사에서 정성적 기준 강화(강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립자의 욕망의지, 교육과정, 학교운영능력 등의 사항도 포함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함.

☞ 고등교육의 질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학설립인가 심사시 교사·교지·수익용 재산 등 양적인 설립요건 이외에 설립자의 욕망의지 및 학교운영능력 등 정성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일응 타당성이 있으나,

- 정성적 기준으로서 설립자의 욕망의지 등은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질적 지표의 개념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함.

○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통·폐합하여 동일권역내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의 특례 인정(강화)

- 사립의 산업대학·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특별시 또는 동일한 도(광역시를 포함한다)내에서 설치·경영하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으로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산업대학은 25% 이상, 전문대학은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여야 하고,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통·폐합 전보다 개선하여야 하며,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준수해야함.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합후 일반대학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일반대학설립시 요건(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의 100%를 충족토록 규정되어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을 완화적용하려는 조치인 바,
- 동일법인일 것과 동일권역일 것을 특례 인정의 요건으로서 정함은 지역적

특성화를 통해 대학간 통합과 구조개혁을 지원한다는 대학구조개혁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특례조치란 점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 산업대학 입학정원을 25%이상 감축토록 한 것은,
- 전문대의 경우 10%의 추가감축시 편제정원으로 환산시, 20%정도의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 교원확보율 산정시 일반대학은 20%까지 겸임 · 초빙교원을 인정하는 데 반해 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은 50%까지 인정하는 점,
- 그럼에도 전임교원확보율이 일반대학에 비해 저조한 점(대학 55%, 산업대 · 전문대 4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됨.

■ 일반대학으로 전환시 전문대학 정원을 60% 이상 감축토록 한 것은

- 대학의 수업연한이 4~5년, 전문대가 2~3년으로 전문대학 정원을 50%감축하여 일반대학으로 전환시 일반대학의 편제정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10%이상 추가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을 개선하기 위한것으로, 구조개혁과 특성화 추진을 위한 특례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학생정원 최소기준 상향 조정(강화)

- 시설기준 학생정원 최소규모를 대학은 10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은 200명) 으로 상향조정
-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200명에서 5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

☞ 교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설립인가시 학생정원의 최소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 시설기준 학생정원의 최소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대학 (장애인대학 포함)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함은,

- 영세대학의 남설을 방지하고,
- 대학운영의 기본자금은 학생등록금이란 점에서 대학의 건실한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정원기준을 상향함이 필요하다는 점,
-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의 최초 제시안도 동 규모를 최소한의 시설기준

학생정원규모로서 제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을 200명에서 500명(대학), 100명에서 200명(대학원 대학)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 OECD국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평균 15.4명('02년)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 39.1명(대학, 04년 기준), 75.6명(전문대)로 열악한 교육여건인 바,
- 설립단계에서 부터 법정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원확보율을 제고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 및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대학신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확보금액 설정(강화)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확보하되, 신설의 경우에는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대학 4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단, 1개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대학설립시 최소한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대학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간 대학설립시 준칙주의 운용으로 부실대학 및 미개교 부실법인이 양산된 점, 관련 정책연구에서도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규모를 상향조정하도록 정책제안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 규제의 적정성 또한, 학생1인당 학교운영수익에다 최소규모 학생정원(대학 1,000명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대학 100억, 전문대 70억, 대학원대학 40억인 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됨.
- 또한, 1개 학교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학교별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은 동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신설2, 강화1)

◎심사내용

○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강화)

- 학교에서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교실내 부유세균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지 · 관리기준 강화

☞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것은

- 청정한 공기의 질을 유지토록 하고, 새학교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을 예방하며, 학생건강을 위한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여 원안동의함.

○ 학교 환경위생 관리체계 (신설)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새학교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을 예방하고, 학생건강을 위한 실내공기의 질 관리를 위해 학교 환경위생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물(설비)을 적합하게 유지 ·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란 점

※건축법 제26조 : 건축물의 소유자 · 관리자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 · 관리의무 부과

• 현행 규칙상으로도 제 3조에서

- ▷ 환경 및 식품위생의 유지 · 관리 기준을 정하고,
- ▷ 학교의 장은 매년 점검을 실시하며,
- ▷ 지도 · 감독기관인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란 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측정하고 있으나, 연간 다중이용시설의 약 20%정도만 측정가능한 현실여건상 학교측정을 지원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체계를 학교 자체에서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하고, 관할청은 지원 및 지도 · 감독체제로 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의 장에게 환경위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조의 2)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율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의시 조정토록 개선권고함.

○ 교사(校舍)의 내부환경 유지·관리(신설)

-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학교설립자는 학교시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자에게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학교보건법」상의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금번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서 개정되는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신설학교 설립시 학교설립자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 학교의 쾌적한 환경위생관리와, 특히 신설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새학교 증후군’과 관련, 학교신축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전문기관에서 측정토록 하고 학교설립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개교이후 제기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신설8)

●심사내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등

-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 가능
-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 가능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국내교육기관보다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학교설립을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기준 완화 승인시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 이라 함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보다 구체화된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최소한의 교사, 교지, 교원확보' 로 수정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승인 항목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현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 및 전공, 학생정원, 교육과정 등 포함)
8.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현황
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12. 교원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외국학교법인(본교)의 분교 설립계획 확인서
15.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에 관한 협약서
16.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확보와 심의 및 승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 사립학교 설립허가 신청시에도 유사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 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기준

-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위원회’ 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함.

- 설립자의 자국내 법적지위
-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교원 확보계획의 적정성
- 설립자의 설립의지 및 건학이념
- 지역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세계적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설립심사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교원확보계획은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설립 심사의 기준에 학교의 국제적 명성도나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심사시 교원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의해 설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립심사의 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삭제를 권고함.
- 또한, ‘설립의지 및 건학이념’ 의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 ‘학교의 건학이념’ 으로 수정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 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함.⇒ 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학생의 정원

-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

-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초기(개교후 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위원회'에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인사 등 7인~9인의 위원으로 구성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위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학교는 재학생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 고등학교이하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내국인 입학생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함은 국내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수시여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 또한,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 또한 전체수급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함.

○ 학력인정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교과 중 국어, 사회(국사포함) (*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하여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주당 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도록 함.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주당 2시간 이상의 국어 등의 교과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수시여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정한 것이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 폐쇄승인 기준

- 외국학교법인 등으로부터 폐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함.

- | | |
|-------------------|--------------|
| 1. 폐쇄사유 | 2. 폐쇄예정연월일 |
|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4. 교직원의 처리계획 |
|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 |

☞ 외국학교법인 폐쇄에 따른 부작용 및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함.

○ 설립승인취소 절차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40일 이내 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규정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 등의 처분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제4조 제7항에 옮겨 규정하고,

-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제2,3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삭제하여 본조문 전체를 삭제할 것 ⇒ 수용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 지도·감독

- 외국교육기관의 매년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교육기관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황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토록함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여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삭제하겠음(교육인적자원부)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정부투자기관인 개발사업자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가 경영하거나 출자한 개발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함.
- 다만, 민간개발사업자의 공급가격은 종전대로 감정가격으로 함.

☞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용지 공급가격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용지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써,

- 학교는 도시 기반시설임에도 도로, 공원 등 타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감정가격으로 공기업으로부터 용지를 매입(조성원가의 3배)하고 있어 학교용지가격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 당정협의를(4회)를 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 7. 13)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함.

2. 문화관광부

집필자 : 정상봉 사무관(Tel. 2100-2446, sbj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영화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17개 법령, 1개 고시에 대해 신설 11건, 강화 17건, 내용심사 21건 등 총 4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44건, 비중요규제 5건)
- 심사대상 49 중 3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2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관광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2, 내용심사4 *중요 6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원안의결 2	강화1, 내용심사1 *중요 2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2, 내용심사4 *중요 6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5. 영화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53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2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4	강화4, 내용심사2 *중요 6
7.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5. 5. 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제 262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3 *중요 3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4 *중요 4
10.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강화1, 내용심사5 *중요 6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 연수검정규칙 제정안	제 270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24)	원안의결 5 개선권고 3	강화 4, 내용심사 4, *중요 8
12. 공연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관광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21)	원안의결 2	신설1, 내용심사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29 개선권고 17 철회권고 3	신설 11 강화 17 내용심사 21 *중요 44 *비중요 5

544

545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4)

●심사내용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소장과 이사의 자격(내용심사)

-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10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 초·중·고등학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경력이 있는 자
-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중에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5호의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연수(강화)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함.
- 청소년지도사의 연수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

☞ 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음에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지도사 응시교과목 중 전문선택영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자격연수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청소년 지도활동의 적정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사업계획서, 세입 · 세출결산서 제출 의무(내용심사)

☞ 제32조 제1항 제2호 규정중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를 ‘보조금의 사업내역’ 으로 하도록 개선권고함.

○ 과태료 부과대상(내용심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여 청소년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부과(내용심사)

☞ 연수과정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제화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청소년증의 재발급 수수료 부과(내용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재발급할 경우 5,000원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함.

☞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관련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강화)

- 상담실 또는 사무실 1개소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상담실과 사무실을 분리해 각 1개소씩 구비토록 함.
- 쉼터의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이 없었으나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중에서 2명이상 두도록 규정

☞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4)

●심사내용

○ 수련활동의 인증 신청 및 통보(내용심사)

- 인증위원회의 보완·개선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장방문후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이상 불이행시 5년동안 인증신청 불가' 를 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 '인증위원회의 보완·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함.

○ 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내용심사)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2,000호 이상 건축하는 주택시설사업계획, 대지조성 사업계획시 수련시설을 설치해야 함.

☞ 민간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단위를 '2,000호' 에서 '3,000호' 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함.

○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내용심사)

- 한국청소년수련원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함.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업무지도, 감독 등을 위한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조정(강화)

☞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강화(강화)

- 청소년 수련원의 생활관 숙박실을 4인이상 20인 이하의 규모에서 4인이상 10인 이하의 규모로 개정
- 유스호스텔 숙박실은 20인이하의 규모였으나 10인이하의 규모로 개정
- 신규 시설종류인 청소년특화시설이 만들어 집에 따라 시설기준에 특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

- 활동시설, 휴게실, 지도자실, 냉난방시설, 비상설비 및 기타 시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내용심사)

-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 1급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 또는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이론적 소양을 갖춘자
- 인증심사원의 선발 등
 - 인증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며, 인증심사원은 직무연수후 인증심사원으로서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인증심사원은 매2년마다 인증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재등록시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함.

☞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운동경기부 등 설치 면제 항목 삭제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규정(시행령 제17조제4항 2호)을 삭제함.

☞ 문화관광부에서 동 호 삭제를 철회

- * 제17조 4항 2호를 삭제하는 것은 재량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당초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제처 심사시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철회요청 수용

5)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2)

●심사내용

○ 비디오물 개념 변경(신설)

-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것(VHS 방식)’이라는 기존의 비디오물에 대한 정의에 온라인 영상물의 개념을 추가시킴.

* 비디오물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비디오물과 관련된 규제(등록건수 : 8건)가 아래와 같이 강화됨.

1. 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60조)

1-1. 국가 권위 손상, 폭력·음란 등을 과도하게 묘사한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음(안 제60조 4항)

1-2.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예, VHS→온라인 동영상)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야 함(안 제61조)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안 제55조)

* 현재 성인 PC방의 경우, 대부분 개인별로 칸막이가 된 방에서 PC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에 해당될 수 있음.

3. 비디오물 제작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등에는 종전의 비디오물 제작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안 제56조 3항, 4항)

* 온라인영상물 서비스업체(VOD 사업자)의 경우, 영상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DVD에 저장된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upload 하는 경우)하면 비디오물 제작업의 개념에 포함됨.

4.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수입, 복제하는 자는 상호 및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58조)
5.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안 제59조)
6.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제공하여서는 안됨. 등급구분을 위반한 시청제공은 금지됨, 등급분류필증은 영업의 승계의 경우 외에는 매매 또는 증여할 수 없음.(안 제63조)
7. 지방자치단체장은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등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67조)
8.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소의 간판제거·삭제, 영업을 위한 기구·시설물의 봉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할 수 있음(안 제70조)
9. 비디오물 등급분류, 등급재분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 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91조)
10.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제공하는 경우 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상호와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8조)

☞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로 인해 문화의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영화 선전물의 배포·게시의 제한(신설)

-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해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 선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서는 안됨

- ☞ 영화에 대한 광고·선전물은 특성상 자극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유해성 여부를 심의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화 선전물의 배포·게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4, 내용심사2)

●심사내용

○ 국제회의기획업의 변경등록 사항(강화)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영업소 신설시 여행업만 변경등록토록 한 것을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확대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 1항5호 국제회의기획업의 변경등록사항에서 영업소 신설을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관련 신고사항(강화)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정함.
 - 종합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5년
 - 일반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3년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안에 조건이행시에는 시설·설비내역서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조건부 허가를 얻은 자가 영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 ☞ 부지확보,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유원시설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조건부영업허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타 서류제출사항도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과징금 강화(강화)

- 법 제35조가 개정되어 과징금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3의 과징금액을 일률적으로 4배 상향 조정

☞ 과징금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령위반행위 방지 등 건전한 관광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강화)

-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4차위반시 사업정지 6월→신고업종 취소
-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카지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 60일 이상 휴업한 때, 행정처분기준 신설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 '신고업종의 경우 취소' 하는 것과 관련하여

- 신고가 취소라는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예 : 취소대신 영업장 폐쇄 등 사실행위로 변경 등)

○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고시 서류 제출(내용심사)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신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기재한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대표자 변경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기재 서류 포함.)

☞ 본적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고시 서류 제출(내용심사)

☞ 본적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강화)

-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설치의무, 화장실 설치의무, 유기기구가 정전·사고 발생

- 등으로 비상조치 필요시 이용객 대피시설(발전시설, 사다리 등) 구비
- 종합유원시설업에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설치의무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승마시물레이션, 메달 밀어내기 등을 삭제하고 몇 개를 추가

☞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 외에 유기사설을 포함시키고,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사다리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이며, '정전 · 사고 발생 등으로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를 명확화 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함.

7)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고시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통계전문기관의 기준(신설)

-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일정한 신뢰도를 갖춘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특구지정시 중요한 요소인 외국인 관광객수 산정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3)

●심사내용

○ 중재위원회 사무처 업무 협의(신설)

-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제5조(예산 등) ①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5조 1항은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의한 국고지원과 관련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고, 제5조 2항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협의문의 내용(신설)

-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문에는 공표할 정정보도의 내용 · 크기와 보도회수, 보도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포함하도록 함.

- ☞ 법에 규정된 협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보도물의 열람 및 수수료 징수(신설)

- 언론사는 피해자가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타 언론사와의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선권고함.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신설4)

●심사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분야를 전공(45학점, 2급) · 부전공(21학점, 3급)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120시간)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3급)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
- 2급인자는 5년, 3급인자는 3년 '한국어교육경력' 을 승급요건으로 정함.
 - 단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120시간)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3급)에 대해서는 승급 배제
-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12년이상 교육받은자에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각과목에 20% 가산점 부여

- ☞ 한국어 교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분야를 전공하지 않고 3급을 부여받은 자도, 일정 기간의 경력요건(5년)을 갖추면 승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 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혹은 「교원 자격검정령 제8조」와 같이 규정화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며, 필기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한 외국어 능력을 가진 다른 응시자와의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한국어교원자격취득자 우대(신설)

- 공공기관에서 국외에 한국어교사를 파견할 때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야 하며
- 문화부장관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권고해야 함.

- ☞ 모법의 근거가 미약하므로 철회를 권고함.

○ 국어능력검정시험 우수자 우대(신설)

-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에 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우수한자를 우대하여야 함.

- ☞ 모법의 근거가 미약하므로 철회를 권고함.

○ 국어상담소 지정(신설)

- 국어 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담전문인력, 상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국어상담소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자는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정된 기관은 운영 결과를 문화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함.

- ☞ '국어전문 기관 ·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며, 운영결과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예 : 매년 말), 신청서 서식의 '자본금' 항목을 구체화 · 명확화 하도록 개선권고함.

10)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1, 내용심사5)

●심사내용

○ 인터넷신문의 기준(내용심사)

- 발행주체가 법인이며, 취재 및 편집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일주일 게재뉴스 건수의 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등을 인터넷신문으로 정하도록 함.

☞ 언론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 자료의 신고·검증 및 공개(내용심사)

- 일간신문 경영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발행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사항을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신고의무(전체 발행부수, 구독수입 등)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 신문발전위원회의 규칙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함.

○ 인터넷신문개념 추가에 따른 규제 강화(강화)

-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 등'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정기간행물에 부과된 등록 및 변경등록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됨.

☞ 기존 정기간행물에 적용한 규제를 인터넷신문에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편집위원회 구성(내용심사)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활동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함.

☞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이므로 시행령안 제12조 1항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함.

○ 기금의 우선지원(내용심사)

-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모법의 근거가 미약하고 여타입법례가 없는 차별적 규제이므로 시행령안 제28조 2호·3호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함.

○ 기금의 용도(내용심사)

- 구독료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등 신문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정함.

☞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 복지단체 등의 신문구독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연수검정규칙 제정안(강화4, 내용심사4)

●심사내용

○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 강화(강화)

-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1년이상의 경기 혹은 지도경력이 있어야 1급 경기지도자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경.

☞ 우수한 경기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위취득 뿐만아니라 1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자격부여 응시대상자 요건 변경(강화)

-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의 평균성적이 70%이상이면, 2급경기·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연수 및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였으나 성적기준을 80%으로 상향조정
- 학교체육교사가 5년의 지도경력이 있으면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가 면제되었으나 경력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고, 3급요건이

삭제되어 학교체육교사는 경력요건 해당시 무조건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얻게 됨.

☞ 필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자격부여과정 응시자격의 성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원봉사지도자 및 체육관련 경력자 등과의 차별을 위한 것으로 학교체육교사 경력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필기검정 과락제 실시방법 변경(강화)

-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기존에는 과락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완전히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 기존에는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는 4할 미만 취득과목만 다시 응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전과목 재응시하여 평균 6할이상 전과목 4할이상 취득하여야 합격하도록 함.

* 과락제 : 평균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 취득자 중 4할 미만 취득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공신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체육지도자 양성종목 추가(강화)

- 경기지도자 자격종목 중 당구, 바이애슬론, 스쿼시 3종목을 추가하고 생활체육지도자 2·3급 자격종목을 통일
- 2급 생활체육지도자에 요트 1종목 추가, 3급 생활체육지도자에 게이트볼 등 18종목 추가(2·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종목이 같아짐)

☞ 정가맹종목 증가에 따른 자격종목 추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권한 위임 및 연간 운영계획서 포함내용 중 대상경기 관련 내용 현실화(내용심사)

- 개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으로 위임

- 대상경기의 구체적인 개최일시 · 장소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개최일정사항 포함.

☞ 연간 운영계획에 ‘고정환급률 투표권 및 고정배당률 투표권 각각의 예상 판매 금액’을 포함하고, ‘고정배당률 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함.

○ 체육진흥투표권 연간발행횟수 제한제도 개선(내용심사)

- 연간 발행횟수 300회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횟수를 승인하도록 규정

☞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1,000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로 규정하되, 문화부는 연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승인시 ‘종목간 형평성 유지,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수의 적정성, 사행성 방지 등’을 위한 방안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을 확인 · 검토할 것이며,

-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고,

- 문화부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통한 소매인 보호, 경기 종목간 균형발매 실시결과, 고정배당률식 투표권 발행에 따른 매출액 및 사행성 등’을 검토하여 1년(’06년말)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권고함.

○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환급률 적용기준 변경(내용심사)

-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환급률(50~75%)을 개별회차단위에서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

☞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같은 기간동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내지 70’으로 규정할 것이며,

-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고,

■ 문화부는 연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승인시 환급률을 60%로 지켜야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고배당에 의한 사행성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환급률 상황을 점검할 것.

■ ‘고정배당률 투표권의 분기별 환급률 정도, 사행성방지를 위한 환급기준의 변경(예, 월 또는 분기별) 검토’ 등을 1년(’06년말)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권고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기준 보완(내용심사)

- 동일 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 주최단체와 무관하게 개최된 해외경기를 대상으로 발행한 투표권의 수익금은 해당종목의 각 주최단체간 균등 배분

☞ 투표권의 수익금 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12) 공연법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강화)

- 기존에는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토록 함.(현재는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대상에서 제외)

☞ 공연법상 야외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문화부지침(문화관광부 공연86400-774, '02. 9. 17)에는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의 경우에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음악당 등 야외 공연장은 등록대상이 된다.' 고 명시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야외공연장은 실제 등록하고 있어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적 지원, 공연장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 폐지(강화)

-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인정될 경우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부여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하는 제도를 폐지

☞ 경력자일지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검정시험에 응시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경력자와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13) 관광진흥법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금지 및 동 규정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내국인의 관광복권 당첨시 당첨금 불지급(신설)

-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 내국인이 관광복권에 당첨된 경우에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 당연히 내국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고, 내국인이 동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던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한편,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내국인에 대한 판매 유혹이 존재하며,
-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바,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大綱 명시(내용심사)

- 현행 관광진흥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영업준칙을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제처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문제제기가 있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있는 영업준칙의 대강을 관광진흥법에 규정

☞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의 대강을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명확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3. 문화재청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2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19건)
- 심사대상 19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재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5건

<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24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26)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5, 내용심사 1 * 중요 6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개선권고 3 원안의결 10	강화 2, 내용심사 11 * 중요 13
계	-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신설 5 강화 2 내용심사 12 * 중요 19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설5, 내용심사1)

●심사내용

- 고도지정 절차를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시 30일이상 공람토록 함.(신설)

☞ 고도지정은 고도내에 지구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가져오는 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반영되는 사항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의 지정 · 변경 · 해제시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2이상 일간신문, 시 · 군 · 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30일이상 공람토록 함.(신설)

☞ 지구지정으로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 · 보존을 위한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바,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지정지구내에서는 토지 및 수면의 매립 · 절토 · 성토 · 굴착 · 천공 등 지형의 변경 행위, 수로 · 수질 및 수량변경행위, 소음 · 진동 유발, 오염물질 반출행위, 오수 · 분뇨 · 폐수 등의 살포 · 배출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 · 부착행위, 동물의 사육 · 번식 등의 행위,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신설)

☞ 고도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현상 변경 및 개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문화재보존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행령(안) 제 24조 1항 7호인 ‘기타 문화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는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함.(신설)

☞ 법체계상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철회권고

- 보존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사업시행자의 기술력보유인력 · 사업실적 증빙서류,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서류 등)를 규정함.(신설)

☞ 보존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신청절차 · 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구체적인 규제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 서면통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 등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규정(내용심사)

☞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시행규칙(강화2, 내용심사11)

●심사내용

○ 소유자가 국보 또는 보물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경우 재교부신청서에 의하도록 서식을 제정함.(내용심사)

☞ 재교부신청서식상의 항목은 재교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자격시험을 매년 1회이상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내용심사)

☞ 문화재청장이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시험 주관기관과 실시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시험의 원안의결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강화)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응시자격 박탈하고 있어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취소시 성명, 자격종목,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내용심사)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문화재수리를 할 수 없도록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자격증 교부절차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문화재 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등록시 시 ·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대장 등을 규정(내용심사)

☞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사무가 시 ·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행위 중, '수계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를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행위'로 보완하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 증설하는 행위'를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지 아니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설치 · 증설하는 행위 및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완함.(내용심사)

☞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수계 상류뿐만 아니라 수계 하류도 포함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필요조치로 원안동의하나, 건설공사 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보호되어야 문화재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으므로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 지형을 직접적으로 변형시키는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현상변경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해외단체가 외국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출예정일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를 위해 실시하는

기량심사에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관계전문가 등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고, 평가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내용심사)

☞ 행정지침(예규)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수 교육 이수증 교부의 공정성·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어 원안의결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 선임, 소유자·소재지·보관 장소 변경, 멸실·도난 등에 대한 신고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하도록 함.(내용심사)

☞ 관리자 선임 등 각종 신고서제출을 시·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나, 동 규정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접수시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에게 전달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시행령안 28조의 2(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제2항, 시행규칙안 제35조의 3(등록의 신청) 제1항, 시행 규칙안 제35조의 8(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 제2항 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한정되던 것에서 동산·유적지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등록기준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모든 문화재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이전 또는 외관 변경,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아닌 문화재의 보수 등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현상변경허가 대상 행위 및 관련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인력기준 ; 책임자 또는 책임조사원 1명이상, 조사원 2인이상, 조사보조원 3인이상, 보조원 3인이상, 보존처리요원 1인이상/시설기준 ;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위탁가능), 연구 및 정리시설)과 행위정도에 따른 발굴제한 기간(6개월~2년)을 정함.(내용심사)
- ☞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당해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
- 지표조사 대상인 건설공사를 '육지 또는 수중(내수면, 연안)의 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각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면적을 완화하고, 지표조사전문기관도 육상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요건을 정함.(내용심사)
- ☞ 지표조사 대상사업을 육지와 수중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현실성 있게 완화한 것으로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표조사전문기관의 요건도 적절한 인력과 시설 요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 방송위원회

집필자 : 정상봉 사무관(Tel. 2100-2446, sbj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편성 비율고시 개정안,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의 인정 기준·절차 고시 제정안 등에 대하여 신설 10건, 강화 5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4건, 비중요규제 3건)
- 심사대상 17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12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방송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8건임.

< 해양경찰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편성비율고시 개정안	제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2 *중요 3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의 인정 기준·절차 고시 제정안	제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4 *중요 4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3 내용심사 1 *중요 7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고시 제정안	제274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 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5	신설 10 강화 5 내용심사 2 *중요 14 *비중요 3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편성비율고시 개정안(신설1, 강화2)

●심사내용

-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강화)
 - 지역민방별로 축소비율을 차등화
 - 1차 지역민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방송) : 70%이내 → 69%이내(1%)
 - 2차 지역민방(경인, 청주, 전주, 울산, 경기) : 73%이내 → 71%이내(2%)
 - 3차 지역민방(강원, 제주방송) : 80%이내 → 77%이내(3%)

☞ 시행시기를 '05. 7. 1로 하도록 개선권고함.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신설)
 - EBS의 경우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방송시간의 0.3%이상

☞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정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EBS의 경우 교육용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TV3사의 30%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강화(강화)

– KBS의 경우, 전체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2% 상향조정(평균30%→32%)

■ KBS1TV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24%이상

■ KBS2TV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방송시간의 40%이상

☞ 시행시기를 '05. 7. 1로 하도록 개선권고함.

2)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의 인정 기준 · 절차 고시 제정안(신설4)

●심사내용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인정 신청자격 제한(신설)

– 신청인 및 신청단위

■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

■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단위

– 신청자격제한 사유

■ 방송을 개시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 당해 채널운영과정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익성채널 인정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인정 자격을 제한하는 ②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법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바, 동 고시에서는 삭제하고, 아울러, 제3조의 제목도 적절히 수정하도록 개선권고함.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절차(신설)

☞ 공익성 방송분야 인정 신청을 위한 절차로서 신청서류의 제출, 신청접수기일 및 신청서류의 반환금지 등을 정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및 인정취소(신설)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인정 및 인정취소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동 고시에서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공익성 방송분야 채널 구성의무(신설)

- 고시된 공익성 방송분야 각각에 해당하는 채널 구성의무 부과
- 다만, 방송사업자의 전송용량을 감안하여 고시된 방송분야 10개분야 중 8개분야 이상의 채널송출시 의무이행 간주

☞ 현재 채널구성에 있어서 오락성 채널의 구성비율이 높고, 교양성 채널의 구성비율이 낮은 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로서 채널구성의 다양성 확보로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익성 강화를 통해 시청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3) 방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3, 강화3,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근거 신설(신설)

- 방송법 개정에 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 징수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제13조도 법 체계에 맞게 삭제하되, 위성방송사업자 및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있어 준용하던 지역사업권료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제13조)을 동일하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절차 규정에 신설

☞ 방송법 개정('05. 5. 18)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종전의 지역사업권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와 거의 동일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공표방법 추가(강화)
 -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 ☞ KBS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방법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보급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 수신료를 받는 KBS의 경영상태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 및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종합 · 보도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단축(강화)
 - 종합 · 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종래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04. 1. 29 개정)에 규정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한 정보 공개여부 결정을 통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신설)
 -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500만원)
- ☞ 법의 위임의 범위(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에서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방송사의 재난방송을 행할 의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의 과태료라고 볼 수 없어 원안대로 의결
-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강화)
 -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방송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종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개정된 방송법 제75조 제2항에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방송광고 중 시보광고 기준 및 방법 신설과 기존 방송광고 조정(강화)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시보광고 신설(회당 10초, 매시간 2회, 매일 10회 이내)
 - 자막광고 축소(매시간 6회→4회)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라디오채널 포함.)
 - 시보광고 신설(회당 10초, 매시간 2회)
 - 토막광고 시간당 총허용시간 축소(5분 20초→5분)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채널
 - 시보광고 신설(회당 10초, 매시간 2회)
 - 토막광고 회당광고시간 확대(1분20초→1분30초) * 총 시간당 3분 제한은 동일
- 케이블·위성방송·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다른 유형의 광고를 포함, 시간당 광고 허용량(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시보광고 자율 편성

☞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광고 중 시보광고 기준 및 방법 신설과 기존 방송광고 조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 다만, 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과다노출 문제, 불법광고 성행에 대한 개선대책, 시보광고가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추진토록 하고,
- 시행 1년 후 각 방송매체들의 법상 광고허용량과 실제 광고실적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검토분석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내용심사)

- 당초 개정안 :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1인 지분 제한비율(30%)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를 제외
- 수정대안 : 최대주주와 고용관계 등 포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개인의 경우 및 최대주주와 채무보증 등 상호 재정적 영향력이나 관련성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

- ☞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소수주주의 임원취임 제한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당초 개정안은 방송법상의 공공성 확보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나, 수정대안은 당초 개정안에 비해 방송법상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에 동의함.
- 다만, 수정대안은 방송위원회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입법기술상 보완이 필요하며, 법제처 심의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
- 아울러, 방송위원회에 대해 사외이사제 활성화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4)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대상방송고시 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내용심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 해당분야 채널로 한국문화 방송분야는 '재단법인 국제방송 교류재단의 아리랑 TV'를, 사회적소수 대변 방송분야는 '재단법인 시민방송의 RTV'를 지정
- ☞ 방송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는 중계송신 대상방송은 국가기관 ·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 '05. 9월말 현재 방송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총 140개 법인 183개 채널 중 검토대상은 영상홍보원의 KTV 등 15개 채널임.
 - 이 중 당연 중계송신 대상 방송인 EBS와 공공채널(국회방송, KTV, OUN)를 제외한 8개 채널 중
 - '05. 8월 등록되어 운영실적이 없는 국군TV와 지자체 채널인 TV서울, 종교 채널을 제외하여 아리랑TV와 RTV 2개 채널을 중계송신 대상방송으로 선정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시 주된 상품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 강조 금지(신설)

☞ 패스트 푸드류의 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 세트메뉴에 대한 내용을 내보내면서 사은품(장난감시리즈)을 끼워파는 등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소비습관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신설)

☞ 학원, 과외, 학습교재 등 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공교육의 부실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 학원, 학습지 등을 광고하면서 학교의 공부보다는 학원, 학습교재 등 사교육이 학습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학교공부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학습지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 등은 소비자를 오도(誤導)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제 9 절 노동 · 여성 · 청소년분야

집필자 : 서나운 사무관(Tel. 2100-2443, nayoon@opc.go.kr)

1. 노동부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5건, 강화 14건, 내용심사 13건 등 총 62개건에 대해 규제심사(중요 36건, 비중요 26건)
- 심사대상 62건 중 3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10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35건임.

<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제 257차 행정사회 (2005.5.1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3, 강화 1 내용심사 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 257차 행정사회 (2005.5.11)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 6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원안의결 1	신설 1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60차 행정사회 서면심사	원안의결 1	신설 1

<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263차 행정사회 (2005. 6. 22)	원안의결1 개선권고4	내용심사 5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0)	원안의결5 철회권고1	신설 2,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6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7. 20)	원안의결3	신설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8. 16)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 4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 225차 경제2분과위 (2005. 8. 19)	원안의결3 철회권고1	신설 2 강화 2
1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 227차 경제2분과위 (2005. 9. 9)	원안의결 3	신설 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6)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 3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8. 직업안정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9)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5
1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35차 경제2분과위 (2005. 11. 25) 제 236차 경제2분과위 (2005. 12. 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4
계	-	원안의결 49 개선권고 10 철회권고 3	신설 35 강화 14 내용심사 13 *중요 36 *비중요 26

(2) 2005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주는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은행을 통해 납부하고,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공제근로내역 및 공제부금신고서'에 작성 · 제출하도록 하며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정정신고 하도록 함.(신설)

- ☞ 공제증지를 공제회에서 구입하는 기존 납부방식을 은행을 통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 납부실적 관리를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제가입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제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신설3, 강화1, 내용심사2)

● 심사내용

- 실업자직업훈련에 포함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훈련기준에 맞춰 실시하도록 함.(신설)

- ☞ 훈련의 질 및 훈련실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을 지원 ·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 지자체출연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정하고 비용지원 · 융자신청 및 지원 · 융자 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 직업능력 개발단체의 대상범위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출연연구기관만 가능하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비용지원·용자신청 및 지원·용자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기관 인정요건(훈련시간·기간 및 훈련내용)에 훈련실시기관에 관한 요건을 추가(강화)

☞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훈련시설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훈련실시능력이 부족한 기관들의 훈련참여로 인한 부실훈련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정부지원훈련규모비율(연간훈련실적의 50%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부실훈련방지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시설·인력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내용심사)

☞ 인력요건 중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 중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정지 및 폐업으로 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훈련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훈련기관 평가결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곳은 훈련위탁을 제한하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신설)

☞ 평가결과 부실훈련기관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을 제한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6)

● 심사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을 정하고,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으로 함.(신설)
-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를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률에서 등록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보험계약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요건으로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것을 정함.(신설)
- ☞ 사용자가 부담한 적립금이 사용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노동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노동부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부안의 동의여부를 사무국에서 문서로 확인하는 조건하에 원안의결
-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또는 금전신탁,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함.(신설)
- ☞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현행 금융제도 및 법령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유가증권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닐 조건 등의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신설)

-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위험의 분산, 투자한도 등을 정한 사항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교육을 실시해야 할 사항을 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 ☞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부현황, 적립금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자 관련사항, 운영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사항,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신설)
- ☞ 퇴직연금제의 운영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 심사내용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사유(파산선고 등) 등을 적용제외 사유로 함.(신설)
- ☞ 임금 및 퇴직금의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불능력 있는 사업주의 지급 지연·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신설1, 강화1)

● 심사내용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받은 체당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부정행위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감경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법률에서 부정이득 추가징수의 근거를 정하였고,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의 추가징수액으로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요구에 불응한 경우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 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검사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과태료 상향 조정 (강화)
- ☞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5배 인상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현재 금액의 5배로 인상하여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6)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신설1)

● 심사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최초 평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상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 실시(신설)
- ☞ 산업안전기본법의 개정(의원입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바, 평가주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품질 · 환경 · 안전 분야 생산기술의 변화주기가 3년인 것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내용심사5)

● 심사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위탁제한 효력이 미치는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위탁제한 처분기준의 확대적용을 철회하도록 하고, 위탁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위탁제한 가능하도록 한 것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위탁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훈련기관 지부·분원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적용하고, 부정행위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금액에 따라 계약해지, 위탁제한 등의 조치를 세분화하도록 개선권고

○ 훈련기관 및 수강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인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훈련비용의 반환, 수강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인정제한 효력이 미치는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인정제한 처분기준의 확대적용을 철회하도록 하고, 인정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인정제한 가능하도록 한 것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훈련기관 지부·분원 등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적용하고, 부정행위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금액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제한 등의 조치를 세분화하도록 개선권고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결격사유 임원을 3월 이내에 개입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훈련정지 1월, 3차위반시 훈련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개별기준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하며, 아울러 1차위반과 2차위반을 동일하게 ‘시정명령’ 행정처분으로 한 것은 ‘1차위반시 권고, 2차위반시 시정명령’으로 하도록 개선권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또는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내용심사)

☞ 자격정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부정행위의 양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정한 것인 바,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이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훈련 미 실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2, 강화3,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종사자를 추가하고, 동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정함.(신설)

- ☞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주기를 현행 6월 1회에서 3월 1회로 단축 (강화)

- ☞ 최근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 (강화)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를 통하여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위해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 취급하는 유해인자 등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도록 함.(내용심사)

- ☞ 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수행할 대상 업무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특수건강진단결과 의사가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강화)
- ☞ 개별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관련서류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기간 (5년)만큼 보존할 의무를 부과 (신설)
- ☞ 건강검진 관련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6호에 이미 존재하여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철회권고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2,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작업시 사전에 작업순서, 근로자 역할범위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내용심사)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타워크레인이 지지없이 설치될 수 있는 최대높이로서 형식마다 다르며 크레인 설계강도 계산시 결정됨) 이상으로 상승시킬 경우 벽체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도록 함.(신설)
- ☞ 근로자 및 주변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지지의무 및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및 조립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2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함.(신설)
- ☞ 타워크레인은 설치높이가 높고, 무게중심이 윗부분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기준 및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작업제한 풍속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함.(내용심사)
- ☞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감액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비율을 정한 것으로, 감액비율 10%는 (구)최저임금법의 '취업기간 6월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감액적용비율 10%를 원용하여 정한 것이고, 임법예고 기간 중에도 노사간 이견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신설4)

● 심사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주는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제출된 현황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여성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여성고용비율 설정과 관련하여 직급별 기준은 제외하도록 하고, 여성고용비율을 고시가 아닌 최소한 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사업주가 제출한 시행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남녀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한 자, 노동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강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설2, 강화2)

● 심사내용

-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신설)
-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공표는 평가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이는 민간기업 영리행위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므로 철회권고
- 안전보건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업무정지로 인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장 중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별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심의사항에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기타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을 추가 (강화)
- ☞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심의사항을 추가한 것은 기계 · 기구, 설비 및 원재료를 신규 도입한 경우 조작 및 취급미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사용중지 등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명령받은 사업주가 그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화)
- ☞ 안전보건 ·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3)

● 심사내용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조합은 당해 계약사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조합원별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신설)
-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회사가 파산 등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법에서 정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취소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 회사의 파산 등 취소사유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시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함.(신설)

☞ 우리사주 조합원별 부여한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저축률,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3)

● 심사내용

○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요건에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을 추가(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시 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인 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하여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차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함.(강화)

☞ 출국만기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성격으로, 보험의 일시금액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의 적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3년 근무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6월에서 1월로 단축하되 그 횟수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함.(강화)

☞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 숙련 인력의 신속한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제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 심사내용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의 명칭을 철도운송산업 기사·기능사로 변경하는 한편, 민간에서 이들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강화)

☞ 신설·명칭변경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신설·운영을 금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자격취득자의 대외 신임도를 제고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16)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함.(내용심사)

☞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건강회복기간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보호휴가기간을 달리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학계의 의견, 외국사례 및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유산·사산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그 지급받은 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유산·사산휴가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의 예에 따른 제재수준의 형평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18) 직업안정법 개정안(신설2, 강화2, 내용심사1)

● 심사내용

-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업소개가 금지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18세 미만자'에서 '청소년(19세 미만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으로 변경하고,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의 직종에 소개함을 금지 (강화)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의 직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동 대상자에 대한 직업소개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고용관련 법령간 규제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누구든지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강화)

- ☞ 기존 규정은 ‘근로자를 모집한 자 등’이 아니면 허위구인광고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바, 근로자를 모집한 자 등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적정한 고용질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운영 및 구인 · 구직자에 대한 관리방법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 ☞ 기존 법은 민간사업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사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쳤으나, 개선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법규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근로자공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시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면서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내용심사)
- ☞ 종전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왔으나, ‘보고’의 의미에 당연히 ‘자료제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바, 자료제출요구를 위해서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문언을 정비한 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행정조사시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여서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및 개선명령(법 제35조의 2)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 유료직업소개소의 유사명칭사용 금지나 개선명령 위반은 구인 · 구직자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정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신설3, 강화1)

● 심사내용

- 기존의 운영 중인 고령자인재은행 외에 전문(고급·중견)인력으로 근무 후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정보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경비 등을 지원하되, 현행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사유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 규정 등을 전문인력정보센터에 동일하게 적용함.(신설)

☞ 전문인력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써, 전문인력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사유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는 센터의 부실설립·운영을 방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이며 현행 고령자인재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그 밖에 고령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신설)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내용 및 절차,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보고를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고령자고용정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우선고용직종 고용부진 및 기준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확대 요청 미이행시’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정년계획 변경권고 미이행시’ 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사업주가 제출한 정년연장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고용관련 서비스 일시중단 조치를 하여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또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고령자고용 부진 사업주 등이 그 개선계획서 미제출시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어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바,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법 제23조의 경우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재수준도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 심사내용

○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및 각종징수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징수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도래 전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고지한 후 보험료 및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납기전 징수제도를 규정 (신설)

☞ 타 사회보험과의 제도상 차이(자진납부 제도, 보험료 납입주기가 원칙적으로 1년인 점, 급여제한이 불가한 점 등)로 인하여 보험료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납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정당한 신뢰를 제한하는 점, 체납처분 · 강제집행 등으로 그 영업을 폐지하게 된 체납액이 미미한 영세사업장의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 또한 규제비용에 대비하여 실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기전 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을 납부고지액(체납예상액) 500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 또한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규정에는 성격상 이 법률 개정안에 준용하기 부적절한 부분(국세포탈 우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조문형식을 준용이 아닌 입법내용을 직접 기술하는 형식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당연가입대상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된 소급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분할납부 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분할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보험료 등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함.(신설)

- ☞ 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하여 소급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사업주의 일시납부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실적인 체납보험료 회수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여 원래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함이 타당하고, 또한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사업주에게 납부능력 심사를 위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함은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법인에게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가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국세기본법 준용)하는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차 납부의무 부과(국세기본법 준용) (신설)

- ☞ 민법·상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봐도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당위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실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출자자 및 사업양수인에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규제이고,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비해 조세납부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국세기본법 등 조세관련 법률상의 여러 조세보전제도들을 무차별적으로 준용함은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서 여타 수단에 의해서도 소기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철회권고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료 등을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 주무관서에 당해 체납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요구시 이를 제공하도록 함.(신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각종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체납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성실납부 풍토 조성이 가능하고 보험료 수입확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악성체납 등의 자료를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여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신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만 명단공개, 자료제공 등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허사업의 제한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 여성가족부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2)
- 심사대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8)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4)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성발전 기본법(신설1)

● 심사내용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신설)

☞ '05. 3. 24 법률 제7422호로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불이행시 제재수단 없음) 두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조치결과 제출의무를 부여하므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강화1)

● 심사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중 취사부 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였으나, 개정안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 61~80인 이하시설(약 2,100개소) 및 121인 이상 시설(약 1,400개소) 등의 경우 취사부 1인의 인건비가 절감(연간 1,200만원)되어 보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집필자 : 김자영 사무관(Tel. 2100-2447, kjyoung@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 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건, 총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3, 비중요1)
- 심사대상 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4건임.

<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 제정안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원안의결 1	신설 1 * 비중요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 중요 3
계	-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유해약물 결정고시(신설1)

● 심사내용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유해약물로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줄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를 정함.(신설)

☞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규제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어 원안의결,
다만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입법개정절차를 추진할 것.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설3)

● 심사내용

- 성범죄자 중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함.

이 때, 성명·생년월일·직장 및 거주지의 주소·사진을 등록토록 하고 정보의 등록기간을 5년으로 정함.(신설)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의 항을 신설할 것을 개선권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등록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 및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①등록 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음.(신설)

☞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자료의 열람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인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음.(신설)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3호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제 10 절 보건복지분야

집필자 : 권오상 사무관(Tel. 2100-2422, kosikosil@opc.go.kr)

1. 보건복지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도에는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노인수발보장법, 모자보건법, 약사법 시행규칙 등 4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2건, 강화 38건, 내용심사 34건 등 총 1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71건, 비중요 43건)
- 심사대상 건 중 6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7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38건임.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강화 1, *중요 3
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9)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4. 모자보건법	제 248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26)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5 *중요 5
5. 전염병예방법	예비심사 (2005. 2. 25)	원안의결 5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 5
6. 식품안전법 기본법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	신설 6 *중요 6
7. 약사법 시행규칙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제 252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16)	철회권고 2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	강화 9 *중요 9

600

60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8. 국민건강증진법	제 257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1)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9.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2
1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 258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8)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1. 의료급여법	예비심사 (2005. 6. 3)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내용심사 3 *중요 3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 5
14. 식품등의 회수·공포 규정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05. 7. 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05. 7. 1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7. 암관리법	예비심사 2005. 7. 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예비심사 2005. 8.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05. 8.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0. 정신보건법	예비심사 2005. 8. 28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05. 9. 2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2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강화 4 *중요 4
23.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05. 9. 29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예비심사 2005. 9. 2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혈액관리법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2
27. 실종아동지원법 시행령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2 *중요 2
28. 실종아동지원법 시행규칙	제275차 행정사회분과 (2005. 10. 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2 *중요 2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9)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5 *중요 5
30. 노인수발보장법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철회권고 1 개선권고 8 원안의결 6	신설 15 *중요 15
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예비심사 2005. 11. 24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3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05. 11. 2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2 *비중요 2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30)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79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3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5. 국민건강보험 재정간전화 특별법 시행령	예비심사 2005. 12. 15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36.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예비심사 2005. 12. 2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강화 1 *비중요 2
37.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05. 12. 22	철회권고 1 원안의결 4	강화 2, 내용심사 3 *비중요 3
3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예비심사 2005. 12. 22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 3
39.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예비심사 2005. 12. 23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40. 건강검진 실시기준	예비심사 2005. 12. 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2 개선권고 36 철회권고 6	신설 42, 강화 38 내용심사 34 *중요 71 *비중요 43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혈액관리법 시행령(내용심사1)

●심사내용

- 혈액원에 대해 정기평가(매 2년)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내용심사)
- ☞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내용심사2, 강화1)

●심사내용

- 혈액원 허가시 ▲의료기관 개설 증빙서류, ▲제조관리자 의사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제조관리자는 ▲위생적 관리 및 종사자 교육, ▲혈액제제 출고 검사 등의 의무를 부여함.(내용심사)
- ☞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규정하고, 동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향후 법률 개정시 보완토록 개선권고
- 부적격혈액을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토록 정함.(내용심사)
- ☞ 부적격혈액에 대한 관리방법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다른 폐기물 처리방법과 비교하여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현혈경력조회서, 부적격 혈액 처리기록 등을 10간 보관토록 규정(강화)
- ☞ 혈액부작용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다른 의료기록 보관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2)

●심사내용

○ 지방의료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 의료유인 등의 방지를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회계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신설)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4) 모자보건법 개정안(신설5)

●심사내용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의사,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함.(신설)

☞ 지도의사의 성격,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등이 불명확하며, 형식적인 임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규정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예방 조치,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규정함.(신설)

☞ 산후조리원의 적정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산후조리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신설)

☞ 산후조리원의 적정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산후조리업자에게 정기보고와 출입·검사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규정함.(신설)

☞ 산후조리원의 적정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 등의 경우 제27조제1항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효과는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토록 규정함.(신설)

☞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로 인하여 선의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토록 개선권고

5)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신설6)

●심사내용

○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험발생시 행정기관의 긴급정보 발령 및 생산 · 수입 등 잠정 금지 조치 권한, 사업자의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함.(신설)

☞ 긴급정보 발령, 생산 · 수입 금지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해제요청 또는 불복 등 구제 절차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 식품섭취에 따른 위험 발생시 행정기관의 검사명령 및 사업자의 검사결과 제출 의무를 규정함.(신설)

☞ 위해의 신속한 제거 등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이력추적을 위한 행정기관의 필요 검사, 서류 열람 등의 권한, 추적조사의 결과 생산 · 유통 등의 금지를 명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함.(신설)

☞ 별도의 조항으로 위해정보 등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관련 사항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자의 회수, 행정기관 통보, 제품회수 현황 및 사유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함.(신설)

☞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신속한 제거 등을 위해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식품안전 조사 또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해 및 사업자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함.(신설)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해 및 사업자 정보' 등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사업자가 제10조(검사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신설)

☞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6)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9)

●심사내용

○ 생물학적제제등의 자료제출 면제기준을 '최종원액이 동일한 것 → 최종원액이 같은 제조소에서 제조되어 동일한 것' 등으로 변경함.(강화)

☞ 일반제제와 상이한 생물학적제제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에 ▲전문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 등을 추가함.(강화)

☞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한 경우' 부분은 삭제하고, 규제의 시급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변경,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 자료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해당품목을 신고한 자가 부담토록 규정함.(강화)

☞ 비용부담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판정 등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신설)
- ☞ 지정 취소 등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규정할 사항이므로 철회권고
- 재심사를 받는 자는 사용성적조사계획서와 연차별 조사 진행상황을 제출토록 규정함.(강화)
- ☞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변화 및 추이를 조사 · 심사하는 재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내용액제에 양치제를 포함하고 불량 의약품 처리결과 보고의무, 조제용 의약품 제조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소량포장 제조 의무 등을 추가함.(강화)
- ☞ 양치제는 내용액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부분은 삭제, 소포장 의무화는 일시적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조제용 의약품' 용어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수입자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신설)
- ☞ 약사법은 수입업을 허가(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수입자확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 판매관리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함.(강화)
-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준수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행정처분 효과는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된 약국에 승계되며, 기타 개별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규정함.(강화)

☞ 약사법 제 61조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위임규정이며, 행정처분의 승계는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동 부분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담배 1갑당 부과되는 현행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05.7.1일 반출량부터 558원으로 인상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담배값 인상이 담배소비량 감소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효과가 인정되므로 인상안에 대해 원안의결

8)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2)

●심사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설)

☞ 과다 지급된 지원금 등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신설)

☞ 긴급지원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9)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유통실명제를 위해 한약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검사필증 등을 추가함.(강화)

- ☞ 검사필증은 도 · 오염 등에 대한 관리수단 및 법적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0)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3)

●심사내용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제품명 등을 공표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국민건강 보호 및 영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의사 또는 한의사는 필요시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중독 환자의 혈액 · 배설물 등을 성명, 채취일자 등을 표시 · 보관토록 규정함.(내용 심사)
- ☞ 식중독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또는 해촉시 보고의무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자율적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과도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1) 식품위행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4,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정밀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5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자는 1년간 모든 제품에 실시하며 기타 무작위검사 실시 등을 규정함.(강화)
- ☞ 부적합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현행 주기적 정밀검사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원안의결

-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거래기록 작성·보관 의무, 대형음식점(150㎡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보관 의무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규정함.(강화)
- ☞ 이력추적을 통한 위해요인 제거, 소비자 알권리 충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원안의결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절차 및 위생교육필증,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내용 심사)
-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업의 경우에는 동 증명서에 대한 제출 면제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미표시, 위해식품 회수 미이행 및 회수 불성실 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등을 규정함.(강화)
- ☞ 유동적인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등'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GMO 구분유통증명서의 규제존속기한(5년) 폐지함.(강화)
- ☞ 구분유통증명서의 유전자재조합식품검증의 한계, 악용소지, 향후 검증방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존폐여부를 5년후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12) 식품등의 회수·공포 규정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서 위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사용금지한 원료·성분, 시민식품감사인이 회수조치를 권고한 때 등을 회수대상 식품으로 규정함.(강화)
- ☞ 권고사항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수대상 식품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 권고한 경우를 제외토록 개선권고

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심사내용

- 공중위생영업 변경사항에 영업자의 성명을(법인은 대표자) 추가함.(강화)
- ☞ 영업자와 법인 대표자는 각종 사안에 대한 책임자이므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밀폐형 또는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세제의 종류에 '석유계용제'를 추가함.(강화)
- ☞ '석유계용제'의 주성분인 벤젠, 부탄, 사이클로헥산, n-헥산, 톨루엔 등은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외부 배출 억제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발한실과 목욕실을 별개의 구조물로 구획하고, 업소 내 설치된 편의시설 (PC방·비디오방·노래방·휴게 및 일반음식점·헬스장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득하도록 규정함.(강화)
- ☞ PC방, 비디오방 등의 인·허가 요건 및 절차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추가 규정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찜질방에 숙박을 목적으로 요 또는 침구류 등을 비치·반입할 수 없으며, 24시 영업장은 22:00이후부터 청소년의 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함.(강화)
- ☞ 일시적인 수면과 휴식을 위해 대형타월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적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허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도록 개선권고, 또한 침구류 반입 금지 및 청소년 출입 금지는 규제일몰제 5년을 조건으로 의결

14) 혈액관리법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외부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강화)

☞ 잠복기(항체미형성기)나 헌혈혈액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동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형식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 복지부장관은 수혈업무지침을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강화)

☞ 수혈사고는 사후적, 금전적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지침, 수혈관리 위원회 등 사전적 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15) 실종아동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법인,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수행 실적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건으로 원안의결

○ 실종아동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대학에서 심리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7급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교과목 이수에 아동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학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 경력 자격요건을 9급 이상으로 확대토록 개선권고

16) 실종아동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함.(▲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허위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관계공무원 출입, 조사 기피 : 200만원, ▲실종아동 신고의무 위반, 신상카드 송부의무 위반 : 50만원, 내용심사)
- ☞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자’ 보다 높게 설정하고, ‘실종아동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토록 개선권고
- 법 6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된 때’의 구체적 사례를 ▲ 약취, 유기 · 유인 · 사고 ·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되지 않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함.(내용심사)
- ☞ 신고의무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절하게 사례가 열거되었으므로 원안의결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5)

●심사내용

- 안경법인 설립시 정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등기, 설립인가 취소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 일반적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설립 등기, 인가 등과 설립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안경법인은 안경업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또한 안경업소 개설 안경사 및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 ☞ 법인의 업무범위는 법률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안경법인이 아닌 자는 안경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 유사명칭의 범위가 모호하고 명칭사용으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철회권고

○ 안경법인은 2인 이상의 안경사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보고토록 규정함.(신설)

☞ 현행 법률이 안경법인의 구성원을 안경사로 제한하고 있는 바, 안경법인 구성원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된 경우 일정기간 자격정지, 유사명칭 사용자, 구성원 가입사실 미신고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신설)

☞ 유사명칭에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18)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신설15)

●심사내용

○ 이 법에 의한 수발관리요원, 수발사 및 수발시설이 아닌 자는 수발관리요원, 수발사 및 수발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권고

○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로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6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로서 수발인정을 받은 자를 급여 대상으로 규정함.(신설)

☞ 수발인정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개념인 ‘6월’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발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거나 본인의 의뢰에 의해 수발평가관리원이 작성하며, 수발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발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신설)
- ☞ 별도로 실시되는 수발인정 신청과 수발서비스 신청을 통합 · 조정하고, 불확정 개념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에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수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신설)
- ☞ 급여의 제한은 가입자의 수급권(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증도 등을 고려한 ‘시설입소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도록 개선권고
- 공단은 수발시설의 급여종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제공하고 노인복지법 위반사실(노인 학대 및 감금 등) 및 위반자(청소년은 제외) 등을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규정함.(신설)
- ☞ 이용자 선택권 및 알권리 보호와 학대행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공단은 가입자, 수발시설 등에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수, 소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설)
- ☞ ‘관계서류’ 및 ‘보수, 소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적용대상(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를 동 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신설)
- ☞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준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평가관리원은 적용대상자 및 수발시설에 대하여 수발급여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급여의 질을 제고하도록 규정함.(신설)
- ☞ 실효성 있는 질 관리를 위해 세부적인 절차, 내용, 자료제출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수발시설 설치자는 폐지, 휴업 등을 신고하고, 수발시설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지정 철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이 필요, 단 급여의 실시에 중대한 차질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정철회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설)
- ☞ 시·군·구(노인복지법)와 공단(노인수발보장법)에 중복신고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일원화하고, 불확정개념인 ‘수발급여실시에 중대한 차질 및 공익상 필요시’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개선권고
- 수발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신설)
- ☞ 양도 및 압류 등을 제한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은 자, 허위의 행위에 관여한 자,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 등에게 부당수발급여 및 수발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신설)
- ☞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 세대원에게 부당 급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또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단위’로 한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권고
- 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국민건강보험요율에 수발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동일 보험료율을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함.(신설)
- ☞ 사회보험의 원리상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정

방식도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공단은 수발시설로부터 비용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수발시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신설)

☞ 제도의 체계상 선 서비스실시, 후 상환방식이 적합하므로 원안의결

- 공단, 평가관리원, 수발업무종사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신설)

☞ 수발급여서비스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유사명칭사용자, 시설기준 위반 및 신고의무 해태, 수발급여의 거부, 비용의 허위 · 부당 청구,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신설)

☞ ‘유사명칭 사용금지’ 철회에 따라 동 부분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직장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인 ‘비상근 근로자’ 중 법인의 비상임 이사 및 기타 비상임 임원 등을 제외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비상임 이사 등을 직장보험가입 대상으로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한 긍 · 부정적 효과 등을 보완하여 차기 법령 개정시 재심사(철회)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강화)

- ☞ 사회 환경의 변화로 미성년자의 경제활동 기회 및 소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보험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원안의결

2. 식품의약품안전청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의료기기재평가에 관한 규정, 수의약품 등 관리규정,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대상지정,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실기 기준,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 25개의 고시에 대해 강화 20건, 내용심사 53건 등 총 7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60건, 비중요 13건)
- 심사대상 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0건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1. 의약품·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05. 1. 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개선권고 4	내용심사 4 *중요 4
3.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 249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16)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4.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	강화 8 *중요 8
5.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내용심사 4 *중요 4
6.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개선권고 2	내용심사 2 *중요 2
7.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제 251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9)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내용심사 5 *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8.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정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 254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6)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4 *중요 4
9. 의료기기재평가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05. 4. 11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 3
10. 식품공전	제 255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13)	철회권고 2	강화 2 *중요 2
11. 검사능력관리규정	예비심사 2005. 4. 2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12.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 1
13. 식품공전	제 259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4.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개선권고 3	내용심사 3 *중요 3
15. 의료기기임상시험 실시기준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철회권고 1 개선권고 7 원안의결 1	내용심사 9 *중요 9
16. 식품공전	제 264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9) 제 266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13)	개선권고 2	강화 2 *중요 2
17.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 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8. 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기준	예비심사 2005. 7. 2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19.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예비심사 2005. 8. 1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 2
20. 의약품등 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지침	제272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14)	철회권고 3 개선권고 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8 *중요 8
21.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예비심사 2005. 9. 2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내용심사 3 *비중요 3
2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3 *중요 3
23.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273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2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24. 의약품안전용기 포장대상 지정	예비심사 2005. 11. 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25.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277차 행정사회분과 (2005. 11. 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계	-	원안의결 28 철회권고 9 개선권고 36	강화 18 내용심사 55 *중요 60 *비중요 13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의료기기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용심사4)

●심사내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 제출자료의 요건으로 ▲생산국 정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인정기관, 등록 품질관리심사기관 발행, ▲제조회사명, 제조소, 소재지 등 명기, ▲동일제품임을 검토받기 위하여 기술문서 등을 제출, ▲변경허가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제품 확인시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변경허가의 경우 시행규칙이 제출토록 규정한 서류 이외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시험용의료기기 수입시 제출서류 및 절차, 취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내용심사)
- ☞ 수입품목허가 또는 임상계획승인신청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면제토록 개선권고
- 의료기기 시험검사 신청시의 제출자료, 시험검사성적서의 인정범위, 전수검사 의료기기의 범위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며 관련업무 시행 차질 우려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법령에 근거조항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개선권고)

- 시험검사기관의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및 심사, 업무범위 및 검사대상 등, 평가, 보고 및 감독, 개선명령 및 등록취소, 세부운영규정 승인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및 등록취소, 세부운영규정 승인 등의 조항은 삭제하되, 기타 조항은 향후 조속히 법령에 근거조항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개선권고)

2)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내용심사1)

●심사내용

-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4월15일까지 의료기기산업협회 장에게 제출, 허위·과대·축소 보고의 금지, 관련 서류의 2년 보존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허위 보고 등의 금지, 관련 서류의 2년 보존 등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3) 식품 등의 표기기준 개정안(강화8)

●심사내용

- 진공포장한 농·임·수·축산물의 경우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토록 규정함.(강화)

-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식품등의 명칭은 '본래적 특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일반적이 아닌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강화)

- ☞ '본래적 특성'은 용어의 추상성 등으로 규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상품성을 고려한 제품명의 사용이(예: 고래밥 등) 필요하므로 철회권고

- 병과류의 최소유통단위별 용기 등에 제한적으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규정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원칙적으로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식품첨가물 표시규정에 ‘천연카페인’을 포함토록 규정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0.15mg/ml 이상 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명시하도록 규정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한입크기 용기를 사용하는 젤리제품에 대하여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규정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특정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표시토록 규정함.(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4) 의료기기 기술문서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의 변경허가, ▲ 임상 시험용 조건을 삭제시, ▲ 신개발의료기기와 4등급 품목중 안전성·유효성의 확보 정도가 미흡한 의료기기, ▲ 수출용, 군수용 또는 관수용 의료기기를 국내 시판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안전성 · 유효성 관련 문구를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로 구체화하고, 임상시험의료기기 또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상시험용 조건 삭제시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시 첨부자료의 세부요건을 규정함.(내용심사)

☞ 세부요건 중 ‘유효율 평가’의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므로 현행대로 ‘유효율이 66.7%’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시 작성에 필요한 요령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기술적인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의결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대한 변경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규정함.(내용심사)

☞ 기술적인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의결

5) 의료기기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안(내용심사 2)

●심사내용

○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는 정기, 수시로 실시, ▲허가증 사본,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기술문서등의 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 ▲대표자, 소재지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평가기준을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중대한 변경’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위임근거가 없는 수시심사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사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관련업무 시행의 차질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의결(개선권고)

6)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제정안(내용심사 5)

●심사내용

○ 조직은행 명칭, 은행장, 처리방법, 보관방법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관련업무 시행의 차질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조속히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의결

○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의뢰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안전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번역된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번역된 자료를 제출토록 한 조항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인체조직의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반환, 폐기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고시에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인 행정공백 등을 고려하여 위임조항(法·승 15조)의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안의결

○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부작용 발생원인 확인 및 감염확산 방지 등을 위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복수의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 문서로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인체조직 오염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

7)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용심사4)

●심사내용

-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기 관련 임상정보, 국내 · 외 사용현황 및 연구논문 등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문헌정보로 규정(내용심사)

☞ 정의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문헌정보’로 변경토록 개선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성 정보의 수집 ·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단체를 ‘협조단체등’으로 지정 할 수 있고, 행정상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협조단체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의무이므로 관련조항 또는 문구를 철회권고

-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안전성 정보를 알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고된 의료 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자발적 회수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이므로 원안의결

- 의료기기취급자는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보고의 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개선권고

8) 식품공전 중 김 및 인삼 기준 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김(조미김)의 납 기준을 5ppm으로 설정함.(강화)

☞ 기준의 과학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며, 위험성, 원인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철회권고

○ 인삼음료의 카드뮴 기준을 0.1ppm으로 설정함.(강화)

☞ 기준의 과학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며, 위험성, 원인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철회권고

9)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재심사 대상 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수입업자의 시판후 조사를 위한 업무기준서 작성·관리, 시판후조사 계획서 제출, 시판후 조사 실시, 시판후 조사의 연차보고, 관련 문서의 재심사 완료일부터 2년간 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함.(내용심사)

☞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되, 불명확한 '의료기기의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10) 식품공전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식품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디에틸헥실 아디페이트(di-(2-ethyl hexyl) adipate, DEHA, DOA)의 사용금지를 추가함.(강화)

- ☞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뜨거운 국물, 배달문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랩 종류에는 DEHA의 사용을 금지, 다만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DEHA의 사용에 대한 경고문구와 함께 표시방안 도입을 강구토록 개선권고

11)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제정안(내용심사3)

◎심사내용

- 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의 요건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 승인서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고시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승인서의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으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두고 전문적 판단 · 관리를 하는 것이 국내 · 외 일반적 원칙이므로 조속히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치료적 사용은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응급상황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우선 사용하고 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의료기기법령은 치료적 사용에 대해 승인여부 또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으나, 치료적 사용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청장의 사용승인’을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의 사용승인’으로,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 관찰’ 부분은 삭제, ‘청장에게 보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 등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자는 증례기록서를 작성하고 이상의의료기기반응에 대하여 즉시 청장 및 개발자 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개발자에 대한 보고는 자율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사항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2)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 제정안(내용심사9)

●심사내용

- 임상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윤리 규정, 회적 이익과 피험자 보호이익 형량, 피험자의 보호 및 과학적 타당성 등 임상시험 실시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원칙을 규정함.
(내용심사)
- ☞ 윤리규정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일반원칙을 통한 의무를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을 부적절하므로 철회권고
- 임상시험실시 계약은 문서로서 연구비, 지급방법, 조기종료 및 임상시험 중단시 미사용 연구비 반납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이며, 열거된 내용이 피험자 보호, 투명성 담보 등과 공익 목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으로 동 부분은 삭제토록 개선 권고
- 임상시험실시기관 장에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사무절차 등 실시 규정 마련, 심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심사위원회의 표준작업지침서 마련, 임상시험실 설비와 전문인력 구비 의무, 의뢰자 또는 청장에 협조 의무, 관련서류의 보존 의무 등을 부여함.(내용심사)
-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할 수 없으나,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필수적기관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마련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다만 협조 의무 등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임상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피험자 권리 보호, 임상시험 승인·보완·반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내용심사)
-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할 수는 없으나, 동 기관이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필수적 기관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마련을 조건으로 의결,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중지 또는 보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 시험자는 필요한 교육 ·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 적합한 장비나 시설을 확보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필요한 교육 · 훈련 및 충분한 경험’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적절한 수의 시험담당자와 적합한 장비나 시설’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상의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개선권고
- 의뢰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이 있으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자를 시험책임자로 선정하고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자료집 등을 제공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이 있으며, 적절한 자원을 보유한 자’의 개념은 다의적이며 추상적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임상시험 관련 질문에 대해 피험자 등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어야 하며, 임상시험 관련 발생 손상은 시험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의무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가 보상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다의적인 ‘만족할 수 있도록’과 보상범위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위한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임상 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원안의결
- 시험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또는 진행상황 서면 요약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상 의료기기반응 발생시,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시 시험책임자와 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일시중지 및 조기종료에 대한 보고 의무는 삭제하되, 의료기기법령에서 부작용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 사항은 조속히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

13) 식품공전 개정안(강2)

●심사내용

- 원료 건조고추의 포장단위 30kg 이하 및 투명포장재질 사용 의무화, 제조공정에는 금속성 이물제거장치를 설치하고 별도 고추씨 첨가 금지, 생산된 고춧가루의 밀봉 포장 등을 규정함.(강화)
- ☞ 포장방법과 단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권고규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식품공전에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 권고하고 이물제거장치는 권고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
- 냉동 대구머리는 국제협약상 식용(HS 0303-60)으로 분류되어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이 관련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포장단위는 20kg이하로 규정함.(강화)
- ☞ 포장단위 관련,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따라 권고규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식품공전에서 냉동대구머리의 포장단위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14)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식물성 생약 중 갈근 등 134품목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은 30ppm 이하로 검인 등 72품목은 200~1500ppm 이하로 규정(강화)
- ☞ 천연유래함유량 조사, 임상실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대로 시행하는 것에 의결, 다만, 향후 동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준 시행에 따른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준비할 것

15) 의약품등 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지정지침 제정안(내용심사8)

●심사내용

- ‘의약품 등’ 이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으로, ‘의약품등 품질검사’라 함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의약품 등 수입자가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 등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로 규정함.(내용심사)
- ☞ 법 66조에 의한 검사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므로 고시와 내용적으로 상충되며, 품질검사의 내용은 약사법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므로 철회권고
- 지정신청시 일반현황,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현황, 주요시험검사 수행업무 및 다른 수행업무 등과 검사원 이력서, 위 · 수탁검사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위 · 수탁 계약서를 첨부토록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동 서류는 삭제토록 개선권고
- 품질검사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교육은 받은 자료서 약학, 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하며, 품질검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약사로서 의약품 등 품질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함.(내용심사)
- ☞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품질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고시에서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다만 약사법은 품질검사책임자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기관에도 이에 준하는 자격기준이 필요하므로 향후 상위법령 정비 및 문구수정을 조건으로 의결
- 위탁품질검사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또는 수입시 갖추어야 하는 약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기구 및 시설을 비치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적절한 품질검사를 위해 기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원안의결

- 위탁검사기관장은 허가·신고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분기별 검사실적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당초 제조업소 품질검사시 준수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도 준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의무를 고시에서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상위법령 정비를 조건으로 의결

- 위탁검사기관장은 위탁검사 의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부분은 의뢰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연대책임 등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안이므로 철회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내용심사)

☞ 지정취소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정취소의 별도 법적근거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있는 바, 추후 법령정비를 조건으로 원안의결

- 의약품 등 품질검사 업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 시행규칙[별표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시설기준령시행규칙을 준용함.(내용심사)

☞ 상위법령에서 적용토록 하지 않은 내용을 고시에서 준용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철회권고

1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내용심사3)

●심사내용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6개 식품류의 의무적용 대상 적용시기를 매출액과

중업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2012년까지 적용토록 규정함.(내용심사)

- ☞ HACCP 적용의무화는 이미 2003.8 상위법령에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업체의 규모별로 단계적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다만, 2007년 중 HACCP 의무적용 실태 및 효과, 영세업체의 적용가능성, 영세업체 우선 적용 기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여 규개위에 보고
- HACCP 적용을 위한 영업장관리·위생관리·제조설비관리·용수관리·보관 운송관리·검사관리 및 회수프로그램 등 90개의 선행요건을 규정함.(내용심사)
- ☞ 준수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의적 추상적인 용어(‘영향을 받지 않는’, ‘청결히 관리’,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위생적’, ‘적절한 등)는 삭제 또는 수정토록 개선권고
- HACCP 관리 책임자에게 적용업소에 대해 선행요건 등 HACCP 관리의 적절한 이행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규명, 적절한 조치 및 기록 관리할 의무를 규정함.(내용심사)
- ☞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없이 고시에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다만 관련 기록은 보관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위법령 정비를 조건으로 의결

17)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식물성 생약의 개별 유해중금속기준(mg/kg 이하)을 납(5), 비소(3), 수은(0.2), 카드뮴(0.3)으로 각각 규정함.(강화)
- ☞ 카드뮴, 비소, 수은의 기준은 생약에 대한 국제기준과 동등하며, 납 기준의 경우 한약재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녹색표준과 동일하므로 원안의결. 단, 고시 적용 후 1년 동안의 한약재의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

18)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모든 식물성생약 대상으로 하는 잔류 농약기준 10성분 추가(메톡시클로르, 싸이퍼 메쓰린 등) 개별생약 대상 농약 및 허용기준 9품목 27성분 신설, 식품공전 기준 준용 생약에 갱미 등 33품목 규정, 미설정 농약 검출시 적부판정을 위한 잠정기준으로 유럽약전 'PESTICIDE RESIDUES' 항의 기준 등을 규정함.(강화)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잔류 농약기준을 강화할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약잔류기준 설정원칙 등을 고려하여 검출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선 개별적 기준을 설정하고, 식품과 한약재간 검사체계가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검사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개선권고

제 11 절 통일 · 외교 · 국방분야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통일부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건, 비중요규제 1건)
- 그중 1건은 철회권고,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통일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 254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6)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기간을 정기운행은 2년, 부정기운행은 1년으로 제한

☞ 운행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는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법률 또는 시행령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시 필히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함

○ 남북한간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철도차량의 정기운행은 운행노선별로 2개 사업자로 제한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은 우리 정부의 승인과 북한측의 합의 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 사업의 성패여부는 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질 사항으로 사업체의 건전육성은 정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할 것을 권고함.

2. 외교분야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여권법에 대해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비중요규제 2건)
- 그중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를 권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외교통상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여권법 개정안	제 265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6)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2 *비중요 2
계	-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2 *비중요 2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위험지역 여행자 여권효력 정지

-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으로 인하여 그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해외지역을 여행하거나 체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외국의 입국 또는 체재에 한하여 여권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위험지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와 타국의 유사한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아래 사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①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험의 원인의 유형과 내용
- ② 예외규정인 ‘영주, 취재·보도, 인도, 공무상 목적 등’의 경우에 대해 그 유형과 내용
- ③ 추상적인 ‘현저한 위험’의 개념
- ④ 여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예 : 심의위원회 등)와 관련한 규정 및 위임근거 마련

○ 효력정지된 여권으로 위험지역에 입국한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해 처벌,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여권법에 의한 정당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한 자에 대해 밀항단속법을 적용함은 법 논리상 무리이므로 철회권고

- 여권법 2조에 의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한 것은 밀항단속법상 밀항의 개념(법 2조 1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밀항단속법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적법한 여권의 소지자가 출입국이 금지된 국가에 입국시 그 적법한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만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밀항단속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동 단서 조항은 철회하고, 여권정지 조치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할 것을 권고함

3. 국가보훈처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12건의 신설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4건, 비중요규제 8건)
- 심사대상중 4건은 개선권고, 8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보훈처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2건임.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25)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원안의결 8	신설 8 *중요 1 *비중요 7
계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4	신설 12 *중요 4 *비중요 8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고용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종 신설

- 2005. 1. 1일 철도청이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체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분류번호	업 종	대상업체별고용비율(%)
60100	철도 운송업	6

됨에 따라 고용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60100)을 신설함.

- ※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1% 가산 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7%가 적용됨.

- ☞ 철도 운송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시철도 운송업과 유사한 업종이므로 철도 운송업의 고용비율 수준을 도시철도 운송업의 고용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5%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고용비율을 5%로 하도록 개선권고함.

○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 상한선 설정안을 당초안대로 30%로 하되,

- 05년과 06년도 시험결과와 가점합격자 추이를 반영하여 07년까지 가점합격자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취업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 동의함.

2)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 영업권이 부여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살리되, 「장애인 복지법」과의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4호(정부산하기관), 제5호(초 · 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된 각급학교)를 삭제하여 「장애인 복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개선권고함.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 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안 제22조 제1항)
- ①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③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품위손상의 개념이 모호하며 품위손상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22조 제1항 제3호(상습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자)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함.

4)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신설8)

●심사내용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절차 등 규정

-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범위 · 절차,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절차 등 규정

※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특수임무수행자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고 면제금액 중 반액(50%)은 국고보조, 나머지 반액은 학교 부담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수업료등의 면제범위 및 절차,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동의함.

○ 고용의무 업체의 범위, 고용비율

-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제조기업체의 구분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대상 업체 및 공기업의 고용비율
- 공기업 및 공공단체의 기준을 규정

☞ 「예우법」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 고용비율의 범위 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고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동의함.

○ 사립학교의 고용비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자를 포함하여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퍼센트를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한 전체 고용비율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함.

○ 고용명령

-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 등의 장은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함.
-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함.

☞ 특수임무수행자로 인하여 관련기관 · 단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연령과 상한인원의 제한도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의 제한과 동일하므로 원안동의함.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직급 지정

☞ 법률에서 위임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및 범위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 관련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안동의함.

○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제한기준 설정

- 정당한 사유없는 취업불이행자 :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면직된 자 : 1년
- 징계로 면직된 자가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의 취업지원횟수 : 1회

☞ 모법(25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 관련법과 동일하므로 원안동의함.

○ 차별대우 시정조치결과 통보

- 차별대우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통보 하도록 함.

☞ 모법(27조 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른 유공자 관련법과 동일하므로 원안동의함.

○ 취업사실 등의 통보

- 업체 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또는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지방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 하도록 함.

☞ 다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제를 하고 있어 원안동의함.

제 12 절 일반행정분야

집필자 : 양상근 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행정자치부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5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5건, 비중요규제 9건)
- 심사대상 1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 250차 행정사회분과 (2005. 2. 2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16)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5. 26)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 261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비중요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 272차 행정사회분과 (2005. 9. 14)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2 *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1. 1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1	신설 6 강화 5 내용심사 3 *중요 5 * 비중요 9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지자체의 공사발주·물품계약 등에 있어, 당해 시·도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강화)
 - 일반공사 : 50억 → 70억원 이하
 - 전문공사 : 5억 → 6억원 이하
 - 건설기술용역 : 1.5억 →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 현행 한도금액은 '95년이후 동결되어 건설업계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건의해 온 사안으로서 지역평균 업체수(800여개) 등 고려시, 지역제한 하에서도 경쟁체제의 근간은 유지할수 있는 점과 개정안을 통해 외지업체 수주후 불법 전매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점, 지역제한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 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별지8호 서식)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시하도록 규정(강화)

-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는 법령상 허용된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개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확인절차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가 (일반인의) 광고물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신설)
 -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되지 않아야 함.
 - 가로수나 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됨.
 - 도로 · 제방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됨.
 - 주민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됨.
- ☞ 일반 광고물에 비해 특례가 인정되는 국가 · 지자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통행방해, 주민불편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현재 시 ·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을 시행령(별표2)에 정함.(신설)
 - 접합부위 및 전기설비 상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장에 여부 등
- ☞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시 · 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됨.(원안의결)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해 퇴직급여의 1/4,

퇴직수당의 1/4를 감액(*파면된자의 1/2수준)토록 규정(강화)

☞ '05.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상에 금품수수 등 금전비리로 징계해임된 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감액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국가공무원법(33조)」상 공직재임용 제한 등에 있어, 해임된 자에 대해 파면된 자 보다 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상근임원을 두는 지역금고의 자산기준 및 상근임원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내용 심사)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인
- 500억원 이상 : 3인 이하

☞ 본 개정안은 '04. 10. 20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규제심사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당초 법률 개정안에 모든 금고에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던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에만 의무화하도록 개선권고)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행자위, '05. 6. 20)시 제시된 부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의결

○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준법 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신설)

☞ 피규제자가 상근임원을 두는 금고(542개) 및 연합회(1개)로 한정되는 비규제 사항으로서 신탁·농협 등 유사한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비교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금고의 출연금 납입비율을 예탁금 및 적금합계액의 30/10,000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강화)

- ☞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비율(0.78%)이 미연방예금보험공사 권장비율(1.25%)에 미치지 못해 출연금 납입비율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 금융기관인 신협 · 농협의 출연요율(50/10,000범위내에서 기금관리위가 정함)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2)

◎심사내용

- 법 제14조의 4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주식백지신탁계약 대상이 되는 '재정경제부 ·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를 '재정경제부직제중 금융정책 ·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으로 규정함.(내용심사)
- ☞ 본 규제안에 대해 법률(안) 심의시 국회(행자위)에서 논의된 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은 자체규약 또는 관련법률에 의해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법 제1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하한가액을 3,000만원으로 정함.(내용심사)
- ☞ 법률개정안 국회심의시 논의사항 및 금융기관에서 신탁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저한도 금액(3,000만원) 등 고려시,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법 제14조의 5 제8항의 주식의 직무관련성이라 함은 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거나, 지휘 · 감독하는 경우를 말함.(신설)
 - 1~7(생략)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의 입안 · 집행 또는 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되는 업무, 수사 · 조사 · 감사 · 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등
 - 8 : 기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
- ☞ 제8호 규정을 '기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7)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함.(강화)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재산 전반을 등록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도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의 한 종류이므로 등록재산에 포함할 타당성이 인정됨.(원안의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정기변동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에 응하여야 함.(신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추후 신고누락으로 인한 소명 등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승인과 관련하여 밀접한 업무 관련성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신설)

☞ 법17조 제1항에는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시, 해당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로부터의 자료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2. 소방방재청

집필자 : 양상근 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8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3건 등 총 5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37, 비중요16)
- 심사대상 5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5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3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방재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38건임.

<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옥내소화전 등 5종)	예비심사 (2005. 2. 15)	원안의결 5	내용심사5 *비중요5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수동식소화기 등 2종)	예비심사 (2005. 7. 19)	원안의결 2	내용심사2 *비중요2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제267차 행정사회분과 (2005. 7. 20)	철회권고 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6	신설10 *중요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 23)	원안의결 2	신설2 *비중요2
소방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유수검지장치 등 5종)	예비심사 (2005. 10. 7)	원안의결 5	내용심사5 *비중요5
재해구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0.24)	원안의결 2	신설2 *비중요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274차 행정사회분과 (2005.10.19) 제159차 규제개혁위원회 (2005.10.21)	개선권고 6 원안의결 5	신설8,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11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78차 행정사회분과 (2005.11.23)	개선권고 6 원안의결 10	신설16 *중요16
계	-	원안의결 37 개선권고 15 철회권고 1	신설 38, 강화 2 내용심사 13 *중요 37 *비중요 16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소방용기기(옥내소화전방수구, 완강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방호스, 가스관 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내용심사5)

●심사내용

- 옥내소화전방수구 등 5종의 소방용기기 형식승인과 관련된 기술적 시험기준, 시험조건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본체강도 시험, 밸브대강도 시험, 낙하시험 등의 구체적 시험조건 및 기준 등
- ☞ 제품검사와 관련한 기술적·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비중요규제 사항으로서 세부 시험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됨.(원안의결)

2) 소방용기기(수동식소화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수동식소화기 등 2종의 소방용기기 형식승인과 관련된 기술적 시험기준, 시험조건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 전기전도성시험 기준 및 조건, 응력시험·표면장력시험 관련 공학적 산식 등
- ☞ 제품검사와 관련한 기술적·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비중요규제 사항으로서 세부 시험조건은 ISO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므로 타당성이 인정됨.(원안의결)

3)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신설10)

●심사내용

- 풍수해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신설)

☞ 기초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소방방재청장은 약정체결시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 소방방재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예측과 풍수해보험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음.(신설)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 가용한도 등을 고려한 일정 수준의 한도 설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변경내용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신설)

☞ 본법 제정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는 보험약정 체결권자인 소방방재청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 변경내용 역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초서류 변경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변경내용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의 처분을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하도록 개선권고

○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만료 이전에는 「상법」 제6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대상시설물이 철거, 멸실, 양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험가입자의 소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신설)

☞ 풍수해 위험기간(1~2월, 7~9월) 직후 해지사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조치이나, 피해발생이 특정월(4~5월, 8~9월)에 집중되는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법'을 4년간 운용한 결과, 평균 중도해지율은 극히 낮은 수준(0.36%)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규모 보험해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무리가 있음.

중도 계약해지 예방을 위한 방안은 가입시기를 특정(*농작물법 : 3월)하거나, 보험료 환급 감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회를 권고함.

○ 보험사업자는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함.(신설)

☞ 통상적인 위험 및 이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기관리 방식이므로 원안동의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결산상 손실이 생긴 때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할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음.(신설)

☞ 유사 정책보험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에도 도입·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연도별 발생편차가 큰 풍수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일정한 위험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풍수해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음.(신설)

- 대상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 자금의 대출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제29조 규정에 의해 대상시설물을 풍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로부터 영농·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출받거나, 무상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또다시 고질적 채무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 정책적 차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풍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신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의무가입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의무화하기에는 상당한 저항 등 실현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풍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사업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의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보험의 관장 기관으로서 당해 보험사업의 적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보험가입자가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만, 보험대상시설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신설)
- ☞ 풍수해 피해를 입은자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95조 규정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이사, 감사 등이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등의 경우, 보험사업과 관련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신설)
- ☞ 보험업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상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서 제재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비상대처 계획수립 대행자의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지진분야, 댐 · 저수지분야, 해일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기술사 3, 기사 3명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신설)
- ☞ 유사법령인「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분야별 대체인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등 기준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행자의 위반사유별로 경고, 업무정지(1월~6월),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정함.(신설)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처분행위도 경고→업무정지(1월~6월)→등록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5) 소방용기기(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송수구,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점검기술기준,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내용심사5)

●심사내용

- 유수검지장치 등 소방용기기 형식승인 및 방염성능기준과 관련된 기술적 시험 기준·조건 등을 규정함.(내용심사)
 - 굽힘반복시험 횟수, 압력 손실값의 오차범위 등

☞ 제품검사와 관련한 기술적·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는 비중요규제 사항으로서 세부 시험조건은 UL, FM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므로 타당성이 인정됨.(원안의결)

6) 재해구호법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기부금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기부물품은 모집한 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구호기관의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에 전달하고, 전달받은 구호기관은 해당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기부물품을 배분하여야 함.(신설)
 -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시 7일이내에 모집된 기부금품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집비용을 제외한 기부금은 중앙 및 지역위원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함.

☞ 현행, 허가제 하에서 사실상 단일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이 모집 및 배분을 일괄, 추진해 오던 것을 배분위원회를 설치, 지역별 적정 배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기부금품모집 등록말소 사유에 ‘모집자가 모집완료후 모집된 금액을 중앙 · 지방위원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여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추가하고,
-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기부금은 중앙 · 지방위원회에서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고, 모집 물품은 중앙 · 지방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함.(강화)

☞ 특정지역에 기부금품 배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간 합리적 배분을 추진 하고자 하는 ‘배분위원회’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분의 재원이 되는 모집 금품을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토록 하는 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아울러, 모집된 금품을 반환함에 있어 기부자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배분위원회로 반납, 당초 모집목적(이재민 전달)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신설8, 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및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신설)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의무는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8조에 의거,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영업허가 · 신고시 동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임.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제출의무도 불가측하게 발생하는 화재발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개시 이전에 기본적인 소방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원은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다중이용업주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자 중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강화)

☞ 초기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종사원 등 현장에서 대피업무를 보조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소방교육을 받게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함.(신설)

☞ 최근 초대형 복합상영관, 미로형 유흥업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구·비상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전에 숙지시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제11조 제1항 규정의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 제1항, 강화)
- 소방본부장 등은 정기점검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서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제1항의 규정중 '점검결과서 제출의무'를 '일정기간 자체 보관' 의무로 수정하고, 제출을 전제로 한 제2항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하여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내용심사)

-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수명령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다중이용업소가 일정한 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이상으로 밀집한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다수 밀집해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 ☞ 개수명령 등의 근거를 규정한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제정법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음. 다만, 개수명령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화재위험평가’ 실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통해, 종전 소방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던 ‘개수명령 등의 대상’ 선정의 객관성 ·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평가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가 행정기관이므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다만, 제2항 내지 제6항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료할 것이므로 ‘화재위험평가’ 관련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로 등록하도록 하고,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신설)

- ☞ 다중이용시설의 고층화, 복합시설물의 급속한 증가 등의 추세 감안 시, 제반 환경 요인을 전문적으로 분석 ·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 설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평가대행자의 등록제한 사유 및 준수사항 등도 유사 법령인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평가대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 유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신설)

1~7호(생략)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8호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8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는 행정처분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요 행정처분 사유는 제1호 내지 7호에 대부분 규정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결과서,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조치내용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시·도의 공보,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음.(신설)

☞ 위반업소 공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므로 단순히 ‘법령위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한때 부과하기 보다는 수차례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개요건을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등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신설)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 안내문의 비치 또는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7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고의·상습적인 법령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으로서 경제적 제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경제적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조항에도 규정된 제2호(안내문 비치 등 미이행)의 규정은 삭제하고, 제3호규정은 앞에서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조항을 검토하면서 이미 삭제를 권고한 바 있으므로 본 조항에서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평가대행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신설)

☞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의 성격상, 감독의 범위는 업무수행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수준이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 출입, 관계서류검사 등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감독의 범위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만을 명할 수 있는 조문’으로 수정토록 개선권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신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호(생략)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7호(생략)

☞ 본 법(안) 제10조에서 ‘다중이용업주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주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1호 규정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영업주’로 명확히 수정토록 하고

5호규정은 앞에서 제15조(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규정을 검토하면서 점검결과 제출의무는 삭제토록 권고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도 삭제토록 개선권고

8)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16)

●심사내용

○ 시·군·구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리기관 등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시·군·구본부장은 점검결과를 관리기관 및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신설)

☞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물 등을 정기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원안의결)

○ 관리청은 제3조의 점검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신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관리 및 이에 기초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급경사지의 관리청과 관리기관은 지정·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하·활동·전도·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측관리 시설물 훼손금지 의무를 부과(신설)

☞ 계측관리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변위감지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조치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확한 계측관리 유지를 위해 동 계측관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과태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 본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신설)

☞ 준공도서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 등이 공사완료 후 제출하고 있는 서류이므로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 흙 ·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 제거할 수 있음(신설)
- ☞ 유사 법률인 「측량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사항으로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기본규제안은 동의. 다만, 측량법 등 유사법률과 같은 취지로 '피해보상 규정'을 별도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1조 제1항, 신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조제3항의 급경사지(*사유지) 관계인에게 시 · 군 · 구의 '급경사지정비 중기계획'을 통지하여 정비토록 하여야 함.(제5항)
- ☞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는 피규제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처분에 의해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며, 행정기관 내부계획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 확보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11조 제5항의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제4조제3항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 통보받은자 중 다음 각호로 정하는 자는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 보수보강 등을 시행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제15조 제1항, 신설)
 - 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 등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관리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급경사지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응급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음.(제2항)
- ☞ 제2항의 행정대집행 관련규정은 본법 제정안 제17조에서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관리청 및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신설)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근원적 위험해소를 위해서는 인근 토지 등에 대한 권리취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협의 취득 불가시, 공익적 차원에서 당해 토지·물건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신설)
- ☞ 안전점검 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원안의결)
- 시·군·구 본부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신설)
- ☞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으로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구역안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해현장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사용,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신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를 준용하는 조항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위험 제거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근 거주자 등에 대한 작위 또는 수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됨.(원안의결)

○ 제5조에서 정한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위한 계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신설)

☞ 본법안에서 계측업 등록권자(소방방재청장, 제22조)와 영업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자(시장 · 군수 · 구청장, 제23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본 법에서는 급경사지 점검 및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주요 규제사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등록권자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계측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의 폐쇄,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 ·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신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계측업을 한 때
2.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28조에 의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5. 계측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등록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 제1호 규정은 법리상, 등록자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본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벌칙조항에 별도 규정

제6호 규정중 '일정기간 이상'은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유사법률과 동등하게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규정

제7호 규정은 행정처분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및 예측가능성 저해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신설)

☞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을 등록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등록결격사유 및 영업취소·정지 규정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로 판단되므로 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계측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제28조), 영업취소 및 정지(제23조)'에 준하여 관련조항을 신설,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과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서 성능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신설)

☞ 계측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신설)

1. 계측관리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자 또는 사회혼란을 야기한 자
2. 제5조 제4항에 의한 상시계측관리 시설물을 훼손한 자
3. 제6조에서 정한 비탈면 준공도서 제출을 미 이행한 자
4.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이전·훼손한 자
5.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7조 제1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미 이행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조항에 규정된 의무사항들의 실효적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 경찰청

집필자 : 양상근 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3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비중요 4)
- 심사대상 4건 규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청의 2005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5. 9.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5. 12.27)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4	강화 3 내용심사 1 *비중요 4

(2) 2005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라, 토요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을 08시~21시(중전 : 12시~21시)로 규정함.(강화)

☞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전략과제인「육상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사안으로서 규제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2)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교육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테러 대응요령 등을 교과목 추가(강화)
- ☞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비중요규제 사항으로서, 국제기준 등에 견주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신규 채용된 경비원은 근무배치후 1월 이내에 신입교육을 받아야 하되(*종전과 동일),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원(노사분규 등 다툼이 있는 장소)을 새로 채용한 때에는 근무 배치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강화)
- ☞ 규제사항인 교육이수 의무(배치후 1달이내)는 이미 규정된 상태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원안의결)
- 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의해 '배치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내용심사)
 -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재개발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시설물 설치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등
- ☞ 상위법에 기본 규제사항(24시간전 신고)이 규정된 상태에서,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수(총 2,418개 업체) 및 사용주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 법무부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내용심사 4건의 신설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건, 비중요규제 19건)
- 심사대상 20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11건, 개선권고 7건, 철회권고 2건을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무부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8건임.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	제 252차 행정사회분과 (2005. 3. 1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신설 3 *중요1, 비중요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 256차 행정사회분과 (2005. 4. 27)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내용심사 4 *비중요 4
변호사법 개정안	제 263차 행정사회분과 (2005. 6. 2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 5 *비중요 5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	제 270차 행정사회분과 (2005. 8. 24)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8 *비중요 8
계	-	원안의결 11 개선권고 7 철회권고 2	신설 16 내용심사 4 *중요 1 *비중요 19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신설3)

●심사내용

○ 질서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 요구·자료제출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은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 검사 등을 할 수 있음.

○ 행정청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행정조사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행정조사 요건을 행정조사 목적에 맞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는 질서위반행위 조사요건을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함.

○ 가산금 징수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상습체납자 예방, 법규준수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제재수단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횟수 이상 체납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할 수 있음.
-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는 체납 사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경미한 법규위반 사안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 법규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하되, 관허 사업의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함.

○ 이를 위해 관허사업의 제한 적용대상을 ‘당해 사업에 관한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 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며,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횟수 이상을 체납한 자' 등으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아울러, 과태료 체납정보에 관한 정보제공이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막연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공익목적'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4)

●심사내용

- 외국인 유학생 등의 학적변동사항 통보의무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일반연수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직원은 매 반기별로 외국인유학생 등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유학생 등의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 ☞ 유학 및 어학 연수생의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단속 비용 증가, 유학 체류자격을 불법체류 목적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초청한 초청자(대학)에게 유학생 등의 불법체류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 외국인 유학생 상담활동이 대학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24조의 8 제2호의 규정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 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출입국 승무원 및 승객 명부 보고의무
 - 출입항보고서 중 승무원 명부 및 승객 명부에 국적,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행문서의 종류와 번호, 환승객인지의 여부(승객에 한함) 등을 기재하도록 함.
 - 항공기에 관한 사항도 항공기의 종류, 등록기호 및 명칭, 국적, 출항지 및 출항시간, 경유지 및 경유시간, 입항지 및 입항시간, 승무원 · 승객 · 환승객 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출입항보고서는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에, 출항의 경우에는 출항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제출하도록 함.
- ☞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여권상 성명 등이 기재된 승객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사전승객정보제도(APIIS)는 입국부적격자 등을 판별하기 위해 현재 미국·호주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기재요청 사항이 미국이 요구하는 제출정보보다 완화된 것으로 입국부적격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 판단되며,

- 항공기에 관한 정보제출 사항은 출입항보고서를 통해 예전부터 시행해 온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정보제출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 출입항 보고서를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입항 2시간이전에 제출' 하도록 한 것은 현재 API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로 항공기가 출항하는 경우 출항 30분전에 출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항공사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사증발급의 기준

- 법률에서 위임한 사증발급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사증을 발급 함.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 지 여부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지 여부
 -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 지 여부
 -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사증발급기준으로 제시된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등'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여 사증발급 신청인이 사증발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 이를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허위초청 등의 금지(법제7조의2), 선박 등의 제공금지(법제12조의2), 외국인 고용의 제한(법제18조 제3항내지 5항) 등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은 자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에게 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등

☞ 시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외국인이 발급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발급신청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고, 법령위반자등에 대해 시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필요한 제한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3) 변호사법 개정안(신설5)

●심사내용

-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충실유지를 위해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금지) 및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자기자본의 100분의 10)
- ☞ 법무법인(유한)의 타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은 자본의 충실한 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공인회계사법 등의 예에 비추어 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안 제13조의 3)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사건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함.
 - 광고물에는 손해배상책임자,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시해야 함.
- ☞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건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다만, 광고매체를 좀 더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알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외에도 각종 부정기간행물, 단행본, 안내책자,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는 등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개선권고함.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험 및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청구당 1억원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잔여 보상한도액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유한책임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금 담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로 생각되지만, 가입사실 신고의무부여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함.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구성원 주재

- 주사무소에는 10년이상 경력의 법조인 1인을 포함한 구성원의 과반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함.

☞ 법률사무 서비스의 원활하고 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지방변호사회의 법무조합 제출서면 사본 비치

-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법무조합이 제출한 서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함.

☞ 법률소비자에게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4)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신설8)

●심사내용

○ 사인으로부터의 소송수임 등 금지

- 공단은 사인 또는 사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 ·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 못함. 다만,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기본적으로 국가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성격과, 그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는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 정부에서 출연한 국가소송공단이 사인이나 사기업으로부터 소송수임 등을 함으로써 영리단체화되고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다만,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수임 금지

- 공단은 국가 또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지 못함.

- ☞ 국가의 로펌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공단의 성격상, 국가의 상대방을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 공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제한

- 공단소속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퇴직후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대상이 되도록 함.

- ☞ 공단소속 변호사가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해 퇴직후 상대방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은,

1.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점
2. 변호사법상 일반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
3. 법무공단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일반법무법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변호사법 적용을 위해서는 위반시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대상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 공단 이익금 처리의 제한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적립하여야 함

☞ 법무공단의 이익금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1. 이익금을 공단 임의로 사용할 경우 내부직원들끼리 분배하는 등 공단이 사적 영리집단화할 우려가 있고, 법인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법률과 정부출연에 의해 설립되는 공단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3. 환경관리공단법 등 다른 공단의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부과

- 이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정부법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이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상표법에 의한 업무표장 등록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조항은 철회할 것을 권고함.

○ 규칙 제정에 대한 승인

- 공단이 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단의 주요 규칙 제정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1. 국가출연금으로 설립하고, 국가업무의 위탁수행을 하는 법무공단이 그 업무범위내에서 행정기관적 지위를 갖는 점에서 업무의 공익성과 공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공단의 영리단체화 변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규제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무공단의 공익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동조항 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제정 뿐만 아니라, 법개정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제정'을 '제·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감독 및 과태료 부과

-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업무·회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단에 대한 지시, 업무·회계보고, 서류 등 검사를 허용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 법무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성 유지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등의 입법례에서도 공익성 담보를 위해 동일 수준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 보조금 상계에 대한 승인

- 공단 설립 첫 해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국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소송수입료 및 법률자문료와 상계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단 설립 첫해에 국가가 지원한 운영보조금에 대해 국가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소송수입료 등과 상계할 경우 상계집행의 적정성과 정부부처간 소송위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지도나 협의 등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조항은 철회를 권고함.

5. 국무조정실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 (비중요규제 1건)
- 심사대상 1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무조정실의 2005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제 257차 행정사회분과 (2005. 5. 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심의요청 · 심의 결과 반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 · 시행 ·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사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 라 한다)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는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동 사업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은,
 - 민간사업자 등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이해갈등을 사전에 예측·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갈등으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갈등관리에 필요한 수단이라 판단됨.
 - 또한, 민간사업자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 사업으로 한정하여 구체화 할 계획이며,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이 필요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민간사업자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0년간(95.1~05.3) 연간 2~3건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6. 중앙인사위원회

집필자 : 양상근 사무관(Tel. 2100-2442, yangs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1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하여 원안의결(비중요1)

<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05. 10. 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심사내용

○ 대통령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검증 대상자·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신설)

☞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직위의 중요도·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청렴도·업무능력 등 자질요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므로 원안의결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집필자 : 서경석 사무관(Tel. 2100-2492, skseork@opc.go.kr)

(1) 2005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1)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옴부즈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제 246차 행정사회분과 (2005. 1. 12)	개선권고 1	신설 1
계	-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678

679

(2) 2005년도 신설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고충민원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50조(과태료) ①항 중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를 '업무수행을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경우'로 법조문을 수정하되, 조문 수정시 법제처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선권고함.